

정책연구

2022-11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섭 조경욱 송용호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11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섭 조경옥 송용호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중섭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2절, 3장 1~2절, 4장, 5장, 6장, 7장

공동연구 조경옥 | 선임연구위원 | 제3장 3절
송용호 | 전문연구원 | 제2장 1절, 6장

자문위원 박신애 |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하송범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편한세상 원장
서영희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
김성준 |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박은미 | 전라북도아동복지협회 사무국장
강가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북협회 간사

연구관리 코드 : 21JU3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는 약 3만~3.5만명 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낮은 복지체감도로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본 연구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복지시설의 유형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역간 그리고 시설유형간 격차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개선을 통한 처우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절차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동향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의 급여실태 등 행정통계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나 처우정도가 타시도와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인지 비교분석
- 또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는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실태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현황 그리고 연가사용일수나 연가보상 여부 등 복리후생 관련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세부과제를 도출

2. 주요 현황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

-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생활시설 99.9%,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101.4% 등이고 장애인시설이 100.1% 등으로 생활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의 열악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수준의 인건비가 아닌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비교단위가 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의 수준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관장 15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 총액은 4,083만원으로 인건비 준수율은 100.7%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과 비교시 원장은 전국평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보다도 다소 높았고, 전라북도의 부장과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할지라도 직급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간의 인건비에서 격차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배분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호봉제를 일부 시설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의 시설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상담소 등의 시설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음

- 다수 복지시설은 인건비의 지급형태로 호봉제를 택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인건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가령,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호봉제를 기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현황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을 운영주체별로 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국립 및 지자체 직영이 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인 3,128만원, 사단법인 3,094만원, 학교법인 3,051만원 등의 순임
- 재원형태별로 보면, 호봉미적용 시설이 2,559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여가부 시설이 2,633만원 등의 순으로 낮았는데, 재원형태에서는 시군이양시설이 3,3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이양시설 3,217만원, 복지부 시설 중 국비지원시설 3,06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본급을 보면,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평균 기본급은 3,813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본급이 연 43,7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이 20,390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임
-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기준으로는 평균 3,813만원이고 정신요양시설이 5,366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립지원시설 5,284만원,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5,208만원 등의 순이었고, 호봉을 보면,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정신요양시설이 평균 15.5호봉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46호봉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과 호봉이 높은 시설은 주로 종사자의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들이었고, 재원형태에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시설에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경우는 대체로 호봉이 10호봉 이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급은 복지부수 소관시설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비교시 이양시설 중에서 도이양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군이양시설 그리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 등의 순임

- 기본급에 더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보면, 10호봉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은 33,147만원,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41,297만원, 지방이양시설 중에서도 이양시설 종사자는 평균 41,541만원 그리고 시군 이양시설은 36,220만원으로 나타남
- 처우수당까지를 포함한 급여총액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급여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전히 도이양시설이 가장 높은 연봉액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이양시설 중 시군 이양시설, 그리고 여성가족부 종사자 등의 순임
- 다만, 기본급에서는 이양시설이 국비지원시설보다도 평균 연봉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본급과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액에서는 도이양시설 종사자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정규직은 7.6명, 비정규직은 평균 3.7명이었고, 인건비의 구성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휴가일수는 16.5일 이었고, 이중 사용일수는 12.51일로 휴가사용율은 약 72.4%임.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11.54일, 그리고 생활시설 13.66일로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의 휴가사용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48시간이었고, 시설형태에서는 이용시설이 33.45시간 그리고 생활시설 42시간으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도 약 8시간 이상 많았음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으로 정신보건시설 39.28시간, 여성가족시설 38.27시간, 아동복지시설 35.94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조사

-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수준

으로 급여 인상, 단일임금체계 구축으로 인한 보수격차 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유형별 급여차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이드라인 권고 미준수, 직종간 급여차이 등의 순이었다. 여전히 종사자의 다수는 시설별로 종사자의 급여격차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급수유시간 미시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리휴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50%이상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의 시행율이 낮았고, 다음으로 수유시간제공, 가족돌보지원, 유산 및 사산휴가제도 운영 등의 시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의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에서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4.6%밖에 되지 않았고, 부담된다는 의견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3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출산휴가제도로 인한 업무부담정도에서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67.0%로 매우 높게 나타남. 특히, 시설의 유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의 다수 시설에서 부담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처리방법을 보면, 계약직 대체인력 활용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난 3년간 대상자가 없었다는 시설도 31.5%였다. 이외에도 남은 인력들이 업무공백을 해결했다는 시설도 15.1%정도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와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조사결과를 보면, 업무강도 대비 만족도 수준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2%이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함.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종사자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지만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5.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가 9.4%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의 필요성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보건·노숙인 시설이 6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여성가족시설(62.7%), 아동청소년시설(57.7%), 노인시설(56.6%) 등의 순이었고 시설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의 경우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과 준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55.5%로 생활시설 53.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충 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18.2%, 인권지침 및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정책과제

■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시설유형별 급여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단일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차원에서도 국비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지역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시설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단일임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 시설별 직급체계를 업무량에 따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일직급의 적용을 위한 표

준화는 대체로 타시도에서 추진중인 사례를 참고하여 종사자의 규모와 경력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단일임금체계의 적용시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임금격차가 심각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이 경우 임금수준이 여타 시설에 비해서 낮은 호봉미적용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복리후생 지원 확대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와 함께 건강검진비를 전국 평균정도의 수준으로 지원 필요
- 선택적 복지의 경우 부양가족수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건강검진비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선택적 복지와 건강검진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이 적합함
- 건강검진비는 종사자 1인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되, 전라북도 사복지사협회를 주관으로 지역 종합검진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정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검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검토 필요
- 또한, 건강검진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검진대상자의 경우에는 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야 하되 정밀검진을 요하는 2차 재검의 경우에는 공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와 통합하여 편성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해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함

- 포괄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교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이나 수당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 사회복지시설 중 다수시설이 연차휴가나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인력의 부족이나 대체인력 활용 부재로 인해 적절한 휴가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중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시설이 57.4%에 이르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 인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설도 55.6% 정도임
- 전라북도에서도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의 장기간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세부조건들이 다소 까다롭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량이 많지 않다보니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체감하는 대체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의 지원을 통해 시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제도적 휴식을 보장해야 함
- 대체인력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갖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대상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대체인력의 전문성 정도에 따른 인건비의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여기에 현재 대체인력 지원대상인 사회복지직과 조리원 등으로만 지원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직업훈련교사나 간호사, 취사원 등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확충 지원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이나 운영지침에 따라 종사자의 정원을 제도

화하고 있지만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생활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미충족 인력에 대한 추가확충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은 일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운영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정원에 맞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력운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여 미충족 현원에 대해서 바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시군의 종사자간 종사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도 내에서도 지원금액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군간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을 일정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지역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특히, 향후 전라북도에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새롭게 신설할 경우 시군 차원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동일 사업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광역차원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간 편차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역차원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모든 시군이 일원화된 기준하에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국내외연수비나 교육비 그리고 힐링캠프 등의 교육활동지원 등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사회복지종사자간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의 현 직업에 대한 만족의 정도나 지속적인 근로의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내의 상급자나 센터장 등의 책임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와 같은 선별적 지원보다는 개별 시설별로 통합 지원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향상방안 등의 물질적 보상과 함께 시설내 종사자들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기에 전라북도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책임자인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과의 관계성 회복이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이나 의무 보수교육 과정으로 운영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만이 아닌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호소통을 통한 직원들간의 신뢰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교육 병행 추진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서론
-----	----

1. 서론	3
-------	---

제2장	이론적 논의
-----	--------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7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 현황	14

제3장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주요 쟁점
-----	------------------------

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격차 심화	27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 편차 발생	35
3. 부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이	40

제4장	연구방법
-----	------

1. 연구방법	45
2. 연구절차	46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황

1.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수준 진단 51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지원실태 56
3.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65

제6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일반현황 75
2.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82
3.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107
4. 종사자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분석 149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155

제7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1.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161
2. 복리후생 지원 확대 163
3.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166
4.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167
5.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169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170
7.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171

참 고 문 헌 173

부 록 177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2-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7
[표2-2] 사회복지시설 현황	8
[표2-3]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9
[표2-4]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주요지원 내용	10
[표2-5] 사회복지시설 현황	12
[표2-6]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13
[표2-7]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13
[표2-8]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15
[표2-9] 근로자별 법정기준 근로시간	16
[표2-10] 2021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관리직)	17
[표2-11]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현황	18
[표2-1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의 변화	20
[표2-1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1
[표2-14] 사회복지사 권익옹호 관련 자치법규 현황	22
[표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7
[표3-2]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28
[표3-3]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29
[표3-4]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30
[표3-5]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율 현황(2017~2021)	31
[표3-6] 시·군·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32
[표3-7] 사회복지시설 직무현황	35
[표3-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	36
[표3-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및 임금체계 현황	38
[표3-1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쟁점	39
[표3-11]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율 현황(2017~2021)	40
[표3-1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1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표4-1]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내용	46
[표4-2] 연구체계	47
[표5-1]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율 현황(2017~2021)	52
[표5-2] 인건비가이드라인 생활/이용시설의 통합 및 공무원 직급과 비교	53
[표5-3]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직위체계	54
[표5-4]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55
[표5-5] 인건비 지급 기준	56
[표5-6] 인건비 지급 현황	57
[표5-7] 단일임금체계 대상 시설 현황	58
[표5-8] 타 시도 단일임금체계 비교	59
[표5-9]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현황	60
[표5-10] 사회복지 생활시설 직위별 임금현황	62
[표5-11] 시설별 직위체계 및 호봉표 존재여부	63
[표5-12]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현황	66
[표5-13] 사회복지시설 수당 현황	67
[표5-14]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추진 현황	68
[표5-1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체계 적용안	71
[표6-1] 운영주체별 종사자 급여현황	75
[표6-2] 재원구분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76
[표6-3] 여성가족부 복지시설(국비)	77
[표6-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국비)	77
[표6-5] 호봉미적용시설(국비)	78
[표6-6] 도 및 시군 이양 사회복지시설	78
[표6-7]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규모 및 급여 현황	79
[표6-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수당지급 현황	80
[표6-9] 사회복지종사자 구성 현황	81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6-10] 운영주체별 종사자 급여현황	82
[표6-11]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84
[표6-1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85
[표6-13] 사회복지시설 호봉별 급여현황	86
[표6-14] 재원형태별·호봉별 보수	87
[표6-1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88
[표6-16]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급여 특성	91
[표6-17] 사회복지시설 호봉별 보수현황	93
[표6-18]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현황	94
[표6-19]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보수현황	95
[표6-20]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총족율	97
[표6-21]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99
[표6-22]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101
[표6-23]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시 재정추계	103
[표6-24]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104
[표6-25]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시 재정추계(특별수당 포함)	105
[표6-26] 사회복지종사자 동일직급별 현황(추정)	106
[표6-27] 사회복지종사자 휴가 및 근무일수 현황	107
[표6-28] 시설유형별 수당지원현황	109
[표6-29] 시설유형별 복리후생 현황	110
[표6-30]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1순위)	111
[표6-31]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112
[표6-32]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시행 여부(미시행 기준)	113
[표6-33] 모성보호 제도시행 여부(미시행 기준)	114
[표6-34]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	115
[표6-35] 출산휴가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	116
[표6-36]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시 인력운영 방법	117
[표6-37]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신규인력고용의 어려운 점	118
[표6-38]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119

[표6-39]	직무나 업무강도 대비 보수수준 만족도	120
[표6-40]	유사직군 종사자 대비 보수수준 만족도	121
[표6-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122
[표6-42]	소속된 시설에서 보조금 및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1순위	123
[표6-43]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	124
[표6-44]	일(담당업무내용, 업무량 포함)에 대한 만족도	125
[표6-45]	보수(수당 및 보너스 포함)에 대한 만족도	126
[표6-46]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의사 유무	127
[표6-47]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의사 사유 1순위	128
[표6-48]	현재 직장에서 향후 근무계획	129
[표6-49]	입사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한 법정휴가제도 종류 및 사용정도	130
[표6-50]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	131
[표6-51]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	132
[표6-52]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수당 1순위	133
[표6-53]	반드시 적용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 1순위	134
[표6-54]	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135
[표6-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136
[표6-56]	유연근무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137
[표6-57]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138
[표6-58]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39
[표6-59]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140
[표6-60]	근무 중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목격 경험 유무	141
[표6-61]	근무 중인 시설에서 목격했던 인권침해 이유 1순위	142
[표6-62]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 1순위	143
[표6-63]	근무 중인 시설에서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는 방식	144

표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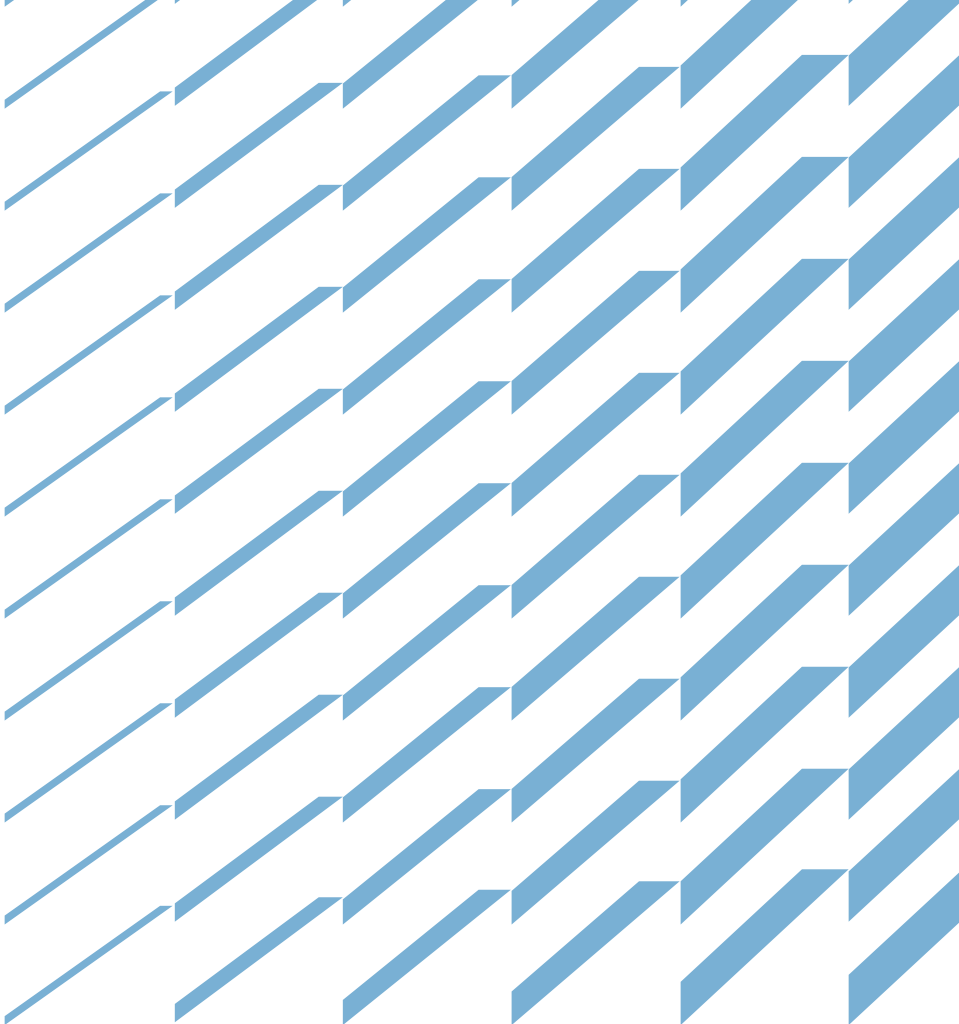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6-64]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	145
[표6-65] 최근 1년간 받은 인권교육 주관기관	146
[표6-66] 인권교육 필요 정도	147
[표6-67]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법	148
[표6-68] 측정도구	149
[표6-69] 직업만족 및 직업중요도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150
[표6-70]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결과	150
[표6-71] 직업만족도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51
[표6-72] 직업지속성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51
[표6-73]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152
[표6-74]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153
[표6-75] 관계만족도 하위변인의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154
[표6-7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주요내용	155
[표7-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직급체계(안)	162
[표7-2]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계획(안)	162
[표7-3] 복지후생지원제도(안)	164
[표7-4]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방식	166
[표7-5]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	167
[표7-6] 대체인력제도 운영현황	168
[표7-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 총족 및 미충족 시설 현황	169
[표7-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군 지원현황	170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3-1] 사회복지시설 평균 준수율 현황	33
[그림3-2] 사회복지 생활시설 평균 준수율 현황	33
[그림3-3] 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균 준수율 현황	34
[그림3-4] 장애인복지관 평균 준수율 현황	34
[그림6-1] 사회복지시설 재원형태별 평균급여	86
[그림6-2] 보수총액과 호봉간 관계	90
[그림6-3] 기본급과 호봉간 관계	90
[그림6-4]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균 호봉 현황	92
[그림6-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균 재직기간 현황	92
[그림6-6] 보수총액 기준 현황	94
[그림6-7] 기본급 기준 현황	94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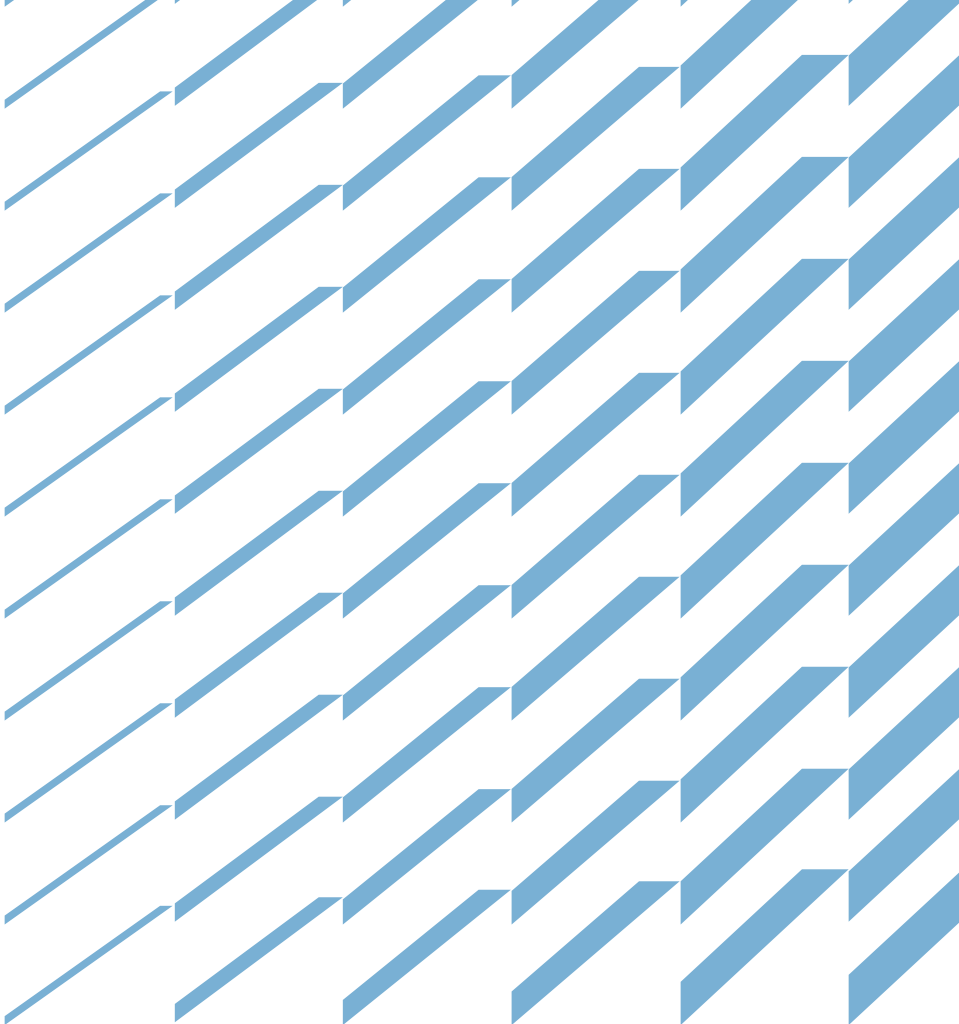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단절이 반복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사회적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다변화와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은 종교기관의 자선이나 구호 등의 시혜적 가치로 해석되고 있어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사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인의 복지문제를 초월하여 전체 사회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가차원에서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나 처우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는 약 3만~3.5만명 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급여와 수당 등 보수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근로시간, 연차휴가 및 연차보상 등 복리후생 관련 규정과 실제 활용도를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적정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 현황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다의적 개념으로 운영주체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통상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할 때는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1)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총 28개 개별 법률을 열거하고 있고, 이 같은 법률하에서 설립된 모든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28개의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등이 다양하고 시설의 대상 및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성매매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가족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이다.

[표2-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 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간강가정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표2-2] 사회복지시설 현황

소관부처	시설유형	생활시설	이용시설	관련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종합적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 장애인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 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 먼저 생활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다.

[표2-3]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재가,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관리과	
				아동복지정책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대응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제44조의 2		
장애인	생활	생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이용	지역사회재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 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표2-4]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주요지원 내용

구분	유형(시설구분)	주요 지원내용	설치근거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생활)	양로시설 : 입소 및 급식, 일상편의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 주거 및 급식, 일상편의 노인복지주택 : 주거, 일상생활 편의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생활)	노인요양시설 : 입소, 급식, 요양, 일상편의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거, 급식, 일상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	노인복지관 : 복지증진 서비스 제공 경로당 : 자율적 친목모도, 정보교환, 여가 노인교실 : 취미, 건강유지, 학습 프로그램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	방문요양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신고 상담, 긴급전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용)	일자리개발, 지원, 창업, 육성, 생산, 판매담당	
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생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생활)	1급, 2급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생활)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생활)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등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생활)	지역내 일반주택 이용, 자립을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용)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자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용)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판매 활성화	정신건강증진법
	정신요양시설(생활)	피해자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등	
	사회복귀 시설 중 생활시설(생활) 사회복귀 시설 중 생활시설(이용)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등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등	
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생활)	입소, 노숙인 자활 자립지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재활시설(생활)	입소, 재활통합 자립조성	
	노숙인요양시설(생활)	입소, 상담 및 치료 또는 급식서비스 제공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용)	상담, 보호 제공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용)	일시적 잠자리, 급식, 응급처치, 일시보호제공	
	노숙인급식시설(이용)	노숙인 급식서비스 제공	
	노숙인진료시설(이용)	노숙인 등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제공	
사회복지관	쪽방상담소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 행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이 있고, 이용시설로서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률하에서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이용대상과 운영형태 그리고 소관부처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상과 유형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령,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은 입소와 급식 그리고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증진과 정보교환, 여가, 취미건강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그리고 가족상담과 여가문화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이용대상과 운영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부터 일반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상담과 재활 그리고 치료 뿐만 아니라 돌봄과 보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인 시설로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설립목적대로 이용자나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하에 욕구에 대한 사정을 기초로 재활과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돌봄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해당시설에 일을 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지역마다 지원예산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다 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급여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표2-5]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소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소계	1,234	11	296	162	195	104	76	73	84	52	25	29	32	19	36	40
아동복지시설	352	3	92	61	55	31	25	12	18	15	6	7	8	4	9	6
청소년복지시설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노인주거복지시설	19	0	3	1	4	1	1	4	2	0	0	0	0	0	2	1
노인의료복지시설	233	0	43	30	49	16	12	21	15	9	7	5	5	4	8	9
노인여가복지시설	88	0	19	8	10	15	3	2	8	6	2	1	4	2	2	6
재가노인복지시설	147	0	37	20	20	7	7	11	13	6	3	4	6	1	5	7
노인보호전문기관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복합노인복지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4	1	3	1	2	1	1	1	1	0	1	1	1	0	0	0
장애인거주시설	73	0	11	8	16	9	3	4	9	2	1	2	1	3	3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9	0	25	10	7	9	6	5	5	4	2	4	3	2	3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	0	4	1	4	2	0	1	4	1	1	1	1	0	0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정신요양시설	4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정신재활시설	21	0	7	2	5	1	1	1	1	1	0	1	1	0	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0	3	2	1	0	0	0	1	0	0	0	0	0	0	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3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8	0	7	4	1	2	2	1	0	0	0	0	0	0	0	1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20	0	9	3	4	1	3	0	0	0	0	0	0	0	0	0
통합상담소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다문화가족복지시설	15	0	1	2	1	1	1	1	1	1	1	1	1	1	1	1
노숙인복지시설	5	0	3	1	1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사회복지시설	17	0	5	2	3	1	1	3	0	0	0	0	0	0	1	1
자활시설	22	0	4	2	2	1	4	1	1	1	1	1	1	1	1	1
기타복지시설	61	4	16	4	7	6	5	5	4	6	0	1	0	1	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역 간 혹은 시설 유형간 급여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매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매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총 1.2천개소의 복지시설에 2.4만명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를 수행중이고 사회복지 시설은 지역적으로는 전주 296개소, 익산 195개소 등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촌지역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표2-6]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성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515,678	618,649	550,179	568,912	587,031	612,9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특별시	84,022	96,169	89,302	89,259	91,587	93,584	16.3	15.5	16.2	15.7	15.6	15.3
부산광역시	25,160	30,736	26,363	27,096	28,423	29,012	4.9	5.0	4.8	4.8	4.8	4.7
대구광역시	22,011	26,772	23,159	23,464	23,449	24,038	4.3	4.3	4.2	4.1	4.0	3.9
인천광역시	28,180	32,762	29,615	31,276	32,861	34,297	5.5	5.3	5.4	5.5	5.6	5.6
광주광역시	18,026	23,960	18,122	19,038	18,794	19,845	3.5	3.9	3.3	3.3	3.2	3.2
대전광역시	16,628	21,463	17,818	18,320	19,570	20,270	3.2	3.5	3.2	3.2	3.3	3.3
울산광역시	10,015	11,475	10,475	11,012	11,096	11,642	1.9	1.9	1.9	1.9	1.9	1.9
세종특별자치시	2,427	3,045	3,292	3,963	4,338	4,838	0.5	0.5	0.6	0.7	0.7	0.8
경기도	132,148	152,425	144,331	151,121	157,764	166,365	25.6	24.6	26.2	26.6	26.9	27.1
강원도	18,403	23,526	20,543	21,004	23,405	24,676	3.6	3.8	3.7	3.7	4.0	4.0
충청북도	18,846	23,365	19,852	20,853	21,441	21,878	3.7	3.8	3.6	3.7	3.7	3.6
충청남도	24,399	31,368	26,288	27,656	28,062	29,448	4.7	5.1	4.8	4.9	4.8	4.8
전라북도	22,113	28,088	22,986	23,291	23,696	24,961	4.3	4.5	4.2	4.1	4.0	4.1
전라남도	21,671	29,311	23,033	24,463	24,785	26,860	4.2	4.7	4.2	4.3	4.2	4.4
경상북도	28,149	33,514	30,241	31,237	31,521	33,410	5.5	5.4	5.5	5.5	5.4	5.5
경상남도	34,214	39,708	34,959	35,821	35,995	37,416	6.6	6.4	6.4	6.3	6.1	6.1
제주특별자치도	9,266	10,962	9,800	10,038	10,244	10,417	1.8	1.8	1.8	1.8	1.7	1.7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통계연보(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한편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는 2020년 말 기준 2.5만명으로 이는 2015년 2.2만명보다도 약 3천여명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에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61.3만명 중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43.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인시설이 9.9천명(39.5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장애인 1.9천명(7.74%), 아동 1.2천명(4.9%) 등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표2-7]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구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2015년	22,113	6,452 (29.18)	1,031 (4.66)	1,638 (7.41)	267 (1.21)	53 (0.24)	124 (0.56)	217 (0.98)	12,331 (55.76)
2016년	28,088	6,975 (24.83)	6,679 (23.78)	1,701 (6.06)	369 (1.31)	37 (0.13)	130 (0.46)	192 (0.68)	12,005 (42.74)
2017년	22,986	7,542 (32.81)	1,130 (4.92)	1,773 (7.71)	283 (1.23)	51 (0.22)	127 (0.55)	190 (0.83)	11,890 (51.73)
2018년	23,291	7,834 (33.64)	1,150 (4.94)	1,812 (7.78)	270 (1.16)	51 (0.22)	136 (0.58)	296 (1.27)	11,742 (50.41)
2019년	23,696	8,605 (36.31)	1,196 (5.05)	1,830 (7.72)	369 (1.56)	56 (0.24)	129 (0.54)	326 (1.38)	11,185 (47.20)
2020년	24,961	9,862 (39.51)	1,230 (4.93)	1,931 (7.74)	363 (1.45)	62 (0.25)	144 (0.58)	462 (1.85)	10,907 (43.70)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통계연보(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 현황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제공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아직까지 시혜적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어 종사자의 급여수준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향상과 적정인건비 기준과 준수 그리고 실태조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비차별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동법률에서는 보수의 적정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적정인건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적정인건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그리고 적정인건비의 기준에 대한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근거하에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표2-8]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	관리직	가능직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614,000	2,463,200	2,343,700	2,138,300	2,009,900	1,910,300	1,872,400	1,846,800	1,822,500
2호봉	2,708,400	2,548,900	2,424,100	2,208,800	2,073,500	1,940,600	1,925,500	1,890,900	1,848,100
3호봉	2,811,400	2,645,900	2,517,400	2,280,900	2,145,000	1,991,500	1,973,200	1,935,800	1,891,600
4호봉	2,918,700	2,741,400	2,613,200	2,378,500	2,217,000	2,051,200	2,025,000	1,979,400	1,933,900
5호봉	3,047,600	2,850,100	2,716,300	2,481,900	2,290,300	2,113,700	2,082,800	2,021,000	1,975,800
6호봉	3,176,500	2,968,600	2,832,100	2,588,900	2,383,500	2,176,400	2,151,100	2,074,600	2,028,200
7호봉	3,305,400	3,093,100	2,948,100	2,700,700	2,478,800	2,266,500	2,243,400	2,169,100	2,069,800
8호봉	3,435,500	3,223,100	3,072,800	2,813,600	2,574,800	2,360,700	2,334,800	2,250,000	2,132,800
9호봉	3,566,600	3,353,100	3,201,700	2,929,500	2,675,600	2,455,000	2,413,700	2,299,900	2,208,800
10호봉	3,691,200	3,479,900	3,329,300	3,041,100	2,769,400	2,545,000	2,490,500	2,383,300	2,303,300
11호봉	3,815,700	3,595,800	3,448,500	3,144,200	2,863,500	2,628,400	2,570,700	2,467,800	2,361,700
12호봉	3,938,100	3,700,900	3,552,400	3,237,300	2,942,500	2,696,500	2,644,300	2,544,600	2,428,700
13호봉	4,043,200	3,794,200	3,643,600	3,318,700	3,018,400	2,762,700	2,708,300	2,617,400	2,499,300
14호봉	4,129,100	3,881,900	3,734,400	3,397,800	3,091,000	2,827,800	2,759,300	2,678,000	2,555,600
15호봉	4,215,700	3,965,300	3,825,500	3,473,500	3,160,500	2,889,400	2,814,500	2,724,500	2,601,100
16호봉	4,297,700	4,045,300	3,906,800	3,545,000	3,227,400	2,953,400	2,863,300	2,777,600	2,652,000
17호봉	4,374,400	4,112,900	3,977,200	3,613,300	3,290,300	3,017,000	2,909,900	2,829,500	2,703,000
18호봉	4,447,100	4,182,300	4,047,900	3,679,400	3,351,000	3,077,700	2,965,100	2,881,600	2,779,900
19호봉	4,515,000	4,248,500	4,110,800	3,737,900	3,407,200	3,132,200	3,019,500	2,925,500	2,832,900
20호봉	4,575,800	4,311,300	4,171,600	3,796,400	3,462,200	3,185,300	3,074,300	2,967,900	2,877,600
21호봉	4,635,400	4,367,800	4,231,300	3,850,400	3,513,200	3,233,100	3,122,900	3,018,600	2,927,900
22호봉	4,692,800	4,421,000	4,286,200	3,902,700	3,561,600	3,281,300	3,167,200	3,076,000	2,985,700
23호봉	4,746,200	4,474,100	4,338,600	3,952,300	3,608,000	3,325,300	3,217,900	3,135,600	3,042,800
24호봉	4,796,700	4,525,000	4,387,400	3,996,100	3,652,500	3,368,800	3,260,900	3,190,800	3,099,100
25호봉	4,845,800	4,571,600	4,436,200	4,039,600	3,695,200	3,410,000	3,306,200	3,241,800	3,155,800
26호봉	4,886,100	4,617,100	4,478,600	4,082,000	3,737,000	3,447,900	3,346,500	3,286,200	3,208,100
27호봉	4,927,200	4,656,300	4,518,800	4,117,800	3,771,100	3,480,400	3,379,000	3,330,100	3,251,900
28호봉	4,974,400	4,699,900	4,561,900	4,156,900	3,806,200	3,513,200	3,411,700	3,361,600	3,282,800
29호봉	5,013,500	4,744,700	4,616,600	4,206,100	3,856,200	3,558,500	3,458,500	3,415,000	3,348,800
30호봉		4,786,700	4,658,600	4,253,200	3,901,700	3,603,700	3,503,700	3,460,000	3,392,800
31호봉		4,828,700	4,700,600	4,300,200	3,947,200	3,649,200	3,549,200	3,505,000	3,437,800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899,100원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2021)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법률하에서 매년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인건비 지급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표되는 인건비(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봉급과 수당은 국비지원시설, 개별 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호봉제 미적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 수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지급기준을 별도의 개별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활동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법정근로시간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경우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법정근로시간을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원칙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2-9] 근로자별 법정기준 근로시간

구분	법정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 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	합의
여성 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본인 동의	본인 동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인 근로자	8시간	40시간	불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근로자	7시간	35시간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1주 5시간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자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2020)

세 번째 원칙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정확한 보수와 수당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입사와 퇴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급여와 회계기능을 사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표2-10] 2021년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관리직)

구분	사무직				관리직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960,500	1,935,600	1,914,000	1,872,400	1,924,600	1,893,300	1,846,800	1,822,500
2호봉	2,024,200	1,988,700	1,960,700	1,925,500	1,976,800	1,936,600	1,890,900	1,848,100
3호봉	2,085,400	2,042,800	2,013,600	1,973,200	2,045,800	1,983,400	1,935,800	1,891,600
4호봉	2,144,200	2,108,500	2,089,400	2,025,000	2,100,500	2,033,800	1,979,400	1,933,900
5호봉	2,211,900	2,174,100	2,150,300	2,082,800	2,154,000	2,082,900	2,021,000	1,975,800
6호봉	2,312,700	2,260,800	2,227,100	2,151,100	2,238,300	2,122,300	2,074,600	2,028,200
7호봉	2,433,100	2,364,400	2,303,100	2,243,400	2,334,900	2,217,200	2,169,100	2,069,800
8호봉	2,559,000	2,448,300	2,389,800	2,334,800	2,437,700	2,305,400	2,250,000	2,132,800
9호봉	2,670,400	2,528,500	2,468,800	2,413,700	2,536,500	2,396,300	2,299,900	2,208,800
10호봉	2,772,200	2,611,800	2,554,500	2,490,500	2,635,900	2,475,400	2,383,300	2,303,300
11호봉	2,862,100	2,690,900	2,620,400	2,570,700	2,722,100	2,556,700	2,467,800	2,361,700
12호봉	2,936,800	2,770,100	2,701,700	2,644,300	2,811,100	2,635,800	2,544,600	2,428,700
13호봉	2,997,600	2,848,100	2,763,600	2,708,300	2,886,400	2,708,300	2,617,400	2,499,300
14호봉	3,055,000	2,911,900	2,829,000	2,759,300	2,942,700	2,772,200	2,678,000	2,555,600
15호봉	3,104,800	2,969,400	2,880,600	2,814,500	3,001,900	2,823,100	2,724,500	2,601,100
16호봉	3,165,500	3,022,600	2,925,000	2,863,300	3,057,000	2,874,900	2,777,600	2,652,000
17호봉	3,165,500	3,022,600	2,925,000	2,863,300	3,104,200	2,921,600	2,829,500	2,703,000
18호봉	3,267,400	3,125,500	3,029,100	2,965,100	3,153,500	2,971,000	2,881,600	2,779,900
19호봉	3,320,500	3,180,800	3,077,600	3,019,500	3,202,900	3,023,300	2,925,500	2,832,900
20호봉	3,370,400	3,234,400	3,130,000	3,074,300	3,260,500	3,069,300	2,967,900	2,877,600
21호봉	3,423,500	3,284,000	3,181,900	3,122,900	3,312,000	3,117,200	3,018,600	2,927,900
22호봉	3,474,500	3,327,200	3,232,400	3,167,200	3,367,400	3,174,700	3,076,000	2,985,700
23호봉	3,528,700	3,379,100	3,279,200	3,217,900	3,418,200	3,224,400	3,135,600	3,042,800
24호봉	3,578,600	3,430,000	3,326,100	3,260,900	3,470,300	3,263,600	3,190,800	3,099,100
25호봉	3,626,400	3,478,000	3,376,000	3,306,200	3,524,100	3,303,700	3,241,800	3,155,800
26호봉	3,673,000	3,522,300	3,422,600	3,346,500	3,582,000	3,342,600	3,286,200	3,208,100
27호봉	3,722,800	3,559,200	3,469,400	3,379,000	3,639,400	3,396,600	3,330,100	3,251,900
28호봉	3,762,900	3,594,900	3,508,400	3,401,600	3,695,300	3,444,600	3,360,300	3,284,600
29호봉	3,806,500	3,608,600	3,527,300	3,420,000	3,741,000	3,467,900	3,394,100	3,318,600
30호봉	3,843,900	3,638,400	3,549,800	3,438,500	3,795,900	3,500,500	3,415,000	3,348,800
31호봉	3,887,300	3,670,400	3,577,800	3,459,300	3,835,500	3,537,000	3,450,100	3,372,100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축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899,100원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2021)

이 같은 원칙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급과 호봉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제시하고 있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급여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각 직급별 호봉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 원장이나 실장,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관리직에 대해서도 급수별 호봉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2-11]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현황

구분	시설	사업근거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직위구분	비고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개별 기준표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사업안내	복지부 기준표	시설장/사무국장	
노인	노인양로시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복지부 기준표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학대노인 전용쉼터		최저임금	소장/사회복지사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
	노인보호전문기관		복지부 기준표	관장/중간관리자/상담원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사업안내	개별 기준표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
노숙인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개별 기준표	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분야사업안내	28,920 천원(연)	시설장/보육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국가지원단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보육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국가지원단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160 천원(월)	시설장/생활복지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국가지원단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별지침	복지부 기준표		
자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안내	개별 기준표	센터장(1~2급), 실장(2~3급), 팀장(4~5급)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
결핵 한센	결핵시설	국가결핵관리지침	사업계획별 기준	사업수행인력	별도 사업계획에 따름 *사업비의 30% 이내, 낮음
	한센시설	한센병관리지침	복지부 기준표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자료 : 오승환(202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편, 사회복지종사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보면, 장애인시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근거로 개별 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의 지급수준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노인양로시설과 학내노인전용쉼터,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인건비가 각자의 복지부 기준표로 지급되고 있고, 특히, 학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의 보건복지부의 개별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건비 지원수준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국가지원단가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노숙인 시설도 지침상의 개별 기준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준표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의 급여도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 급여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각 시설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 인건비 지원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국고지원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정책을 2018년부터 정리해보면, 2018년에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관련하여 인건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시기이다. 2019년도에는 구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체계가 차별해 해당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임금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원발의가 있었고, 당시 의원발의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이드라인준수 의무화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은 법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진행되었다.

[표2-1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의 변화

구분	주요내용
2018년	• 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 간담회(2018.4) * 2022년까지 단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약속 * 간담회 이후 복지부 인건비 5개년 계획 수립
2019년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사정위원회 결정(2019. 4) * 파진정인(복지부장관)에 공동생활가정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사 정책대회(2019.5) * 사회복지계 각 직능단체 간 연대체 결성 및 추진 • 전국 5천여 사회복지사 4당 대표와 함께 정책대회
2020년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의원발의(김희재 의원)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보수차별 금지 * 보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2021년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의원발의(2021. 4. 7) • 안규백 의원 :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 국가는 적정인건비 기준 마련, 자치체는 해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보수지침 마련 * 처우개선위 심의거처 보수지침 마련

한편, 국고지원시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률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시설을 어린이집을 포함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시설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 시설 등 총 3개의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모든 시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의 제정비율을 보면, 최소 52%에서 최대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라북도는 본청을 포함하여 14개 시군이 모두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1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	광역시 제정 여부	기초자치 단체수	제정	제정 기초자치단체명	제정률
서울	제정	25	13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동작구	52
부산	제정	16	16	남구, 동구, 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동래구, 기장군, 사상구, 부산진구, 강서, 금정구, 수영구	100
대구	제정	8	2	수성구, 달서구	25
인천	제정	10	5	계양구, 동구, 남동구, 옹진군, 서구	50
광주	제정	5	5	동구, 서구, 광산구, 남구, 북	100
대전	제정	5	5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100
울산	제정	5	3	중구, 남구, 동구	60
세종	제정	-		기초자치단체가 없음	
경기	제정	31	30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의왕시, 하남시,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포천시	97
강원	제정	18	1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고성군, 양구군, 정선군, 삼척시, 평창군, 양양군, 화천군	78
충북	제정	11	10	보은군, 영동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청주시, 음성군	91
충남	제정	15	14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93
전북	제정	14	14	군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100
전남	제정	22	19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주시, 강진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무안군	86
경북	제정	23	22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덕군, 청송군,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칠곡군, 영천시,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96
경남	제정	18	17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	94
제주	제정			없음	
계		226	189		84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체로 조례의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기관의 정책노력 의 무화
-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가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표2-14] 사회복지사 권익옹호 관련 자치법규 현황

제정 기초자치단체명		제정률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 권보호에 관한 조례	1.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옹호센터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3.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 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2021.9.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 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사 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020.12.23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비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 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에서의 안전 및 인권 그리고 과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까 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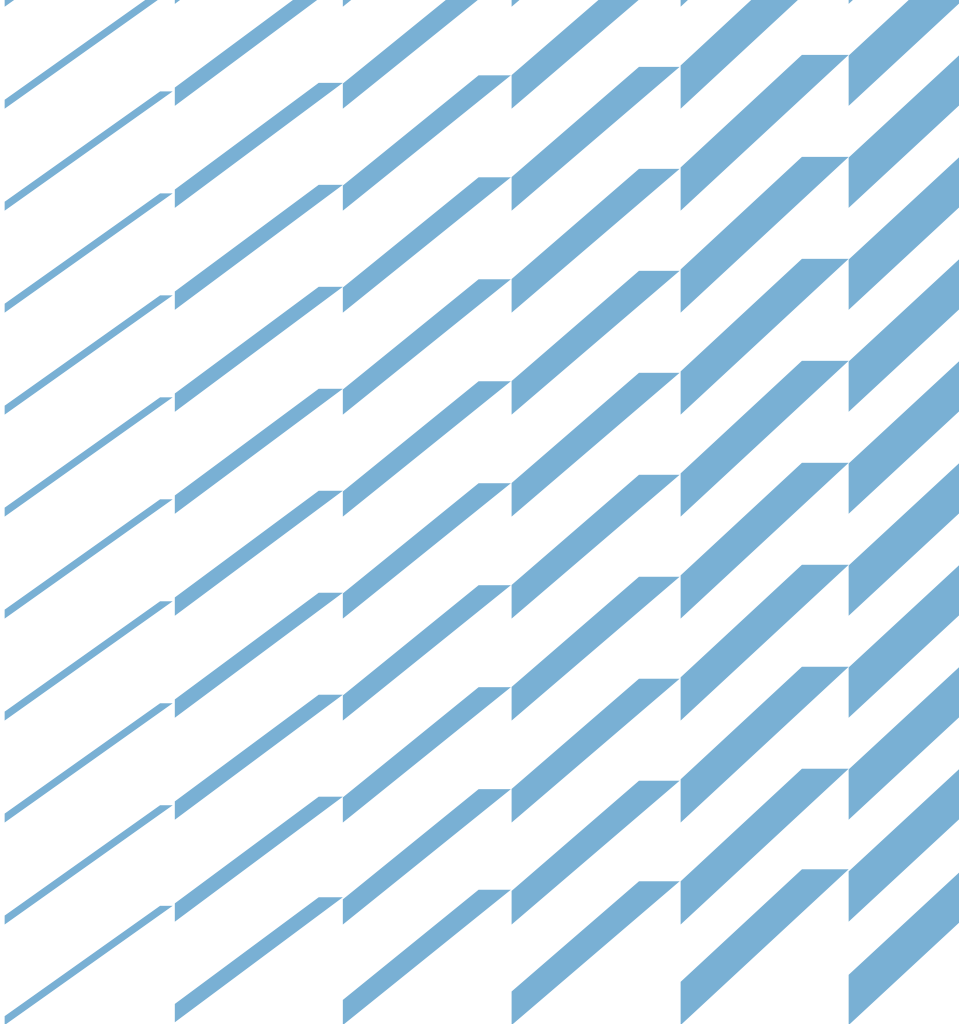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최근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환경이 생활 자나 이용자의 폭언 등의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일부 기관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복 지사의 안전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안전의 문제는 비단 사 회복지사와 이용자 혹은 생활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하관계의 위계질서하에서 갑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종사자들간의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하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에서의 안전권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대구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를 위한 별도의 센터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위원회 구성, 업무과정에서의 신변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지원협의회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주요 쟁점

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격차 심화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 편차 발생
3. 부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이



제 3 장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주요 쟁점

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격차 심화

사회복지종사자는 전문직이라는 인식보다는 봉사자라는 인식하에서 근로조건이 동일 업무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는 약 3만~3.5만명 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의 문제는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이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사회복지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열악한 처우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대인적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생활시설 99.9%,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101.4% 등이고 장애인시설이 100.1% 등으로 생활시설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지역	순위	평균	생활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평균	-	99.7%	98.4%	100.3%	100.5%
서울	1	106.1%	101.9%	104.3%	112.2%
부산	13	98.9%	97.3%	100.0%	99.4%
대구	12	98.9%	98.7%	99.6%	98.4%
인천	9	99.3%	99.7%	99.1%	99.1%
광주	3	100.2%	100.0%	100.6%	100.0%
대전	6	99.7%	99.2%	100.0%	100.0%
울산	17	97.6%	95.1%	97.9%	99.9%
세종	14	98.8%	96.3%	100.0%	100.0%
경기	7	99.7%	98.1%	100.3%	100.6%
강원	16	98.3%	95.8%	99.9%	99.3%
충북	10	99.3%	98.0%	100.1%	99.8%
충남	4	100.0%	100.0%	99.9%	100.0%
전북	5	99.9%	98.3%	101.4%	100.1%
전남	8	99.4%	98.2%	100.0%	100.1%
경북	11	99.1%	97.9%	99.1%	100.4%
경남	15	98.5%	96.4%	99.6%	99.4%
제주	2	101.3%	101.3%	102.6%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준수현황

[표3-2]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직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지역	평균	20호봉		15호봉		15호봉		10호봉		10호봉		7호봉		7호봉		5호봉		10호봉		10호봉	
복지부기준		4,402		4,055		3,679		2,922		2,660		2,380		2,176		2,028		2,298		2,221	
평균	98.4	4,236	96.2	3,901	96.2	3,602	97.9	2,897	99.1	2,634	99.0	2,351	98.8	2,159	99.3	2,016	99.4	2,273	98.9	2,194	98.8
서울	101.9	4,382	99.5	3,829	94.4	3,646	99.1	3,007	102.9	2,705	101.7	2,514	105.6	2,257	103.8	2,091	103.1	2,432	105.8	2,289	103.1
부산	97.3	3,971	90.2	3,647	89.9	3,531	96.0	2,907	99.5	2,660	100.0	2,380	100.0	2,115	97.2	2,028	100.0	2,298	100.0	2,221	100.0
대구	98.7	4,327	98.3	3,987	98.3	3,635	98.8	2,841	97.2	2,628	98.8	2,347	98.6	2,166	99.5	2,023	99.8	2,273	98.9	2,200	99.1
인천	99.7	4,205	95.5	3,867	95.4	3,679	100.0	2,922	100.0	2,830	106.4	2,380	100.0	2,176	100.0	2,028	100.0	2,298	100.0	2,221	100.0
광주	100.0	4,402	100.0	4,055	100.0	3,679	100.0	2,922	100.0	2,660	100.0	2,380	100.0	2,176	100.0	2,028	100.0	2,298	100.0	2,221	100.0
대전	99.2	4,256	96.7	3,917	96.6	3,679	100.0	2,922	100.0	2,660	100.0	2,380	100.0	2,165	99.5	2,023	99.7	2,298	100.0	2,198	99.0
울산	95.1	3,867	87.9	3,544	87.4	3,679	100.0	2,784	95.3	2,533	95.2	2,251	94.6	2,147	98.7	2,018	99.5	2,201	95.8	2,138	96.3
세종	96.3	4,242	96.4	3,905	96.3	3,542	96.3	2,813	96.3	2,573	96.7	2,296	96.5	2,105	96.7	1,955	96.4	2,208	96.1	2,122	95.6
경기	98.1	4,304	97.8	3,962	97.7	3,576	97.2	2,857	97.8	2,598	97.7	2,318	97.4	2,155	99.1	2,014	99.3	2,250	97.9	2,198	99.0
강원	95.8	3,841	87.3	3,965	97.8	3,196	86.9	2,855	97.7	2,599	97.7	2,328	97.8	2,143	98.5	1,992	98.2	2,253	98.1	2,175	97.9
충북	98.0	4,330	98.4	3,958	97.6	3,592	97.6	2,853	97.6	2,590	97.3	2,309	97.0	2,163	99.4	2,010	99.1	2,243	97.6	2,176	98.0
충남	100.0	4,402	100.0	4,055	100.0	3,679	100.0	2,922	100.0	2,660	100.0	2,380	100.0	2,176	100.0	2,028	100.0	2,298	100.0	2,221	100.0
전북	98.3	4,360	99.1	3,955	97.5	3,577	97.2	2,846	97.4	2,622	98.6	2,342	98.4	2,155	99.1	2,015	99.4	2,266	98.6	2,170	97.7
전남	98.2	4,336	98.5	3,988	98.4	3,614	98.2	2,892	99.0	2,613	98.2	2,336	98.1	2,135	98.1	1,968	97.0	2,257	98.2	2,181	98.2
경북	97.9	4,229	96.1	3,802	93.8	3,621	98.4	2,876	98.4	2,618	98.4	2,337	98.2	2,162	99.4	2,022	99.7	2,244	97.7	2,196	98.9
경남	96.4	4,163	94.6	3,835	94.6	3,501	95.2	2,820	96.5	2,569	96.6	2,299	96.6	2,136	98.2	1,995	98.4	2,227	96.9	2,154	97.0
제주	101.3	4,402	100.0	4,055	100.0	3,813	103.7	3,200	109.5	2,660	100.0	2,380	100.0	2,176	100.0	2,028	100.0	2,298	100.0	2,221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준수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준수율을 생활시설만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의 열악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수준의 인건비가 아닌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비교단위가 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의 수준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직급별로 분석해 보면, 원장은 15호봉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7.5%정도 수준이고, 사무국장은 15호봉 기준 97.4%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시설의 직급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원장을 포함하여 약 98% 전후 수준이었다. 다만, 직급별로는 사무국장과 기능직이 원장이나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그리고 선임 생활지도원 보다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3-3]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직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지역	평균	15호봉	15호봉	15호봉	15호봉	10호봉	10호봉	7호봉	7호봉	5호봉	5호봉
가이드라인		4,055	4,055	3,679	3,679	2,922	2,922	2,380	2,380	2,028	2,028
평균	100.3	4,030	99.4	3,677	100.0	2,944	100.7	2,395	100.6%	2,034	100.3%
서울	104.3	-	-	3,822	103.9	3,078	105.3	2,511	105.5%	2,081	102.6%
부산	100.0	4,055	100.0	3,679	100.0	2,922	100.0	2,380	100.0%	2,028	100.0%
대구	99.6	4,031	99.4	3,638	98.9	2,906	99.4	2,380	100.0%	2,028	100.0%
인천	99.1	3,867	95.4	3,679	100.0	2,922	100.0	2,380	100.0%	2,028	100.0%
광주	100.6	4,056	100.0	3,736	101.6	2,927	100.2	2,418	101.6%	2,026	99.9%
대전	100.0	4,055	100.0	3,679	100.0	2,922	100.0	2,380	100.0%	2,028	100.0%
울산	97.9	3,878	95.6	3,577	97.2	2,846	97.4	2,367	99.4%	2,021	99.7%
세종	100.0	4,055	100.0	3,679	100.0	2,922	100.0	2,380	100.0%	2,028	100.0%
경기	100.3	4,087	100.8	3,666	99.7	2,957	101.2	2,381	100.0%	2,028	100.0%
강원	99.9	4,047	99.8	3,646	99.1	2,918	99.9	2,402	100.9%	2,021	99.6%
충북	100.1	4,073	100.5	3,633	98.8	2,958	101.2	2,398	100.8%	2,019	99.6%
충남	99.9	4,044	99.7	3,679	100.0	2,922	100.0	2,380	100.0%	2,028	100.0%
전북	101.4	4,083	100.7	3,666	99.7	2,953	101.1	2,442	102.6%	2,090	103.0%
전남	100.0	4,053	100.0	3,632	98.7	2,906	99.5	2,401	100.9%	2,050	101.1%
경북	99.1	3,999	98.6	3,627	98.6	2,878	98.5	2,370	99.6%	2,033	100.2%
경남	99.6	4,039	99.6	3,658	99.4	2,911	99.6	2,370	99.6%	2,019	99.5%
제주	102.6	4,055	100.0	3,813	103.7	3,200	109.5	2,380	100.0%	2,028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준수현황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관장 15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 총액은 4,083만원으로 인건비 준수율은 100.7%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급별로는 원장을 포함하여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등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상회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과 비교시 원장은 전국평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보다도 다소 높았고, 전라북도의 부장과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이처럼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할지라도 직급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시군, 및 운영법인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경제적 지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직급별로도 지역간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당 제도 등을 활용하여 동일직급의 동일호봉간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3-4]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직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지역	평균	15호봉	15호봉	15호봉	15호봉	10호봉	10호봉	7호봉	7호봉	7호봉	7호봉	5호봉	5호봉	5호봉	5호봉
복지부 기준		3,887		3,651		3,064		2,479		2,277		1,918		1,905	
평균	100.5	4,036	99.5	3,805	99.8	3,175	99.2	2,634	101.5	2,410	101.3	2,042	100.7	2,010	100.1
서울	112.2	-	0.0	3,822	100.2	-	0.0	3,265	125.9	2,817	118.4	2,289	112.9	2,081	103.6
부산	99.4	4,055	100.0	3,679	96.5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	-
대구	98.4	4,055	100.0	3,813	100.0	2,845	88.9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인천	99.1	3,813	94.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광주	100.0	4,055	100.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대전	100.0	4,055	100.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울산	99.9	4,061	100.2	3,817	100.1	3,203	100.1	2,594	100.0	2,381	100.0	2,018	99.5	2,001	99.6
세종	100.0	4,055	100.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경기	100.6	4,083	100.7	3,822	100.2	3,206	100.2	2,643	101.9	2,400	100.8	2,031	100.1	2,008	100.0
강원	99.3	4,041	99.7	3,791	99.4	3,181	99.4	2,577	99.3	2,366	99.4	2,008	99.0	1,990	99.1
충북	99.8	4,048	99.8	3,807	99.8	3,194	99.8	2,589	99.8	2,376	99.8	2,022	99.7	2,003	99.7
충남	100.0	4,055	100.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전북	100.1	4,055	100.0	3,813	100.0	3,213	100.4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전남	100.1	4,073	100.5	3,858	101.2	3,195	99.8	2,589	99.8	2,389	100.4	2,015	99.3	2,004	99.8
경북	100.4	4,045	99.8	3,804	99.8	3,187	99.6	2,585	99.7	2,446	102.8	2,045	100.8	2,011	100.1
경남	99.4	3,969	97.9	3,787	99.3	3,177	99.3	2,584	99.6	2,379	99.9	2,033	100.2	1,998	99.5
제주	100.0	4,055	100.0	3,813	100.0	3,200	100.0	2,594	100.0	2,380	100.0	2,028	100.0	2,008	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준수현황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율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보면, 관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급별로 모든 직급에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 평균 준수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가령,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5%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월평균 인건비가 평균 405.5만원으로 100%를 준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무국장의 전국 평균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8%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평균 인건비가 381.3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무국장의 경우 전남으로 평균 인건비가 383.8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2% 상회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수준이 아니라 최소수준을 정한 권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이 100%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5]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율 현황(2017~2021)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94.1	94.4	95.0	94.1	94.1
정신요양시설	90.5	92.2	93.2	93.1	94.0
노인보호전문기관	83.0	83.0	82.4	82.4	83.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4.3	84.3	86.6	83.3	84.6
아동공동 생활가정	64.6	80.9	82.5	84.3	87.2
학대피해 아동쉼터	64.6	80.9	82.5	84.3	87.2
아동보호 전문기관	86.5	81.3	86.9	87.4	90.5
지역아동센터*	65.8	72.8	78.4	78.5	79.8
지역자활센터	89.5	90.4	90.4	90.4	90.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0	100	100	100	100

주.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니라 운영비 일부 지원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은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시설에 적용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은 지역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상이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시설은 대부분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지침에 따라 보수기준이 설정되다 보니 각 시설별로 인건비의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021년 기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4.1% 정도이고 정신요양시설은 94.0%, 노인보호전문기관 83.8% 등이다. 특히,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의 79.8%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고지원시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 90.7%, 아동공동생활가정 87.2%, 학대피해 아동쉼터 87.2% 등으로 대체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이나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과의 부족한 인건비의 격차를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특별수당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수준은 지방이양시설보다는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나 종사자의 규모가 적은 5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 등의 종사자는 동일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일임금제 적용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3-6] 시·군·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시·군·구	평균	생활시설	사회·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전체	99.9%	98.3%	101.4%	100.1%
전주시	100.0%	100.0%	100.0%	100.0%
군산시	99.5%	98.4%	100.0%	100.0%
익산시	99.5%	98.5%	100.0%	100.0%
정읍시	100.0%	97.8%	101.6%	100.6%
남원시	100.0%	100.0%	100.0%	100.0%
김제시	99.3%	95.6%	102.4%	100.0%
완주군	100.0%	100.0%		100.0%
진안군	104.3%	100.0%	112.9%	100.0%
무주군	100.0%	100.0%	100.0%	100.0%
장수군	100.0%		100.0%	100.0%
임실군	96.2%	92.4%	100.0%	
순창군	100.0%	100.0%		
고창군	98.5%	95.6%	100.0%	100.0%
부안군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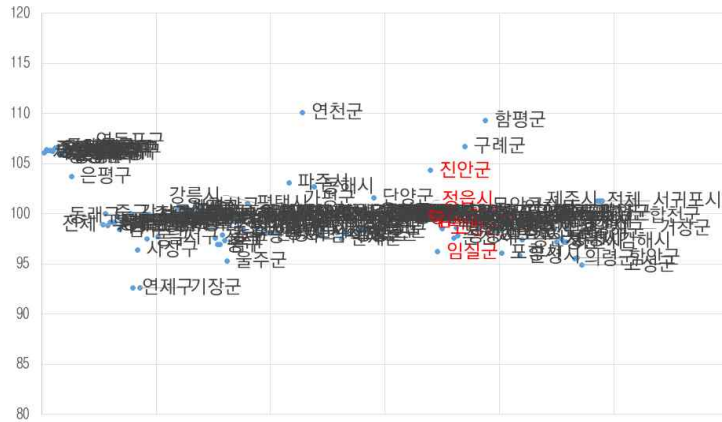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말 기준 준수현황

전라북도의 14개 시군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보면 시군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주시와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등의 지역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설보다도 생활시설의 준수율이 사회복지관이 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보다도 낮게 나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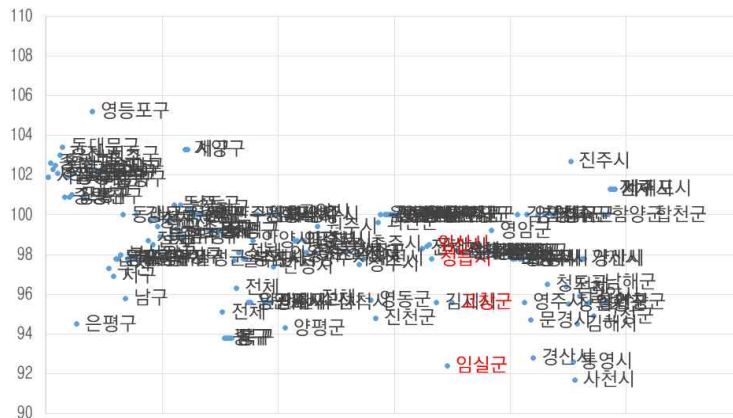
전라북도 시군의 인건비 준수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진안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 준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진안군은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관 모두 준수율을 100% 충족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준수율이 112.9%에 이르고 있다.

14개 시군 중에서 인건비 준수율이 가장 낮은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모두 인건비 준수율을 100% 충족하고 있는데 반해 생활시설만 98%대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지역내에서 인건비 준수율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상존하고 있어 시설별 종사자들간의 위화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복지시설의 유형 뿐만 아니라 시설간 인건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1] 사회복지시설 평균 준수율 현황



[그림3-2] 사회복지 생활시설 평균 준수율 현황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대체로 95%에서 105%에 집중되어 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경우 진안군 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임실군은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평균 준수율을 보면, 대체로 전라북도의 다수 시설은 100%이하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에서도 임실군 다른 시군의 평균 준수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고창군도 95%대의 준수율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속해있다.

〔그림3-3〕 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균 준수를 현황

구/군/시	평균 준수율 (점수)
함평군	120
진안군	113
연천군	110
무안군	105
진주시	103
진주시	102
진주시	101
진주시	100
진주시	99
진주시	98
진주시	97
진주시	96
진주시	95
진주시	94
진주시	93
진주시	92
진주시	91
진주시	90
진주시	89
진주시	88
진주시	87
진주시	86
진주시	85
진주시	84
진주시	83
진주시	82
진주시	81
진주시	80

[illegible]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타시도의 시군에서는 파주시 등이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전라 북도의 14개 시군은 대부분 100%의 평균 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대체로 타시도의 모든 시군이 평 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 편차 발생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격차는 2005년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매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보조시설간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보정을 위해서는 급여실태조사에 기초한 지역별 수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시군, 그리고 수탁법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급여가이드라인 준수에 필요한 각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해야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의 편차를 교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는 공통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공통업무로는 보호 및 생활서비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문서 및 전산관리 등이고 기타업무로는 개별 시설별로 다양한 부가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영양 및 생활서비스, 노인시설은 부가업무, 기타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보건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근무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노사발전재단, 2019).

[표3-7] 사회복지시설 직무현황

직무내용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기타 요양시설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보호 및 생활서비스	○	23.1	○	25.5	○	26.1	○	33.3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	23.5	○	7.9	×	6.0	○	5.0
개별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	13.5	○	20.2	○	9.6	○	16.9
재무회계관리	×	0.0	×	7.4	×	0.0	×	0.0
인사관리	×	0.6	×	0.0	×	5.0	×	9.2
외부 자원개발 관리	×	3.1	×	6.7	×	14.9	×	5.8
시설 및 재산관리	×	7.0	×	2.2	×	3.7	×	6.4
보건 및 건강관리서비스	×	6.9	×	4.8	×	6.8	×	15.0
영양 및 위생서비스	×	15.9	×	8.0	○	5.8	×	0.0
문서 및 전산관리	×	0.2	○	7.4	×	2.3	×	5.2
부가업무	×	6.2	○	10.0	×	20.3	×	3.6

자료 : 보건복지부(2016)

[표3-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

시설 유형	구분	시설 종류	지참상 종사자수	인건비 재원	인건비 기준	호봉제	인건비 분리
노인 복지시설	생활	노인주거복지시설	6-13인	국고	복지부시설 지침	적용	분리
	생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6인	국고	복지부권고	적용	통합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3-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7-18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통합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7-9인	국고	복지부권고	적용	통합
	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기타	노인상담소	4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통합
아동 복지시설	생활	아동양육시설	2-29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아동일시보호시설	2-1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아동보호치료시설	2-17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자립지원시설	2-3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공동생활가정	3-5인	국고		미적용	분리
	생활	학대피해아동쉼터	5인	국고	시설자체지침 (최저임금수준)	미적용	분리
	이용	지역아동센터	1-3인	국고		미적용	통합
	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4-15인	국고	시설자체지침	적용	통합
	이용	가정위탁지원센터	10인	지방	시설자체지침	적용	통합
	생활	장애유형별거주시설	5-80인	국고	복지부시설지침	적용	통합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5-62인	국고	복지부시설지침	적용	통합
	생활	장애인영양아시설	5-36인	국고	복지부시설지침	적용	통합
	생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6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4인	국고	복지부시설 지침	적용	통합
	이용	장애인복지관	20-42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체육시설	3-20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7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수어통역센터	3-6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점자도서관	4-6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3-17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인-3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9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8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정신재활 시설	생활	정신요양시설	3-32인	국고	복지부시설 지침	적용	분리
	생활	정신재활시설	2-16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3-11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노숙인 시설	생활	노숙인재활시설	2-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생활	노숙인재활시설	2-80인	국고	대구시방침	적용	분리
	생활	노숙인요양시설	2-43인	국고	대구시방침	적용	분리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7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이용	쪽방상담소	3-7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사회복지관	이용	사회복지관	12-15인	지방	복지부권고	적용	분리
결핵·한센시설	생활	결핵·한센시설	12인	국고	대구시방침	적용	분리
지역자활센터	이용	지역자활센터	4-9인	국고	복지부시설 지침	적용	통합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다함께돌봄센터	3인	국고	시설자체지침	미적용	통합

다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로 구분되는 데 가령,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 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시설 자체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간의 인건비에서 격차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배분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호봉제를 일부 시설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의 시설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상담소 등의 시설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이 국고지원이 아닌 지방이양시설로서 재원이 분류되고 있고, 국고지원시설로는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지방이양시설로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과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등은 국고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재원의 차이와 함께 인건비의 지급기준도 시설의 유형별로 매우 상이한 것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격차를 확대하는 한 요인이 된다. 가령,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반해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시설 자체 지참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다수 복지시설은 인건비의 지급형태로 호봉제를 택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인건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호봉제를 기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원하지 않고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어 시설간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임금체계를 보면, 국비지원시설은 정신요양시설 등을 포함하여 총 27개소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지방이양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3개소이다.

[표3-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및 임금체계 현황

구 분	시 설 구 분		종사자(명)		비 고
	시 설 유 형	개소수(개소)	정 원	현 원	
국비지원시설	총 계	38	728	5,097	4,938
	소 계	19	124	2,154	2,09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14	64	6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	22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	10	10	
	가정폭력 통합지원 1366	1	17	17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해바라기 아동형)	1	11	11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해바라기 위기형)	1	10	10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해바라기 통합형)	1	16	16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4	20	2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352	352	
	청소년쉼터	1	6	1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5	5	
	장애인(법인운영)거주시설	44	1,159	1,071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	3	3	
	노인양로	6	98	95	
	정신요양시설	4	169	164	
	광역·지역자활센터	18	121	149	
	노인보호전문기관	2	17	17	
	노숙인 재활, 요양	3	49	51	
	학대노인쉼터	1	5	5	
	소 계	6	365	966	975
	청소년쉼터	4	18	27	
	지역아동센터	286	646	646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40	120	120	
	학대피해아동쉼터	4	24	24	
	아동보호전문기관	5	88	88	
	다함께 돌봄센터	26	70	70	
	소 계	11	200	1,520	1,415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지방이양시설)	아동양육시설	14	378	320	
	아동보호치료시설	1	33	28	
	아동자립지원시설	1	4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14	1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7	674	6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	195	15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2	24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41	44	
	정신재활시설	24	134	134	
	노숙인 자활시설	2	14	14	
	도립 노인복지관	1	9	9	
	소 계	2	39	437	436
	노인복지관	22	261	261	
	사회복지관	17	176	175	

[표3-1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쟁점

구분	주요쟁점
종사자 처우 지침	• (방향) 사회복지시설 중 그룹 홈 등 소규모 기관에 한해 근로관계법 적용 예외가 존재 • (지침 배포) 사회복지시설 또는 바우처 기관 전체에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 • (인력관리) 채용 시 종사자 호봉인정과 건강관리 내용은 일부시설에만 적용 • (인건비 지급)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인 반면, 바우처 기관은 시급제로 운영 • 사회복지시설은 명절휴가비, 직원수당 등 존재하나 바우처 기관은 부재 • (사회보험) 4대 보험은 모두 지급되어 있으나, 배상 및 상해보험은 차별적으로 적용 • (근무형태)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이 존재하나 교대제, 연장·초과근로 제한시간 설정, 교대제 및 대체인력 채용은 차별적으로 지침화 ※ 특히 휴게시간 공지는 소수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침화 • (복리후생수당) 사회복지시설은 연·월차수당 제공이 지침화 되어 있지만 바우처 기관은 부재 ※ 휴업수당(장애인 활동지원), 특수근무수당은 일부 아동시설에만 존재 • (고충처리) 노인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일부시설에 한해 존재
통계 현황 분석	• (종사자 수) 복지부 중점관리 대상 22개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돌봄 종사자는 45.0%인 2.8천명 • (바우처 시설) 17년 말 기준, 4대 바우처 종사자는 9.2만 명이며, 산모산생아 활동지원사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60시간미만 종사자 증가율이 13.5% • (이직률, 근무연수) 17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은 33.2%이고, 바우처 종사자중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비중은 전체 중 24.3% • (호봉분포) 전체 6.2천명의 종사자 중 97.7%가 전체 31호봉 중 20호봉에 분포 ※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 등 돌봄직 종사자는 20호봉 안에 98.9%가 분포 • (임금격차) 사회복지시설 중 '16년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정규직 임금이 낮은 곳이 11곳(19개 중)이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도 낮은 곳이 존재 ※ (바우처 시설) 평균 근무시간 110시간을 가중 시, 월평균 88.5만으로 추정 • (교대제) 복지부 중점관리 복지시설 17개 중 교대제 운영시설이 67.9%이며 교대제 운영시설의 평균 근무시간은 최소 158시간(4조 3교대)에서 최대 316시간 ※ (바우처 중복 소속) 종사자 중 2개 기관 소속 종사자가 5.9%로 점차 증가 추세
전문가 논의	•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자성 현황 · (이슈 1)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 종사자의 인식 부족 · (이슈 2) 24시간 돌봄제도와 임금 지급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부당 노동행위 발생 · (이슈 3) 주·연차 수당, 퇴직금이 바우처 인건비에 미포함되어 최저임금법을 위반 · (이슈 4) 휴업수당 미지급 등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로 인한 근로자 권리 상실 • 사회복지 종사자의 소재 적용 · (이슈 5) 대체인력부족, 기관의 사업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 (이슈 6) 가정노동자로서의 산재신청의 어려움 · (이슈 7) 근로격계 산재신청에 대한 낮은 승인율 · (이슈 8)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배상문제 • 사회복지시설의 교대제 운영 · (이슈 9) 인력배치오류로 인한 과도한 근무시간 · (이슈 10) 과도한 근무시간 외 경조사 등 실질적인 3교대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기준 필요 · (이슈 11) 야간 및 휴일근로를 고려한 교대제 인력배치기준 개선 · (이슈 12) 기존 직무 배치기준 변경을 고려한 인력배치기준 필요 •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과 지급 · (이슈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위배되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임금 · (이슈 14)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인 시설장에 대한 임금지급 · (이슈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간의 수당에 대한 예산 확보 · (이슈 16) 근무시간 개정으로 인한 휴게시간 제공에 관한 지침 부재 · (이슈 17) 사회복지시설의 공무원 보수체계 벤치마킹으로 인한 비동기유발 및 불공정성 • 돌봄종사자가 임금 차별성 · (이슈 18) 동일 직무임에도 바우처 종사자간 인건비 차별 · (이슈 19) 돌봄 바우처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간의 임금격차 • 종사자 처우관련 정보시스템 · (이슈 20) 시설종사자 교육 부족, 구체적인 근무형태 항목으로 부정확한 종사자 정보 · (이슈 21)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종사자 처우관련 통계생성 부족 · (이슈 22) 통계정보시스템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입력기준 변경 • 종사자 처우관련 시설평가 · (이슈 23) 패널티 없는 정기 시설평가 · (이슈 24) 시설평가 시 종사자 처우관련 평가기준의 부재 · (이슈 25) 현장점검을 통한 시설 행정처분 시, 종사자 처우관련 항목의 부재 •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처우관련 정책 추진 · (이슈 26) 단기적 차방에 불과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자료 : 김유경 외(2020) 재구성

3. 부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이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인건비에서 상당한 격차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복지시설의 소관부처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매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직급별로 제시하고 있고, 일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운영지침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의 시설들은 시설의 유형별로 별도의 인건비 지침을 두고 각기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직원 기본급 호봉기준표를 제시하고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이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호봉별로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고, 기타 여성권익시설의 경우는 인건비 예산편성단가를 지급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각각 개별시설별로 직급과 직위기준, 기본급 등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부처별로 그리고 시설의 유형별로 별도의 인건비 지침을 운용하다보니 각 시설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표3-11]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를 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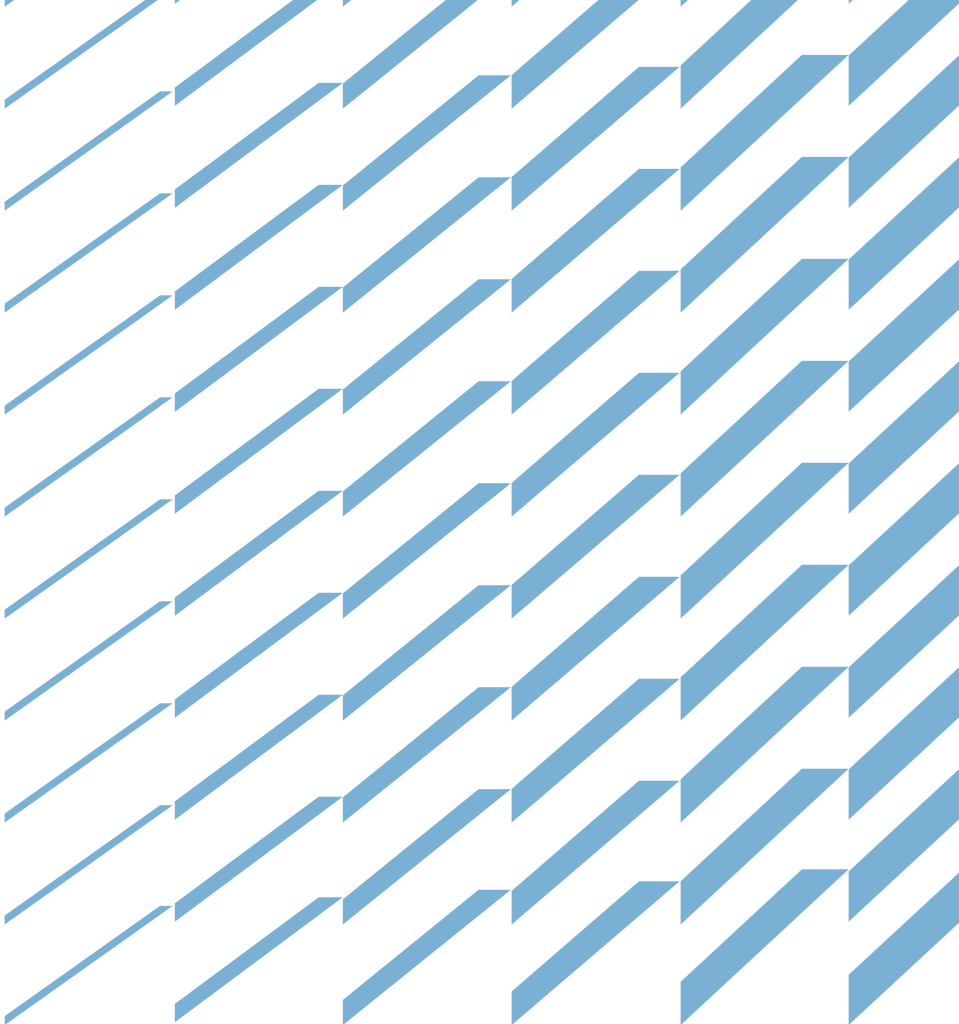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소관부처	해당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
보건복지부	생활시설·이용시설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없고, 기본운영비의 90%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 집행 *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하한선만 규정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직원 기본급 호봉기준표 제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 준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제시
여성가족부	기타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예산편성단가를 지급기준으로 제시 * 임의적 지급단가 감액조정 불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제시
	청소년 쉼터	호봉제와 연봉제 운영안 제시 * 호봉제 : 여성가족부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적용 * 연봉제 : 직군별 연봉 하한액 제시
	청소년수련시설	직급 및 직위기준, 기본급 기준표 및 수당 제시

자료 : 최은희 외(2020)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 재구성, 충북연구원

[표3-1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복지부 가이드라인	복지부 시설지침	시설자체 지침	여가부시설 지침
노인복지 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 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 아동쉼터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단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수어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 영유아시설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정신재활 시설	· 정신재활시설 ·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정신요양시설		
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한부모 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이주여성쉼터 ·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건강가정센터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부더별로 세분화시켜보면, 크게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복지부 시설지침 적용시설 그리고 시설 자체지침 적용시설, 여가부 시설 지침 적용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시설 자체 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고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이 있다.



제4장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제 4 장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실태를 지역별, 유형별, 직급별로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를 주관으로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와 수당 등의 보수에 대한 현황과 함께 복리후생 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반현황으로 운영주체, 건립형태, 이용자 현황, 직원수, 종사자별 급여현황 그리고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로여건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보장 정도 그리고 인권보장 관련 인식 및 향후 개선방안 등의 조사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절차와 방식은 전라북도를 주관으로 14개 시군 시설담당자를 통해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된 내용을 원자료를 제공받아 기관의 보수 및 급여체계 그리고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조사는 복지시설의 회계나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사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그리고 인권보장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평가를 기초로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4-1]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내용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기관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조사	복지시설 회계담당자	· 사업비 및 인건비 비율 · 직급별 인건비 현황(기본급 등) · 직급별 수당 현황 · 복리후생(연차수당 등) 현황 ·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복지시설 담당자
사회복지종사자 시설운영 개선방안 수요조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근로조건 · 복리후생 · 인권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시설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복리후생 이용현황 그리고 인권침해나 보장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수준을 재원의 구성에 따라 정리하고 지역별, 직급별 분석하여 향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와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추정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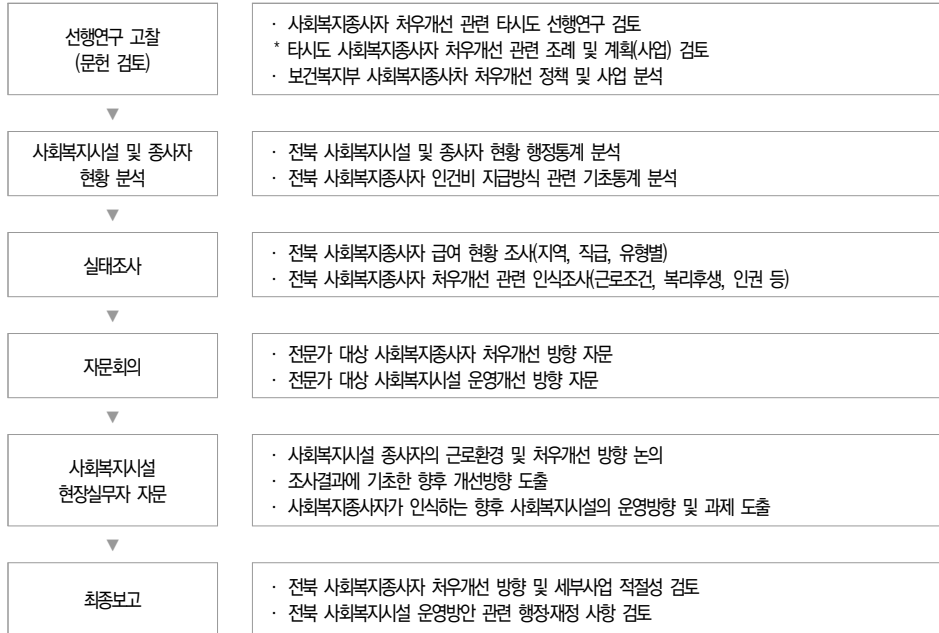
조사절차와 방식은 전라북도를 주관으로 14개 시군 시설담당자를 통해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된 내용을 원자료를 제공받아 기관의 보수 및 급여체계 그리고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절차는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이나 계획은 법률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도에서 관련 계획과 세부사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타시도의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여기에 타시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동향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의 급여실태 등 행정통계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나 처우정도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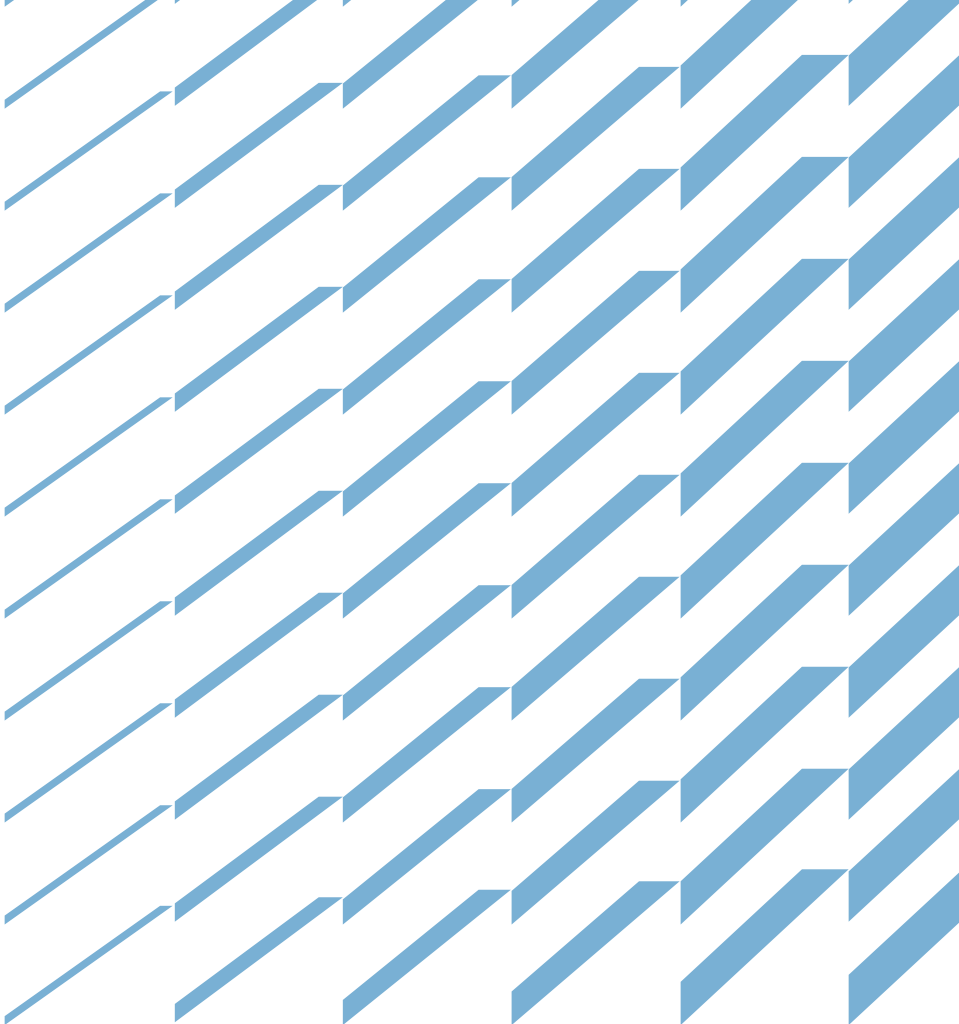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표4-2] 연구체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는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뿐만아니라 지방이양시설 그리고 도비지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실태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현황 그리고 연가사용일수나 연가보상 여부 등 복리후생 관련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처우개선 현황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 등을 거쳐 조사결과에 기초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향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황

1.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수준 진단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지원실태
3.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제 5 장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황

1.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수준 진단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원수준은 소관부처와 시설유형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의 약 95%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급여수준은 일반공무원 급여의 약 90%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연봉급을 기준으로 일반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원장 1호봉은 공무원 5급의 연봉총액은 91.7%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는 호봉이 증가할수록 공무원의 연봉총액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6급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무국장의 연봉총액을 비교해보면 원장보다는 그 격차가 크지 않지만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경력이 오래될수록 유사지급의 공무원 급여의 약 90%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의 향상을 위한 쟁점은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용되지 않는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의 유형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단일화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동일한 기준하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단일임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간의 인건비 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상실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정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수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건비 수준을 공무원 인건비의 수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5-1]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준수율 현황(2017~2021)

(단위 : %)

구분	인건비 현황(백만원)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2019년	202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478,750	505,569	94.1	94.4	95.0	94.1	94.1
정신요양시설	71,883	72,736	90.5	92.2	93.2	93.1	94.0
노인보호전문기관	5,083	5,703	83.0	83.0	82.4	82.4	83.8
노인양로시설	33,578	35,727		92.2	91.7	9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73	897	84.3	84.3	86.6	83.3	84.6
아동공동 생활가정	14,896	16,099	64.6	80.9	82.5	84.3	87.2
학대피해 아동쉼터	3,693	4,137	64.6	80.9	82.5	84.3	87.2
아동보호 전문기관	15,872	17,180	86.5	81.3	86.9	87.4	90.5
지역아동센터*	110,959	115,401	65.8	72.8	78.4	78.5	79.8
지역자활센터	46,255	52,522	89.5	90.4	90.4	90.4	90.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118	1,073	100.0	100.0 (인건비운영비통합)	100.0 (인건비운영비통합)	100.0	100.0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29,893	32,051		83.2	84.3	86.5	
결핵시설	473	391		98.5	98.5	98.6	
한센시설	2,696	2,657		98.7	98.9	99.3	

주.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니라 운영비 일부 지원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기준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총액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약 5.1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1.15천억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727억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은 94.1%, 정신요양시설 94.0%, 노인보호전문기관 83.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4.6%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고지원시설 중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낮은 79.8%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차이는 시설별로 최소 79.8%에서 최대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국고와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 그리고 제주도와 인천 등의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임금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일임금체계에 도입에 대한 검토와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표5-2] 인건비가이드라인 생활/이용시설의 통합 및 공무원 직급과 비교

공무원 직급	가이드라인상 직위체계		하한값 (1호봉)	상한값 (31호봉)	시설 유형					
	생활	이용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노인) 사회복지직	이용시설 (장애인) 일반직	이용시설 (사회·노인) 사무직	이용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관리직	이용시설 (사회·노인) 의료직
5.5급	원장	관장	2,614,000	5,013,500	원장	관장	관장			
6급	사무국장	부장	2,463,200 2,343,700	4,756,700 4,636,500	사무국장	부장	1급			
7급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2,138,300	4,233,200	과장 생활복지사	과장	2급			
의료		의료직	2,033,900	3,915,200						1급
8급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2,009,900	3,885,700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3급			
의료 사무 관리		의료직2	1,972,900	3,691,100						2급
		사무직1	1,960,500	3,887,300				1급		
		사무직2	1,935,600	3,670,400				2급		
		관리직1	1,924,600	3,835,500					1급	
		의료직3	1,918,200	3,597,000						3급
		사무직3	1,914,000	3,577,800				3급		
9급	생활원	사회복지사	1,910,300	3,587,000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4급			
의료 사무 관리		관리직2	1,893,300	3,537,000					2급	
		의료직4	1,877,800	3,449,900						4급
		사무직4	1,872,400	3,459,300			5급	4급		
9급	관리직	관리직	1,846,800	3,450,100	관리직 (관리원 경비원)				3급	
	기능직	사무직	1,822,500	3,372,100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4급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직위표를 보면, 생활시설은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지도원, 생활원, 관리직 그리고 기능직 등 총 7개의 직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용시설은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8개의 직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료직과 사무직 그리고 관리직의 경우 모두 4개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인건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해 보면, 원장과 관장은 공무원의 5.5급에 해당하고 사무국장과 부장은 6급, 과장과 생활복지사는 7급 그리고 선임생활지도원과 선임사회복지사는 8급, 여기에 생활원과 사회복지사는 9급 정도로 비교된다.

다만 시설의 유형별로 직위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이용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공무원 6급은 장애인복지관의 1급과 유사하고 7급은 2급, 8급은 3급 등과 유사한 급여액으로 비교된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다양한 직위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은 대체로 유사한 직위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장과 생활지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도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립지원시설의 경우도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5-3]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직위체계

시설종류	생활시설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선임)	생활지도원 (직원)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등)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노숙인	사회복지관	이용	●	●	●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	●	●	●	●	●	
	노숙인자활시설	생활	●	●	●	●	●	
	노숙인재활시설	생활	●	●	●	●	●	
	노숙인요양시설	생활	●	●	●	●	●	
노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생활	●	●	●	●	●	
	노인상담소	이용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	●	
	노인복지관	이용	●	●	●	●	●	
	시니어클럽(일자리지원기관)	이용	●	●	●	●	●	
아동	결핵·한센시설	생활	●	●	●	●	●	
	아동양육시설	생활	●	●	●	●	●	
	아동일시보호시설	생활	●	●	×	●	●	
	아동보호치료시설	생활	●	●	●	●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생활	●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	●	●	●	●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이용	●	●	●	●	●	
정신 보건	정신요양시설	생활	●	●	●	●	●	
	정신재활시설(생활)	생활	●	●	●	●	●	
	정신재활시설(이용)	이용	●	●	●	●	●	
	생활 및 주간재활시설	종합	●	●	●	●	●	
시설종류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이용	●	●	●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	×	×	(시설장)	×	(직원)

[표5-4]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이용시설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614,000	2,463,200	2,343,700	2,138,300	2,009,900	1,910,300	1,872,400	1,846,800	1,822,500
2호봉	2,708,400	2,548,900	2,424,100	2,208,800	2,073,500	1,940,600	1,925,500	1,890,900	1,848,100
3호봉	2,811,400	2,645,900	2,517,400	2,280,900	2,145,000	1,991,500	1,973,200	1,935,800	1,891,600
4호봉	2,918,700	2,741,400	2,613,200	2,378,500	2,217,000	2,051,200	2,025,000	1,979,400	1,933,900
5호봉	3,047,600	2,850,100	2,716,300	2,481,900	2,290,300	2,113,700	2,082,800	2,021,000	1,975,800
6호봉	3,176,500	2,968,600	2,832,100	2,588,900	2,383,500	2,176,400	2,151,100	2,074,600	2,028,200
7호봉	3,305,400	3,093,100	2,948,100	2,700,700	2,478,800	2,266,500	2,243,400	2,169,100	2,069,800
8호봉	3,435,500	3,223,100	3,072,800	2,813,600	2,574,800	2,360,700	2,334,800	2,250,000	2,132,800
9호봉	3,566,600	3,353,100	3,201,700	2,929,500	2,675,600	2,455,000	2,413,700	2,299,900	2,208,800
10호봉	3,691,200	3,479,900	3,329,300	3,041,100	2,769,400	2,545,000	2,490,500	2,383,300	2,303,300
11호봉	3,815,700	3,595,800	3,448,500	3,144,200	2,863,500	2,628,400	2,570,700	2,467,800	2,361,700
12호봉	3,938,100	3,700,900	3,552,400	3,237,300	2,942,500	2,696,500	2,644,300	2,544,600	2,428,700
13호봉	4,043,200	3,794,200	3,643,600	3,318,700	3,018,400	2,762,700	2,708,300	2,617,400	2,499,300
14호봉	4,129,100	3,881,900	3,734,400	3,397,800	3,091,000	2,827,800	2,759,300	2,678,000	2,555,600
15호봉	4,215,700	3,965,300	3,825,500	3,473,500	3,160,500	2,889,400	2,814,500	2,724,500	2,601,100
16호봉	4,297,700	4,045,300	3,906,800	3,545,000	3,227,400	2,953,400	2,863,300	2,777,600	2,652,000
17호봉	4,374,400	4,112,900	3,977,200	3,613,300	3,290,300	3,017,000	2,909,900	2,829,500	2,703,000
18호봉	4,447,100	4,182,300	4,047,900	3,679,400	3,351,000	3,077,700	2,965,100	2,881,600	2,779,900
19호봉	4,515,000	4,248,500	4,110,800	3,737,900	3,407,200	3,132,200	3,019,500	2,925,500	2,832,900
20호봉	4,575,800	4,311,300	4,171,600	3,796,400	3,462,200	3,185,300	3,074,300	2,967,900	2,877,600
21호봉	4,635,400	4,367,800	4,231,300	3,850,400	3,513,200	3,233,100	3,122,900	3,018,600	2,927,900
22호봉	4,692,800	4,421,000	4,286,200	3,902,700	3,561,600	3,281,300	3,167,200	3,076,000	2,985,700
23호봉	4,746,200	4,474,100	4,338,600	3,952,300	3,608,000	3,325,300	3,217,900	3,135,600	3,042,800
24호봉	4,796,700	4,525,000	4,387,400	3,996,100	3,652,500	3,368,800	3,260,900	3,190,800	3,099,100
25호봉	4,845,800	4,571,600	4,436,200	4,039,600	3,695,200	3,410,000	3,306,200	3,241,800	3,155,800
26호봉	4,886,100	4,617,100	4,478,600	4,082,000	3,737,000	3,447,900	3,346,500	3,286,200	3,208,100
27호봉	4,927,200	4,656,300	4,518,800	4,117,800	3,771,100	3,480,400	3,379,000	3,330,100	3,251,900
28호봉	4,974,400	4,112,900	3,977,200	3,613,300	3,290,300	3,017,000	2,909,900	2,829,500	2,703,000
29호봉	4,990,400	4,715,200	4,584,800	4,178,700	3,830,800	3,533,900	3,420,000	3,394,100	3,318,600
30호봉	5,013,500	4,744,700	4,616,600	4,206,100	3,856,200	3,558,500	3,438,500	3,415,000	3,348,800
31호봉		4,756,700	4,636,500	4,233,200	3,885,700	3,587,000	3,459,300	3,450,100	3,372,100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축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899,100원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1)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지원실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대체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는 국비지원시설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국비지원시설은 복지시설의 소관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시설과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의 경우도 도비이양 가이드라인 적용시설과 시군 이양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시설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비에서 인건비의 일정비율만을 제시하고 있고 인건비의 지급은 별도의 시설 자체 지침으로 지급되는 시설도 있다. 또한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도 각 시설의 유형별로 다양한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사한 직급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각 직급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지도원 등의 직급체계로 구성된 반면, 아동공동생활 가정은 원장과 생활지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5-5] 인건비 지급 기준

구분	구분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선임)	생활지도원 (직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	●	●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		●(선임사무원)	●(사무원)
노인양로시설		●	●	●(간호사)	●(선임간호조무사)	●(사무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센터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요양시설		●(원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지도원)	●(간호조무사)	●(위생원, 관리인)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원장)	●(정신건강전문요원)	●(물류담당사 작업지도원)	●(간호조무사)	●(위생원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원장)		●(종사자)
아동학대피해쉼터	생활			●(시설장)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자활센터		●(관장)	●(실장)	●(팀장)	●(팀장)	●(사례관리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	●	●	●	●
결핵시설						
한센시설						

[표5-6]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건비 현황 (전년대비 증감)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단가기준	단가기간	보조율
장애인거주시설	505,569(4.1%)	●	입소자	연단위	6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73(2.5%)	●	종사자	월단위	40%
노인양로시설	35,727(6.4%)	●	입소자	연단위	68.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897(1.5%)	●	종사자	연단위	50%
노인보호전문기관	5,703(7.5%)	●	종사자	연단위	50%
정신요양시설	72,736(1.2%)	●	종사자	월단위	서울 50% 지방 70%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32,051(3.8%)	●	종사자	월단위	서울 50% 지방 70%
아동공동생활가정	16,099(8.1%)	●	종사자	연단위	40%
아동학대피해쉼터	4,137(12.0%)	●	종사자	연단위	40%
지역아동센터	115,401(4.0%)	×	개소	월단위	48%
아동보호전문기관	17,180(8.2%)	●	종사자	연단위	50%
지역자활센터	52,522(1.4%)	×	개소	연단위	67.6%
결핵시설	391(-17.3%)	×	개소	연단위	50%
한센시설	2,657(-1.3%)	●	종사자	연단위	70%

인건비의 지급기준 또한 시설의 유형별로 상이한데,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양로시설 등은 입소자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의 규모가 결정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입소자가 아닌 종사자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자가 아닌 시설의 개소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직급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보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받는 급여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관적인 원칙하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단일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일임금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한 처우의 필요성에서 제시된 적정한 대안이지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동일한 노동의 조건을 어떤 직무를 기준으로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들 시설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5-7] 단일임금체계 대상 시설 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지역 복지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장애인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체육시설 ·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복지관 ·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 양로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노숙인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쪽방상담소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국비)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응급잠자리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무료진료소 · 노숙인쪽방상담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신	·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 사회복귀시설
한부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	· 아동생활시설 · 아동상담소 ·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아동복지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자립지원시설	· 아동양육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전문기관
여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여성노숙인시설 · 아동그림놀 · 지역아동센터		
기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총 1,701개소 (14,028명)	총 354개소 (2,782명)	총 95개소 (930명)

전술한 바와 같이 시설별 다양한 급여기준이나 지침으로 인해 종사자들간의 보수에 있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단일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타시도의 단일임금제도 시행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단일임금제도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수 사회복지시설은 단일임금 체계내에 편입시킨 서울시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까지를 단일임금제도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아동시설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자립지원 시설 등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5년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단일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20여개 시설의 약 3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단일임금제도로 적용하고 있다.

[표5-8] 타시도 단일임금체계 비교

공무원 비교 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서울		충청북도		부산광역시(안)	
				종사자 규모	경력	종사자 규모	경력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이상	15년 이상	5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5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15년 이상	5인 이상	15년 미만
								5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15년 미만		
		과장	과장	-				5인 미만	15년 미만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 지도원	-	시설 정원 및 승진연한 설정 필요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 지도원	-					-
9급 (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
9급 (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가장 광범위하게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20년에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 약 53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건비의 95% 수준으로 보수기준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에 지원하고 있다.

[표5-9]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현황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2,864	2,867	2,419	2,423	2,146	2,179	2,122	2,164	2,107	2,150	2,092	2,137
2			2,925	2,929	2,473	2,477	2,171	2,189	2,137	2,175	2,122	2,160	2,105	2,147
3			2,991	2,995	2,540	2,545	2,237	2,252	2,153	2,186	2,135	2,170	2,115	2,157
4			3,055	3,058	2,602	2,610	2,284	2,299	2,173	2,197	2,148	2,180	2,125	2,167
5			3,111	3,114	2,663	2,671	2,346	2,362	2,203	2,222	2,163	2,191	2,136	2,177
6			3,263	3,268	2,800	2,810	2,486	2,503	2,231	2,251	2,206	2,224	2,146	2,187
7			3,347	3,353	2,887	2,906	2,574	2,592	2,311	2,331	2,264	2,282	2,161	2,197
8			3,439	3,445	2,976	2,996	2,647	2,665	2,383	2,404	2,345	2,364	2,209	2,226
9			3,520	3,543	3,066	3,087	2,734	2,753	2,468	2,490	2,432	2,451	2,288	2,306
10			3,617	3,641	3,155	3,177	2,810	2,830	2,539	2,561	2,504	2,524	2,382	2,401
11			3,705	3,730	3,241	3,264	2,906	2,927	2,633	2,656	2,589	2,610	2,455	2,475
12			3,763	3,788	3,288	3,311	2,943	2,964	2,674	2,698	2,638	2,659	2,507	2,527
13			3,810	3,836	3,334	3,358	2,999	3,020	2,727	2,763	2,687	2,709	2,548	2,568
14			3,866	3,892	3,383	3,417	3,045	3,091	2,769	2,828	2,733	2,755	2,605	2,626
15			3,918	3,945	3,441	3,474	3,094	3,161	2,817	2,890	2,784	2,807	2,650	2,671
16	4,330	4,360	3,969	3,996	3,488	3,545	3,143	3,228	2,868	2,954	2,832	2,855	2,728	2,750
17	4,378	4,409	4,017	4,045	3,559	3,614	3,206	3,291	2,941	3,017	2,874	2,897	2,779	2,802
18	4,426	4,457	4,074	4,102	3,626	3,680	3,271	3,351	3,001	3,078	2,931	2,955	2,832	2,855
19	4,491	4,523	4,122	4,151	3,684	3,738	3,324	3,408	3,053	3,133	2,982	3,006	2,880	2,903
20	4,558	4,591	4,177	4,206	3,740	3,797	3,373	3,463	3,102	3,186	3,034	3,059	2,937	2,961
21	4,645	4,678	4,245	4,275	3,813	3,851	3,441	3,514	3,167	3,234	3,105	3,130	3,002	3,027
22	4,702	4,736	4,301	4,331	3,868	3,903	3,494	3,562	3,221	3,282	3,155	3,181	3,056	3,081
23	4,754	4,788	4,354	4,385	3,924	3,953	3,543	3,608	3,270	3,326	3,204	3,230	3,108	3,133
24	4,803	4,838	4,391	4,422	3,976	4,005	3,596	3,653	3,323	3,369	3,257	3,284	3,145	3,171
25	4,852	4,887	4,451	4,483	4,023	4,053	3,639	3,696	3,369	3,410	3,273	3,300	3,194	3,220
26	4,913	4,949	4,506	4,538	4,070	4,100	3,697	3,737	3,419	3,448	3,326	3,353	3,221	3,247
27	4,953	4,989	4,562	4,595	4,132	4,163	3,750	3,778	3,438	3,481	3,378	3,406	3,274	3,301
28	4,988	5,024	4,619	4,652	4,144	4,175	3,776	3,802	3,473	3,508	3,431	3,459	3,328	3,355
29	5,047	5,084	4,675	4,709	4,182	4,213	3,811	3,831	3,525	3,541	3,485	3,514	3,381	3,409
30	5,099	5,136	4,730	4,764	4,238	4,270	3,867	3,886	3,575	3,592	3,536	3,565	3,434	3,462
31			4,787	4,822	4,293	4,325	3,924	3,944	3,633	3,650	3,589	3,619	3,487	3,516

자료 : 서울시(202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특히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아닌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단일임금체계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1급은 공무원의 5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임금기준 하에서 1급 16호봉의 기준월급액은 4,330천원이고 5급 10호봉의 기준월급액은 2,539천원이다. 1급 16호봉의 월급액은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의 원장 16호봉에서 17호봉에 해당하는 급여수준이고 5급 10호봉은 선임사회복지사 8호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단일임금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유형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직위나 직급을 어떤 기준하에서 표준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비교직급을 공무원으로 설정하고 5급을 최고 직급으로 최하 9급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는 1급부터 7급까지로 직급구분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시 공무원 5급은 원장이나 관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 1급 수준과 유사하고 공무원 6급은 관장을 포함하여 부장,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별 직급을 유사한 업무와 직무를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지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의 직무를 중심으로 직급을 적용할 경우 업무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가 상이한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되려 보수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경력을 기준으로 직무별 직급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원장이나 관장은 가장 높은 직위인 1급의 보수수준이 적용되지만 복지시설의 종사자 규모에 차이를 두고 직급의 차이를 두어 업무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5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의 원장과 10인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원장과는 업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에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의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종사자의 규모와 경력을 기준으로 보수에 차이를 둬으로써 동일 직무의 상이한 업무의 특이점이 주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원장과 관장은 1급에 해당되지만 종사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경력은 15년 이상인 경우에 1급의 직무를 부여하지만 종사자의 규모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경력이 25년 이상이어야만 1급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단일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직급부여의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와 경력 등 두 가지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에서는 개별 직급의 적용 기준으로 10명 전후의 종사자 규모와 15년 이상의 경력을 기준으로 직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직급별 차이의 기준을 10인보다도 세분화하여 5인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령 부산광역시에서 원장과 관장은 5인 전후의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5년 이상이 면 경력은 15년 이상, 종사자 규모가 25년 이상일 경우 1급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임금현황을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원장은 최하 2.6천만원에서 최고 5.0천만원까지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2.3천만원에서 4.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 및 생활복지사는 최소 2.1천만원에서 최대 4.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선임생활지도원은 2.0천만원에서 3.9천만원, 생활지도원은 1.9천만원에서 3.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5-10] 사회복지 생활시설 직위별 임금현황

시설구분	급여액		직위명							비고
	하한값 (1호봉)	상한값 (31호봉)								
생활 시설	2,614,000	5,013,500	원장							
	2,343,700	4,636,500		사무국장						
	2,138,300	4,233,200			과장 생활복지사					
	2,009,900	3,885,700				선임 생활지도원				
	1,910,300	3,587,000					생활지도원			
	1,846,800	3,450,100						관리직		
	1,822,500	3,372,100							기능직	
	1,846,800	3,450,100								관리직
	1,822,500	3,372,100								기능직
	2,614,000	5,013,500	관장							
이동 시설 (사회, 노인)	2,343,700	4,636,500		부장						
	2,138,300	4,233,200			과장					
	2,009,900	3,885,700				선임 사회복지사				
	1,910,300	3,587,000					사회복지사			
	2,614,000	5,013,500	관장							
(장애인) 이동 시설	2,463,200	4,756,700		사무국장						
	2,343,700	4,636,500			1급					
	2,138,300	4,233,200				2급				
	2,009,900	3,885,700					3급			
	1,910,300	3,587,000						4급		
	1,872,400	3,459,300							5급	

다음으로 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위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관장은 최소 2.6천만원에서 최대 5.0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장은 2.3천만원에서 최대 4.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관장, 사무국장, 1급에서 5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장은 2.6천만원에서 최대 5.0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이용시설의 사무국장은 최소 2.5천만원에서 최대 4.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급은 2.3천만원에서 최대 4.6천만원, 2급은 2.1천만원에서 최대 4.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각 직급별로 호봉에 따라 유사한 급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직급별 급여액 수준을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생활시설의 원장과 이용시설의 관장, 그리고 이용시설의 부장과 생활시설의 사무국장은 유사한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과장은 장애인이용시설의 1급의 직위체계와 유사한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직급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각 시설별로 상이한 직급체계를 호봉에 따라서 균등한 단일한 급여체계로 정리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고지원시설의 경우는 지방이양시설과 다르게 직위체계가 각 시설의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단일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다.

[표5-11] 시설별 직위체계 및 호봉표 존재여부

구분	직위체계		호봉표
	기준 직위활용	자체 운용	
장애인거주시설	●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	●
노인양로시설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정신요양시설	●	-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	-	●
아동공동생활가정	-	●	×
아동학대피해쉼터	-	●	×
지역아동센터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지역자활센터	-	●	●
결핵시설	●	-	●
한센시설	●	-	●

가령, 직위체계에서 기준 직위를 활용하는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그리고 결핵시설과 한센시설이 해당한다. 노인양로시설과 학대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은 자체 직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시설 중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결핵 및 한센시설 등은 호봉표를 활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호봉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단일임금 적용을 통한 보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시설별로 다양한 직위 및 호봉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설별로 종사자의 규모나 업무의 강도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위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설종사자들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동일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령의 제정에서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유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고 하는 현상은 모든 지역이 유사하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나 세부사업의 내용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의 급여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였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도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 공무원 임금의 95%수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국비지원시설까지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였다.

서울시는 2020년도에 시차원의 단일임금제도를 국비지원시설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도 3.88% 인상하는 등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복리후생제도도 개편하였다. 2021년도에는 일부 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단일임금제도를 전체 시설로 확대적용하여 단일임금제도를 완성하였고, 자녀돌봄휴가에 더하여 건강검진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복리후생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과 60일 이내 유급병가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복리후생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인건비 지원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대해서 호봉제 적용을 추진하였고, 인건비 지원 기준이 낮은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까지 임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급여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설책임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는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그리고 복지포인트 등의 제도도 함께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통해 적정 인건비 준수와 보수체계 일원화, 자녀돌봄휴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등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유급병가제 확대와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종사자 안전보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5-12]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현황

구분	시설유형	가이드라인 여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지역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	●		●	●
	지역자활센터	별도지침	X(처우수당)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양로시설	별도지침	X(보존수당)	X(복지수당)	●	X
	노인공동생활가정	별도지침	X(보존수당)	X(복지수당)	●	X
노인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	●	●	●	●
	노인교실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시니어클럽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X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학대피해노인보호센터	●			X(특별수당)	●
	아동양육시설	●	●	●	●	●
아동복지 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지침	X(처우수당)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아동보호치료시설	●	●	●	●	●
	아동자립지원시설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지침	X(처우수당)	X	●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지침	●	●	●	●
	지역아동센터	별도지침	X(처우수당)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입소생활시설	별도지침	●		●	●
정신건강 시설	주간재활시설	별도지침	●		●	●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별도지침	●		●	●
	정신요양시설	별도지침	X(보존수당)	X(복지수당)	●	●
노숙인 시설	노숙인요양원	별도지침	X(처우수당)	X(복지수당)	●	●
	노숙인재활시설	●	X(처우수당)	X(복지수당)	●	●
	실직자지원센터	별도지침	●	●	●	●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	X(보존수당)	X(복지수당)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X(보존수당)	X(복지수당)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	●
	장애인체육시설	●	●	●	●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	●	●	●
	수어통역센터	●	●	●	●	●
	점자도서관	●	●	●	●	●
	장애인보호작업장	●	●	●	●	●
	장애인근로사업장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X	X(복지수당)	●	-
	건강다문화센터	●	X(처우수당)	X	X(특별수당)	●
	한부모가족지원시설	●	●	●	●	●
여성복지 시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별도지침	●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별도지침	●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별도지침	●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별도지침	●	X(복지수당)	X(특별수당)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x	x		X
청소년 시설	청소년쉼터	시설지침	x	x	X(특별수당)	●
	청소년수련관	●	x	x		X
	청소년수련원	●	x	x		X
	청소년문화의집	●	x	x		X
	다함께 돌봄센터	별도지침				

제주도도 2013년부터 단일임금제도 추진을 위한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2020년 지방이양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제주도의 단일임금 적용대상은 이용시설로가 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95개소에 이른다.

[표5-13] 사회복지시설 수당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역 자활 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청소년시설		공무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상담 복지 센터	수련 시설						
명절휴가비	●	●	●	●	●	●	●	●	●	●	●	×
초과근무수당	●	●	●	●	●	●	●	●	●	●	●	●
가족수당	●	●	●	●	●	●	●	●	●	●	●	●
재해대비 보조수당	×	×	×	×	×	●	●	×	×	×	×	×
연가보상비	×	×	●	×	×	●	●	×	×	×	×	×
정액급식비	×	×	×	×	●	●	●	● (10만원)	×	×	● (5만원)	×
청소년지도사 수당	×	×	×	×	×	●	×	×	×	×	×	×
교통보조비	×	×	×	×	×	●	×	×	×	×	×	×
상여수당	×	×	×	×	●	×	●	×	×	×	×	×
주택수당	×	×	×	×	×	×	●	×	×	×	×	×
정근수당						●	●	×	×	×	×	×
관리자수당								● (기관장 20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		
위협수당												●
건강검진비								×		● (격년 2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 월10만원 ~18만원	
기타						1-3급 관리업무 수당 (월봉 9%) 4-7급 초과근무 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별 차등)	대우 공무원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 직급 보조비 등	관리자 수당				위협수당 장애인돌봄 가정시설 노숙인 시설

[표5-14]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추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급여 기준	서울형 단일임금	복지부 가이드 (일부 단일임금제도)	복지부 가이드 (인천형 단일임금)	복지부 가이드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120%	
가족 수당	공무원 기준	공무원 기준	공무원 기준	공무원 기준	
시간외 수당	*생활시설 · 2교대 40시간 · 일반 15시간 *이용시설 15시간* 시설장 제외	*생활시설 · 2교대 40시간 · 일반 20시간 · 이용시설 5시간	*생활시설 · 2교대 30시간 · 일반 18시간 *이용시설 8시간 (2021. 12. 기간제근로자제외)	*생활시설 · 2교대 40시간 · 일반 20시간 *이용시설 13~15시간	
장액 급식비	10만원	-	-	월 5만원	
관리자수당 (7만장)	20만원	-	-	-	
처우 개선비	국비시설에 대해 시에서 급여차액 지원	국비시설, 처우 낮은 시설 지급	국비시설에 대해 시에서 급여차액 지원	국비시설, 처우 낮은 시설 지급	
종사자 특별 수당	-	-	-	이용시설 월10만원 생활시설 월18만원	
복지 포인트	· 10호봉미만 25만원 · 10호봉이상 33만원	· 10만원	· 10호봉미만 15만원 · 10호봉이상 20만원 · 기간제근로자 5만원	-	· 10년 미만 : 10만원 · 10년 이상 : 20만원
건강 검진비	-	-	격년 20만원 인천의료원 연계	-	
보수 교육비 지원	50% 지원	50% 지원	50% 지원	50% 지원	
유급 병가 (60일)	2019년부터 시행 (국비시설 2020년 시행)	2018년부터 시행	2019년부터 시행 (국비시설 2021부터)	2021년 시행 (국비시설 포함)	
장기 근속 휴가	· 5~10년 5일 · 10~20년 10일 · 20~30년 10일 · 30년 이상 10일	· 5~10년 5일 · 10~20년 10일 · 20~30년 10일	· 10~15년 5일 · 15~20년 5일 · 20~25년 10일 · 25~30년 10일 · 30년 이상 10일	· 5년~10년 5일 · 10년~20년 10일 · 20년~30년 10일 · 30년 이상 10일	
재년 돌봄휴가	연 2일 3자녀는 연 3일	-	연 2일	재년돌봄 연 2일 보육휴가(민4제이하 연 5일)	재년)
기타 특이 사항	-	-	*인건비 낮은 시설 종사자 · 명절휴가비 지원(연100만원) *인건비 기준없는 국비시설 - 호봉제적용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 인건비 낮은 국비지원시설 · 명절휴가비 지원(100만원)	

특히, 제주도는 급여지원체계를 기존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가족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하나의 연봉체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일임금 적용 전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기말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이들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수당을 하나의 연봉체제로 통합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먼저 수당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명절휴가비와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와 대전시는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관리자 수당, 인천시는 건강검진비 대전시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건강검진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검진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형 단일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정액급식비도 매월 1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급여차액을 보전하였고, 2021년 이후부터는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단일임금체계 하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와 보수교육비 그리고 유급병가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단일임금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사회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아동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시비지원시설 20개 유형에 대해서 단일임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처우가 열악한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1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보수교육비, 그리고 유급병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 장기근속휴가제도도 함께 운영중에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인천형 단일임금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수당으로는 서울과 부산 등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의 지급한도는 서울과 부산이 2교대 생활시설의 경우 최대 4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30시간으로 10간이 적고 일반의 경우 최대 18시간으로 서울 15시간보다는 많지만 부산 20시간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는 처우가 열악한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아동쉼터 등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이 낮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급병가 60일, 장기근속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는 아직까지 단일임금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정액금식비와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 특별수당의 경우 이용시설은 10만원 그리고 생활시설은 월 1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수교육비와 유급병가 그리고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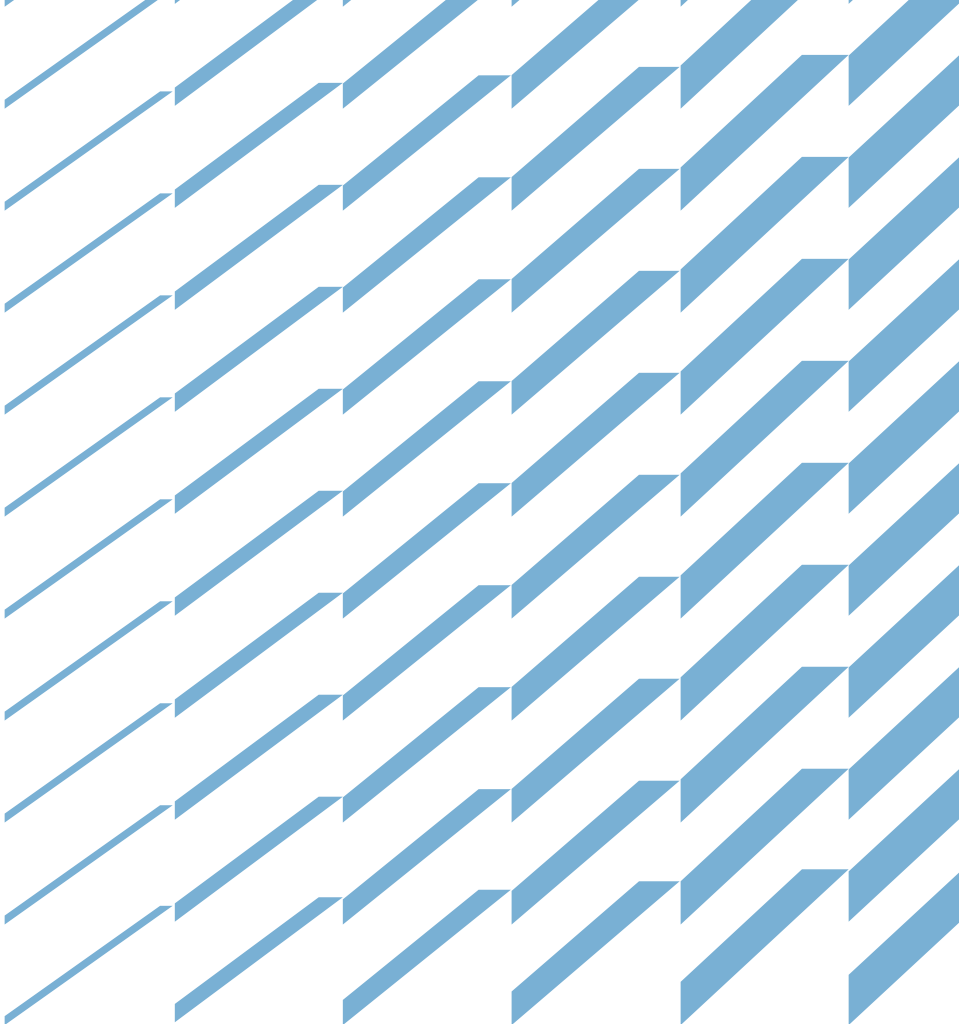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표5-1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체계 적용안

	서울	강원	인천	제주	충남
적용 시기	· 2020년 95% · 2021년 100%	2020년	2019년	2013년	2020년
적용 기준	·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동일	· 복지부 이용시설 가이드라인 · 90%이상 적용 시작으로 연차별 협약	· 그룹홈, 여성권익종사자 봉급기준표 · 복지부 가이드라인 91%	· 제주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동일	· 충남여성권익보호시설 가이드라인 · 별도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국립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적용지위 적급	· 시설장: 4급(대리) · 생활복지사: 5급	· 2020년 시설장:과장급 · 2021년 시설장:부장급 · 생활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 시설장: 과장급 ·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 시설장15년 미만: 1급 · 15년 이상:사무국장 · 생활복지사: 4급	· 시설장: 선임복지사 ·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전체 개소수	· 433개소	· 167	· 177개소	· 65개소	· 247개소
적용 수당	· 가족수당 · 시간외수당 · 관리자수당 · 명절휴가비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 처우수당	· 종합검진비용지원 · 상해보험 지원	· 가족수당 · 시간외수당	· 처우개선비 5년이상: 15만원 3~5년: 12만원 3년 미만: 9만원
시설장 9호봉	· 2020년: 2,597,300원 · 2021년: 2,734,000원	· 2020년: 2,604,150원 · 2021년: 2,880,090원	· 2,922,300원	3,479,630원	2,171,410원
생활복지사 5호봉	· 2020년: 2,092,850원 · 2021년: 2,203,000원	· 2020년: 2,079,200원 · 2021년: 2,105,236원	· 2,088,600원	2,293,500원	1,888,235원
개인시설 종사자	· 시설장: 1,800,000원 · 복지사: 1,800,000원 * 처우수당 50~60만원 제외				

한편,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로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작년까지 100% 지급하고 있고,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외에도 관리자수당과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복지부 이용시설 가이드라인의 90%까지 적용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시간외 수당 그리고 가족수당에 더하여 처우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복리후생으로 종합검진비와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도 단일임금제도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편입하지는 않았지만 처우개선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체계 내에서 경력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직위에 따라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제6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일반현황
2.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3.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4.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분석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제 6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일반현황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기본급, 수당, 보수충액, 호봉 등을 조사하였다.

[표6-1] 운영주체별 종사자 급여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0	1	0	2	0	0	0	0	1	0	0	0	4
학대노인쉼터	1	0	0	0	0	0	0	0	0	0	0	0	1
재가노인복지시설	0	0	0	0	0	0	0	0	2	0	0	0	2
노인여가복지시설	7	2	2	0	1	0	0	1	1	1	0	0	15
노인보호전문기관	1	0	0	0	0	0	0	0	0	0	0	0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	1	2	0	1	0	0	1	1	0	0	0	9
아동양육시설	3	4	4	1	0	1	0	0	0	0	0	1	14
아동일시보호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1
아동보호치료시설	0	0	0	0	0	0	0	0	0	0	1	1	2
자립지원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1
공동생활가정	11	8	3	0	2	3	0	0	0	0	1	0	28
아동전용시설	3	1	0	0	0	0	0	0	0	0	0	0	4
지역아동센터	2	44	0	29	4	12	1	1	7	0	4	0	104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	2	6	4	2	5	1	1	0	0	3	2	2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	0	4	0	1	3	0	0	0	0	0	0	8
장애인영양아거주시설	0	0	1	0	0	0	0	0	0	0	0	0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0	1	0	0	0	0	0	0	0	0	0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	3	2	0	1	0	1	0	0	0	0	0	13
장애인복지관	1	0	0	1	1	0	1	1	1	0	0	1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	4	2	3	1	0	0	0	1	0	0	0	24
장애인체육시설	0	0	0	0	0	0	0	0	0	0	1	0	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	1	0	1	1	0	1	1	1	0	0	0	6
수화통역센터	1	0	1	1	1	0	0	1	1	0	1	0	7
장애인보호작업장	3	1	3	2	1	1	1	1	1	0	0	0	14
정신요양시설	1	0	1	0	0	0	0	0	0	0	0	0	2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0	1	1	0	0	0	0	0	0	0	0	0	2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0	0	2	0	1	0	0	0	0	0	0	0	3
노숙인재활시설	0	1	1	0	0	0	0	0	0	0	0	0	2
사회복지관	5	2	3	1	3	0	0	0	0	0	0	0	14
지역자활센터	1	0	2	1	0	1	1	1	1	0	1	0	9
모자이크복지시설	1	2	1	0	0	1	0	0	0	0	0	0	5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1	0	1	0	0	0	0	0	0	0	0	0	2
일시지원복지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1
일반지원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1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	0	0	0	0	0	0	0	0	0	0	0	1
자활지원센터	2	0	0	0	0	0	0	0	0	0	0	1	3
성매매피해상담소	1	0	0	0	0	0	0	0	0	0	0	0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1	1	1	1	0	0	0	0	0	0	0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	2	0	0	0	0	0	0	0	0	0	5
가정폭력상담소	2	2	2	1	0	0	0	0	0	0	0	0	7
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	1	1	0	1	0	1	1	0	1	0	9
전체	85	83	49	49	22	28	7	10	19	1	13	6	372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국비지원시설 전체를 포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와 주관으로 14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응답한 시설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383개소이다.

[표6-2] 재원구분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여가부시설 (국비)	복지부시설 (국비)	호남지역 시설(국비)	이양시설		전체
				도양시설	시군이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0	31	0	0	0	31
학대노안센터	0	4	0	0	0	4
노인여가복지시설	0	0	0	307	0	307
노인보호전문기관	0	18	0	0	0	18
아동양육시설	0	0	0	208	0	208
아동일시보호시설	0	0	1	0	0	1
아동보호치료시설	0	0	0	26	0	26
자립지원시설	0	0	0	3	0	3
공동생활가정	0	0	68	0	0	68
지역이동센터	0	0	227	0	0	227
장애인유형별가주시설	0	544	0	0	0	544
중증장애인가주시설	0	195	0	0	0	195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0	27	0	0	0	27
장애인단기가주시설	0	0	0	11	0	1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0	0	0	11	0	11
장애인복지관	0	0	0	144	0	144
장애인보호작업장	0	0	0	71	0	71
정신요양시설	0	41	0	0	0	41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0	18	0	0	0	18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0	0	0	19	0	19
노숙인재활시설	0	0	0	35	0	35
사회복지관	0	0	0	0	186	186
지역자활센터	0	105	0	0	0	105
모자가족복지시설	0	0	0	22	0	2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0	0	0	8	0	8
성매매피해상담소	7	0	0	0	0	7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0	0	0	0	5
성폭력피해상담소	20	0	0	0	0	20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26	0	0	0	0	26
가정폭력상담소	32	0	0	0	0	3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9	0	0	0	0	219
전체	309	983	296	865	186	2,639

[표6-3] 여성가족부 복지시설(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한장상담센터,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다담터, 성가정의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전주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익산여성의쉼터, 전북종은이웃그림움, 전주여성의쉼터
가정폭력상담소	(사)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군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 익산시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원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순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사아이주여성쉼터,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309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근로형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연봉액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분석대상에서 활용된 최종 응답자는 2,639명이다. 조사대상 종사자를 재원 형태별로 보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 309명, 국비지원 중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종사자가 983명,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국비지원시설이 296명, 그리고 이양시설 중에서 도비 이양시설 865명, 시군이양시설 종사자가 186명 등이다.

여성가족부 복지시설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다.

[표6-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성모양로원, 오순도순, 호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로템나무,
학대노인쉼터	전북학대피해노인전문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국제재활원, 김제지구촌마을, 나눔빌, 나포길벗공동체, 느티나무장애인거주시설, 대애공동체, 동암재활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근마을, 만복원, 맑은집, 무지개가족, 밀알그림움, 밝은집, 베데다스다의집, 사랑원,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예담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전북보성원덕암, 새싹원, 사문의집, 은혜의동산, 아름다운마을, 소화전달내집, 예수재활원, 작은자매의집, 정읍천사마을, 주향의집, 창혜원, 청록원, 평안의집, 하은의집, 함께사는마을, 함께사는집, 흥주원, 화평의집, 훈훈한집, 힘마실
정신요양시설	삼정원,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참사랑박원, 서로돕는마을,
지역재활센터	순창지역재활센터, 완주지역재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재활센터, 익산지역재활센터, 장수지역재활센터, 전주지역재활센터, 정읍지역재활센터, 진안지역재활
전체	983

[표6-5] 호봉미적용시설(국비)

아동일시보호시설	아호하차세븐플러스
공동생활가정	봉지공동생활가정, 꿈사랑그룹홈, 더불어숲, 아미고의집, 아버지아집, 우리집그룹홈, 전주, 우림그룹홈,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전북좋은이웃그룹홈, 참조은집, 평안한집, 평화의집, 포도원그룹홈, 플러스그룹홈, 하늘빛그룹홈, 해나래, 해뜨는우리집, 해피투게더, 행복의들, 해피하우스그룹홈, 감람나무 그룹홈, 꽃동산
지역아동센터	개성, 경암, 고부, 고산, 구림한사랑, 구암, 군산나눔, 그루터기, 그린 꿈의 꿈터, 나눔과 돌봄, 나눔, 난산, 늘빛, 다솜, 대성, 대야, 동네, 두드림, 명산, 레몬, 미소, 모악, 명산, 백두산, 보은, 비전스쿨 등
전체	296

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학대노인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이다.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로는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고 도이양 사회 복지시설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숙인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이다.

재원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여성가족부 소관 복지시설이 309명,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이 983명,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이 296명, 그리고 도 및 시군 이양 사회복지시설이 865명 등이다.

[표6-6] 도 및 시군 이양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금안노인복지관, 꽃밭정아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시운육아원, 안골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익산노인종합복지관, 장수군노인복지관,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기독삼애원,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선덕보육원, 신애원, 아동복지시설요양원, 이리보육원, 이리자선원, 일택원, 정읍애육원, 호성보육원
아동보호치료시설	희망생학교
자립지원시설	삼성자립생활관, 자애지원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새소망단기보호시설, 한마음단기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동그라미은혜의집, 동그라미희망의집, 라파엘터, 손수래공동생활가정, 하울,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해나무,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해오름1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해오름2호
장애인복지관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수군장애인복지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해1호, 희망해2호
장애인보호작업장	굿데이,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동양자활지원장, 민북보호작업장, 반디누리작업장, 동양자활지원장,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위드, 추진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보배정산간강상담센터
노숙인재활시설	신애원, 이리자선원
사회복지관	군산나눔, 군산종합, 길보른 김제제일, 동산, 부송, 신너머, 원광종합, 전북종합, 전주종합, 정읍, 평화, 학산
모자가족복지시설	신광모자원, 신광모자지원관, 원광모자원, 이랑성애모자원, 아산모자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쁨누리, 기쁨의하우스
전체	865

[표6-7]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규모 및 급여 현황

시설유형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인건비(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후원금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	7.8	3.3	231,991	25,604	102,418		19,800	180,000
학대노인쉼터	4.0	1.0	97,411	103,531		1512	500	
재가노인복지시설	12.5	4.0			123,299			
노인여가복지시설	12.2	9.9	93,444	67,572	628,506	20,591	1,000	0
노인보호전문기관	9.0	1.0	152,379	166,291		7,743	1,27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0	11.9	139,653	51,315	235,694	6,877	0	0
아동양육시설	21.9	0.8	9,440	287,014	638,802	14,402		
아동일시보호시설		2.0	22,476					
아동보호치료시설	13.5	2.0	0	202,898	1149,755			
자립지원시설	3.0	0.0		23,929	135,595	0	0	0
공동생활가정	2.8	1.2	32,061	24,865	26,416	27,271	750	0
아동전용시설	2.5	2.5	53,040	26,520	1,886	26,520		
지역아동센터	2.3	0.9	61,656	25,904	20,210	4,103	3,848	0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19.6	2.4	661,243	53,467	230,213	66,994	3,155	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5	2.0	871,332	72,633	307,287	509,516	28,330	
장애인영양가거주시설	26.0	1.0	895,945	76,795	307,18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6.0		0	54,283	217,132	0	0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	2.0	0	4,916	43,916	41,510	8,392	0
장애인복지관	19.9	2.3	0	229,728	637,100	18,468	22,469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1.2	42,018	34,201	122,022	7,498	4,415	2339
장애인체육시설	3.0				117,05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4.2	0.7	256,560	39,117	156,469			
수화통역센터	3.8	2.4	0	34,219	149,471	1,084	0	0
장애인보호작업장	5.5	0.1	0	61,428	260,747	22,122	450	1653
정신요양시설	34.5		1,444,019	627,011	38,060	10,050	0	0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9.5	0.0		163,106	380,413	3,070	4,747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3.7	4.0		187,616	164,277			
노숙인재활시설	16.5	8.0	567,311	251,516	20,066	20,910	21,903	
사회복지관	10.4	3.8	25,579	121,813	439,192	34,678	42,931	26,375
지역자활센터	6.4	3.4	286,383	45,904	114,301	0	1,494	45,556
모자기족복지시설	4.4	0.0	0	95,316	207,147	0	0	0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4.0	0.0		56,679	163,230			
일시지원복지시설	7.0			4,924	27,908			
일반지원시설	5.0	0.0	102,736	26,402	47,065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		19,967	5,196	9,343			
자활지원센터	6.7	2.5	258,646	18,507	54,252			
성매매피해상담소	7.0	0.0	113,542	62,183	94,51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0		104,415	27,611	45,715	1,100	0	0
성폭력피해상담소	4.2	0.7	64,890	37,531	51,819	6,500	5,949	7,33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8	0.0	90,457	24,655	77,492		960	
가정폭력상담소	4.9	1.7	62,912	35,091	41,145	10,105	0	0
간강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9	33.8	437,796	178,287	267,942	1,620	581	0
전체	7.6	3.7	182,064	64,478	175,850	37,136	7,325	10,114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정규직은 7.6명, 비정규직은 평균 3.7명이었고, 인건비의 구성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군비의 부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6-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수당지급 현황

구분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사비특별 수당	한시적 임금보전수당	연차수당	기타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22.2	5.6	22.2	5.6	0.0	16.7	27.8	18
학대노인쉼터	33.3	0.0	33.3	33.3	0.0	0.0	0.0	3
재가노인복지시설	40.0	0.0	20.0	0.0	0.0	20.0	20.0	5
노인여가복지시설	23.8	23.8	4.8	23.8	3.2	6.3	14.3	63
노인보호전문기관	16.7	16.7	16.7	16.7	0.0	0.0	33.3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8.6	21.4	10.7	21.4	3.6	3.6	10.7	28
아동양육시설	25.0	25.0	25.0	15.9	0.0	0.0	9.1	44
아동보호치료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4
자립지원시설	20.0	20.0	20.0	20.0	0.0	0.0	20.0	5
공동생활가정	32.1	5.1	9.0	28.2	2.6	2.6	20.5	78
지역아동센터	39.4	0.5	0.9	36.6	0.5	0.0	22.1	213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22.6	23.4	22.6	19.4	0.0	1.6	10.5	1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5	23.5	23.5	17.6	0.0	2.9	8.8	34
장애인영양개선거주시설	33.3	33.3	33.3	0.0	0.0	0.0	0.0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8.6	21.4	28.6	21.4	0.0	0.0	0.0	42
장애인복지관	23.3	23.3	13.3	16.7	0.0	13.3	10.0	30
장애인주거보호시설	30.0	27.5	7.5	23.8	0.0	5.0	6.3	80
장애인체육시설	33.3	33.3	0.0	33.3	0.0	0.0	0.0	3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7.5	31.3	6.3	25.0	0.0	0.0	0.0	16
수화통역센터	24.1	24.1	10.3	13.8	0.0	0.0	27.6	29
장애인보호작업장	22.6	22.6	22.6	21.0	1.6	6.5	3.2	62
정신요양시설	12.5	25.0	25.0	12.5	0.0	0.0	25.0	8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28.6	28.6	28.6	14.3	0.0	0.0	0.0	7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27.3	27.3	27.3	18.2	0.0	0.0	0.0	11
노숙인재활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사회복지관	26.5	28.6	4.1	24.5	4.1	2.0	10.2	49
지역자활센터	28.1	25.0	9.4	21.9	0.0	15.6	0.0	32
모자가족복지시설	23.8	23.8	23.8	23.8	0.0	0.0	4.8	21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일시지원복지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4
일반지원시설	0.0	0.0	0.0	50.0	0.0	0.0	50.0	2
자활지원센터	22.2	22.2	11.1	22.2	0.0	11.1	11.1	9
성매매피해상담소	0.0	0.0	0.0	0.0	0.0	0.0	100.0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5.0	0.0	0.0	25.0	0.0	0.0	50.0	4
성폭력피해상담소	27.3	9.1	0.0	18.2	9.1	0.0	36.4	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6.7	0.0	13.3	20.0	6.7	0.0	33.3	15
가정폭력상담소	0.0	0.0	9.1	27.3	27.3	0.0	36.4	11
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	13.3	16.7	10.0	0.0	3.3	26.7	30
전체	320	192	145	268	14	34	156	112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사비 특별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명절수당은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복지시설 중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간의 근무수당도 대부분 시설이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체육시설,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수당도 학대노인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6-9] 사회복지종사자 구성 현황

시설유형	규정상 종사자 수	지자체 지원상 종사자수	정규직 수	계약직 수	현원비율	필요종사자수
노인주거복지시설	7.25	7.25	7.75	3.33	127.50	.67
학대노인쉼터	4.00	4.00	4.00	1.00	100.00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16.50	16.50	12.50	4.00	100.00	.00
노인여가복지시설	17.36	15.64	12.20	9.92	90.82	2.60
노인보호전문기관	9.00	9.00	9.00	1.00	111.00	.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0.44	10.44	5.00	11.89	100.00	.75
아동양육시설	29.45	26.91	21.92	.80	72.13	9.46
아동일시보호시설	2.00	2.00		2.00		
아동보호치료시설	21.00	3.00	13.50	2.00	83.50	7.50
자립지원시설	4.00	4.00	3.00	.00	75.00	1.00
공동생활가정	3.04	3.04	2.82	1.20	92.31	.85
아동전용시설	2.50	2.67	2.50	2.50	83.33	51.00
지역아동센터	2.29	2.29	2.29	.92	98.13	.97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21.61	21.42	19.55	2.44	91.07	4.1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5.63	25.38	23.50	2.00	93.94	2.14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29.00	29.00	26.00	1.00	90.00	2.00
장애인단거주시설	6.50	6.00	6.00		92.50	1.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8	1.09	1.00	2.00	103.85	.67
장애인복지관	21.67	21.00	19.86	2.33	93.83	1.8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77	4.00	3.38	1.22	78.35	1.28
장애인체육시설	3.00		3.00		100.00	.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4.50	4.50	4.17	.67	100.00	.00
수화통역센터	4.33	4.67	3.80	2.40	101.32	.33
장애인보호작업장	6.86	6.54	5.50	.14	83.66	1.46
정신요양시설	34.50	34.50	34.50		100.00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9.50	9.50	9.50	.00	100.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6.33	8.00	3.67	4.00	100.00	.00
노숙인재활시설	16.50	16.50	16.50	8.00	100.00	.00
사회복지관	11.46	10.31	10.43	3.83	99.39	2.20
지역자활센터	9.11	8.22	6.44	3.44	91.40	.86
모자가족복지시설	4.40	4.40	4.40	.00	100.00	.2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4.00	4.00	4.00	.00	100.00	2.00
일시지원복지시설	7.00	7.00	7.00		100.00	1.00
일반지원시설	5.00	5.00	5.00	.00	100.00	.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	1.00	1.00		100.00	
자활지원센터	6.67	6.50	6.67	2.50	91.23	.50
성매매피해상담소	7.00	7.00	7.00	.00	10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00	5.00	5.00		100.00	1.00
성폭력피해상담소	4.33	4.00	4.20	.67	100.00	2.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80	5.67	5.80	.00	100.00	.33
가정폭력상담소	4.71	4.83	4.86	1.67	103.57	.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00	10.50	18.89	33.75	85.61	1.20
전체	8.46	8.10	7.58	3.71	94.32	2.26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시설별 평균 정규직원은 7.56명이고 계약직은 3.71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은 94.23%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3.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1.89명, 노인여가복지시설 9.92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대비 현원충족율이 낮은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90%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2.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현황에 대한 조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운영주체, 운영형태, 이용자 정원과 현원의 규모 그리고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6-10] 운영주체별 종사자 급여현황

	운영주체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소계	호봉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40,445.62	31,279.88	8,820.00	10.76
	재단법인	33,719.49	28,607.51	4,745.00	7.50
	학교법인	34,766.42	30,516.78	4,249.64	8.40
	사단법인	36,282.07	30,941.81	4,330.98	9.01
	국립/자치체	42,095.27	33,592.64	6,209.82	13.55
	개인운영	29,684.27	25,857.94	2,991.16	6.57
	기타	30,991.52	26,684.76	3,371.70	6.90
	전체	38,036.10	30,419.40	7,083.13	9.83
시설형태	생활시설	42,354.95	31,195.25	10,828.95	10.92
	이용시설	34,605.30	29,861.96	4,073.90	9.00
	전체	38,134.18	30,469.09	7,149.88	9.93
성별	남성	41,686.75	32,831.98	8,405.87	11.35
	여성	36,269.64	29,257.48	6,446.05	9.12
	전체	38,020.78	30,412.97	7,079.58	9.86
재원 구성별 형태	여가부시설 국비	30,477.02	26,335.84	2,675.77	6.12
	복지부시설 국비	41,403.55	30,678.49	10,512.25	10.81
	호봉미적용시설 국비	28,334.51	25,588.97	1,937.65	6.22
	도양시설 가이드	40,592.46	32,177.23	7,952.28	10.56
	사니어양시설 가이드	38,990.67	33,858.00	4,842.49	12.04
	전체	38,274.26	30,314.05	7,450.06	9.85
소재지역	전주	37,274.64	31,287.94	5,347.94	10.02
	군산	36,717.00	29,842.90	6,369.06	9.21
	익산	40,281.24	30,662.01	9,190.23	10.58
	정읍	36,652.91	29,448.07	6,523.60	9.00
	김제	36,712.77	30,771.01	5,332.87	9.48
	완주	40,567.27	30,438.59	9,681.58	11.06
	진안	39,353.53	30,289.41	8,511.95	8.91
	무주	37,294.55	31,125.41	5,965.23	9.18
	장수	31,980.61	27,585.88	3,584.92	6.86
	임실	30,341.26	27,089.26	2,999.37	9.05
	순창	36,626.29	28,975.27	6,804.44	9.10
	고창	42,207.85	32,348.91	9,858.94	10.71
	전체	38,042.11	30,422.57	7,090.39	9.86

조사결과 노인양로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은 4개소, 학대노인쉼터 1개소 등이고 지역별로는 전주 85개소, 군산 83개소, 익산과 정읍이 각각 49개소 등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현황을 보면, 시설 유형별로는 생활시설이 기본급 3,119만원으로 이용시설 2,986만원보다는 많았다. 그리고 수당의 경우도 생활시설이 연 1,093만원으로 이용시설 407만원보다도 약 두배 이상은 높았다. 전체 보수총액은 기본급과 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시설이 4,235만원, 이용시설이 3,460만원으로 이용시설보다도 생활시설이 평균 6백만원정도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국립 및 지자체 직영이 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인 3,128만원, 사단법인 3,094만원, 학교법인 3,051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원형태별로 보면, 호봉미적용 시설이 2,559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여가부 시설이 2,633만원 등의 순으로 낮았다. 재원형태에서는 시군이양시설이 3,3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이양시설 3,217만원, 복지부 시설 중 국비지원시설 3,067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고창군이 3,2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주시 31,288만원, 무주군 31,125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기본급의 연봉액이 3천만을 상회하는 지역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등의 지역이고 3천만원 이하인 지역은 군산, 정읍, 장수 등의 지역이다. 지역별로 연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사자의 호봉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평균 호봉을 보면, 고창군은 10.2호봉인 반면, 기본급이 낮은 장수군의 경우 평균호봉은 6.8호봉으로 평균호봉인 9.8호봉보다도 2호봉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본급을 보면,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평균 기본급은 3,813만원이고 이 중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본급이 연 43,7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이 20,390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기준으로는 평균 3,813만원이고 정신요양시설이 5,366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립지원시설 5,284만원,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5,208만원 등의 순이었다. 호봉을 보면,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정신요양시설이 평균 15.5호봉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46호봉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과 호봉이 높은 시설은 주로 종사자의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들이었고, 재원형태에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시설에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경우는 대체로 호봉이 10호봉 이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급은 복지부수 소관시설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표6-11]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호봉	복지경력(년)	재직기간(년)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상계	연차사용일수
노인 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5.45	8.58	5.30	28,972.48	24,461.14	4,216.10	11.76
	학대노인쉼터	5.50	6.00	4.00	28,404.00	23,719.00	4,685.00	
	재가노인복지시설	2.25	5.75	3.86	24,607.20	22,895.20	320.00	12.67
	노인여가복지시설	8.53	7.15	5.49	33,007.04	28,978.33	3,632.81	14.69
	노인보호전문기관	7.71	9.13	4.67	37,642.47	32,003.35	5,274.41	13.2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0.02	7.95	5.98	32,162.19	28,819.07	2,880.06	6.94
아동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11.46	9.46	7.86	45,188.29	32,498.77	12,081.99	15.13
	아동일시보호시설	9.00	15.00	1.00	20,390.00	20,390.00	.00	
	아동보호차료시설	12.54	11.48	10.25	45,992.58	34,003.62	11,988.96	6.58
	자립지원시설	12.33	10.33	5.67	52,874.67	39,964.00	12,910.67	5.33
	공동생활가정	8.22	9.20	6.80	31,191.03	27,746.02	2,739.08	9.98
	아동전용시설	5.00	9.50	1.00	33,816.00	33,816.00	.00	5.00
장애인 복지 시설	지역아동센터	5.32	9.12	7.70	27,524.91	24,973.92	1,709.17	8.06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10.59	9.13	6.04	41,734.83	30,201.15	11,468.27	14.8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21	7.43	6.19	43,210.55	31,000.45	11,974.68	14.74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10.19	9.00	6.35	40,777.46	29,890.96	10,886.50	13.4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0.27	8.36	5.36	42,625.64	30,781.09	11,844.55	15.0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64	10.91	5.55	48,991.82	35,280.00	13,580.91	12.00
	장애인복지관	10.81	9.35	6.13	39,199.10	32,831.75	5,578.52	11.06
	장애인주거보호시설	10.22	8.71	5.73	40,589.39	34,704.12	5,586.97	12.70
	장애인체육시설	13.00	9.00	9.00	42,788.67	35,661.00	7,127.67	13.33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46	10.31	9.58	39,777.69	34,272.73	5,158.81	10.33
	수화통역센터	10.88	10.35	6.40	39,330.65	32,844.38	5,363.19	16.95
	장애인보호작업장	10.77	8.30	5.37	48,228.60	36,823.13	11,193.96	12.77
정신 보건 시설	정신요양시설	15.59	13.44	10.54	53,662.00	36,735.95	15,003.12	17.87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14.33	12.65	8.69	52,067.67	43,734.78	8,332.89	10.18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1.00	10.21	4.00	49,793.14	39,050.43	10,238.71	13.93
기타	노숙인재활시설	15.24	13.70	9.81	45,915.79	33,700.52	12,215.27	
	사회복지관	12.04	9.97	6.61	38,990.67	33,858.00	4,842.49	13.23
	지역자활센터	10.61	8.41	5.47	34,370.97	29,842.58	4,229.11	11.23
한부모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2.64	11.59	7.91	50,257.45	38,487.91	11,278.64	16.4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2.38	11.50	2.75	48,282.13	38,558.38	9,723.75	7.17
여성 복지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9.71	11.80	11.60	43,913.86	34,434.86	9,479.00	
	일반지원시설	8.00	7.60	5.40	31,550.40	28,766.40	1,584.00	18.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0	10.00	2.00	30,600.00	29,160.00	.00	10.00
	자활지원센터	12.30	12.39	8.45	39,283.85	34,729.60	3,271.75	13.60
	성매매피해상담소	11.57	10.86	10.86	34,347.71	32,650.57	.00	9.2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40	12.00	4.00	30,094.00	25,086.00	1,000.00	9.40
	성폭력피해상담소	6.32	6.44	5.87	28,910.11	26,220.11	170.00	10.5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6	6.00	3.95	31,685.57	27,645.40	2,379.69	14.11
	가정폭력상담소	7.03	9.18	5.79	27,438.19	25,349.19	1,145.31	14.5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0	4.48	3.91	30,831.57	26,153.06	3,324.76	11.33
	전체	9.93	8.74	6.33	38,134.18	30,469.09	7,149.88	13.01

[표6-1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구분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소계	호봉	재직기간년	연차일수
노인복지시설	32,513.03	28,571.40	3,521.00	8.41	5.48	14.88
아동복지시설	36,121.59	28,888.20	6,553.81	9.06	7.73	15.54
장애인복지시설	41,952.73	31,619.96	10,090.59	10.84	6.11	16.17
정신보건시설	52,526.90	38,905.56	12,444.68	14.40	8.97	17.64
노숙인시설	45,915.79	33,700.52	12,215.27	15.24	9.81	
사회복지관	38,990.67	33,858.00	4,842.49	12.04	6.61	16.90
지역자활센터	34,370.97	29,842.58	4,229.11	10.61	5.47	15.63
한부모복지시설	49,730.70	38,506.70	10,864.00	12.57	6.53	15.14
여성복지시설	31,330.53	27,077.46	2,834.93	6.63	4.85	15.30
전체	38,134.18	30,469.09	7,149.88	9.93	6.33	15.83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역별, 운영주체별, 시설형태별 기본급이나 수당 현황을 일관적 기준으로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차이는 호봉 등의 근무연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유사 직급의 호봉수와 비교하는 것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급여현황을 보면, 기본급 기준으로 정신보건시설이 38,90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부모복지시설 38,506만원, 사회복지관 33,858만원, 노숙인 시설 33,700만원 등의 순이다. 다만,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와 여성복지시설 등은 기본급이 3천만원 미만이다. 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복지시설의 평균 수당은 714.9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신보건시설이 1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숙인시설 1221만원, 한부모복지시설 1086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655만원 등의 순이었다. 평균호봉은 노숙인시설이 15.24호봉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보건시설 14.44호봉, 한부모복지시설 12.57호봉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10.61호봉 등의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세부시설의 급여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2,897만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882만원 등의 순이었고, 평균호봉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10.02호봉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8.53호봉, 노인보호전문기관 7.71호봉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의 호봉별 급여현황을 보면, 여성가족부 시설은 10호봉 기준 기본급이 29,104만원,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30,068만원 등이고, 도이양시설은 32,025만원이다.

[표6-13] 사회복지시설 호봉별 급여현황

호봉	기본급				기본급+처우수당			
	여가부	복지부	도이양	시군이양	여가부	복지부	도이양	시군이양
1호봉	20,822.57	21,949.91	22,588.27	21,113.40	23,707.48	28,754.71	26,293.75	22,366.45
5호봉	25,862.31	24,520.61	25,512.36	22,769.25	30,464.46	34,106.55	33,850.89	26,371.25
10호봉	29,104.73	30,068.14	32,025.46	31,075.88	33,147.60	41,297.21	41,541.08	36,220.13
15호봉	35,797.00	36,085.09	37,257.93	38,103.67	41,015.67	48,023.71	48,821.82	44,724.33
20호봉	32,820.00	38,260.60	45,521.88	48,015.00	37,198.67	52,906.13	58,253.94	56,144.25
25호봉		53,153.17	52,210.71	54,757.33		64,234.33	62,672.00	66,782.00
전체	26,400.34	30,695.79	32,220.02	32,924.96	26,878.75	32,272.88	74,889.75	37,753.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비교시 이양시설 중에서 도이양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군이양시설 그리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기본급에 더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보면, 10호봉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은 33,147만원,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41,297만원, 지방이양시설 중에서 도 이양시설 종사자는 평균 41,541만원 그리고 시군 이양시설은 36,220만원 등이었다. 처우수당까지를 포함한 급여총액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급여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전히 도이양시설이 가장 높은 연봉액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이양시설 중 시군 이양시설, 그리고 여성가족부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다만, 기본급에서는 이양시설이 국비지원시설보다도 평균 연봉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본급과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액에서는 도이양시설 종사자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6-1] 사회복지시설 자원형태별 평균급여



최우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연평균 77.6만원, 아동복지시설이 11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130.7만원, 정신보건시설 117.4만원, 노숙인시설 167.6만원, 사회복지관 103.2만원, 지역자활센터 121.1만원, 그리고 한부모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이 각각 123.7만원과 415만원이었다. 재원형태별로 보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의 평균 특별수당은 평균 38.9천원으로 가장 적었고,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 134.2만원,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 134.9만원, 도이양시설 99.8만원, 그리고 시군 이양시설이 103.2만원 등이었다.

[표6-14] 재원형태별 호봉별 보수

호봉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					
				수당총계	명절수당 지급액	특별수당 지급액	연장근로 수당 지급액	가족수당 지급액	기타 수당(계)
여가부 국비	1호봉	23,707.48	20,822.57	1,664.11	1,371.94	298.26	291.54	30.43	1,220.80
	5호봉	30,464.46	25,862.31	3,669.85	2,035.36	738.46	692.23	516.92	932.31
	10호봉	33,147.60	29,104.73	1,777.06	1,698.00	164.15	246.00	.00	2,265.82
	15호봉	41,015.67	35,797.00	4,642.00	2,895.00	400.00	1,876.33	435.67	576.67
	20호봉	37,198.67	32,820.00	333.33	1,000.00	.00	.00	.00	4,045.33
	전체	30,518.28	26,400.34	2,728.32	2,060.03	394.26	494.86	133.00	1,389.62
	1호봉	28,754.71	21,949.91	6,628.32	1,918.37	995.97	3,614.82	431.18	176.47
복지부 국비	5호봉	34,106.55	24,520.61	9,419.16	2,431.62	1376.77	5,256.05	398.14	166.79
	10호봉	41,297.21	30,068.14	11,003.26	2,984.21	1438.35	6,160.79	451.40	225.81
	15호봉	48,023.71	36,085.09	11,582.63	3,570.23	1577.37	5,599.03	836.00	356.00
	20호봉	52,906.13	38,260.60	14,499.53	3,821.20	1440.00	8,249.53	988.80	146.00
	25호봉	64,234.33	53,153.17	11,051.17	5,211.17	1500.00	3,620.00	720.00	30.00
	30호봉	62,434.80	48,762.60	13,672.20	4,873.00	1368.00	6,999.20	432.00	.00
	전체	41,601.24	30,695.79	10,689.46	3,053.03	1365.04	5,789.15	573.27	215.99
호봉 미적용 시설	4호봉	28,473.33	23,521.67	4,551.67	2,088.33	.00	2,463.33	.00	400.00
	6호봉	28,727.00	26,116.00	2,611.00	2,611.00	.00	.00	.00	.00
	9호봉	19,386.58	17,257.08	1,808.08	1,176.38	4.17	991.67	28.00	321.42
	10호봉	38,036.00	32,084.50	5,951.50	2,761.00	720.00	2,470.50	.00	.00
	12호봉	36,568.50	32,485.50	4,083.00	3,383.50	660.00	39.50	.00	.00
	13호봉	45,481.67	32,425.33	12,656.33	3,242.67	1200.00	7,877.67	1,008.00	400.00
	21호봉	36,361.00	25,452.00	10,189.00	2,546.00	.00	7,307.00	336.00	720.00
도 이양 시설	1호봉	26,293.75	22,588.27	3,429.44	2,073.82	461.67	1,622.40	146.81	276.04
	5호봉	33,850.89	25,512.36	8,133.17	2,537.23	1014.64	4,135.67	533.62	205.36
	10호봉	41,541.08	32,025.46	9,190.22	3,172.54	1280.27	4,088.64	780.36	325.41
	15호봉	48,821.82	37,257.93	10,824.93	3,727.00	1018.93	4,796.86	1,282.14	738.96
	20호봉	58,253.94	45,521.88	11,485.75	4,541.56	1057.50	5,305.44	581.25	1,246.31
	25호봉	62,672.00	52,210.71	9,381.00	5,215.86	977.14	3,119.33	514.29	1,080.29
	30호봉	74,889.75	58,408.75	16,031.00	5,840.63	1125.00	8,615.38	450.00	450.00
시군 이양 시설	전체	41,156.03	32,482.95	8,195.23	3,203.53	1035.53	3,601.85	498.43	468.60
	1호봉	22,366.45	21,113.40	1,233.05	1,445.69	293.35	.00	.00	20.00
	5호봉	26,371.25	22,769.25	3,577.00	2,219.50	1290.00	7.50	60.00	25.00
	10호봉	36,220.13	31,075.88	5,044.25	3,035.50	1286.25	.00	722.50	100.00
	15호봉	44,724.33	38,103.67	6,420.67	3,807.33	1680.00	.00	933.33	200.00
	20호봉	56,144.25	48,015.00	7,804.25	4,792.25	1800.00	127.00	1,085.00	325.00
	25호봉	66,782.00	54,757.33	8,624.67	5,464.67	1800.00	.00	1,360.00	3,400.00
	전체	39,835.17	34,504.64	5,022.66	3,208.87	1071.99	4.49	530.84	266.10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대부분 명절수당과 특별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이외 기타수당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시군이양시설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다수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표6-1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유형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소계	기본급수당	호봉	단일직급
노인 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8,972.48	24,461.14	4,216.10	25,032.17	5.45	4.34
	학대노인쉼터	28,404.00	23,719.00	4,685.00	25,069.00	5.50	4.75
	재가노인복지시설	24,607.20	22,895.20	320.00	22,975.20	2.25	3.70
	노인여가복지시설	33,007.04	28,978.33	3,632.81	29,985.86	8.53	4.52
	노인보호전문기관	37,642.47	32,003.35	5,274.41	33,598.65	7.71	3.8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2,162.19	28,819.07	2,880.06	29,377.19	10.02	4.61
아동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45,188.29	32,498.77	12,081.99	33,185.12	11.46	3.97
	아동일시보호시설	20,390.00	20,390.00	0.00	20,390.00	9.00	4.00
	아동보호치료시설	45,992.58	34,003.62	11,988.96	35,679.00	12.54	4.88
	자립지원시설	52,874.67	39,964.00	12,910.67	41,644.00	12.33	2.33
	공동생활가정	31,191.03	27,746.02	2,739.08	29,362.97	8.22	3.97
	아동전문시설	33,816.00	33,816.00	0.00	33,816.00	5.00	1.00
장애인 복지 시설	지역아동센터	27,524.91	24,973.92	1,709.17	26,316.33	5.32	4.55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41,734.83	30,201.15	11,468.27	31,630.37	10.59	4.0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3,210.55	31,000.45	11,974.68	32,391.15	11.21	4.13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40,777.46	29,890.96	10,886.50	31,528.69	10.19	4.0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625.64	30,781.09	11,844.55	32,286.55	10.27	4.8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8,991.82	35,280.00	13,580.91	36,163.64	11.64	3.64
	장애인복지관	39,199.10	32,831.75	5,578.52	33,871.05	10.81	4.2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0,589.39	34,704.12	5,586.97	35,992.96	10.22	3.64
	장애인체육시설	42,788.67	35,661.00	7,127.67	37,461.00	13.00	4.33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9,777.69	34,272.73	5,158.81	35,435.81	15.46	4.69
	수화통역센터	39,330.65	32,844.38	5,363.19	33,550.54	10.88	3.04
	장애인보호작업장	48,228.60	36,823.13	11,193.96	38,106.07	10.77	3.54
정신 보건 시설	정신요양시설	53,662.00	36,735.95	15,003.12	37,760.73	15.59	4.61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2,067.67	43,734.78	8,332.89	45,454.78	14.33	3.33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49,793.14	39,050.43	10,238.71	40,115.00	11.00	2.71
기타	노숙인재활시설	45,915.79	33,700.52	12,215.27	35,478.70	15.24	4.06
	사회복지관	38,990.67	33,858.00	4,842.49	35,024.89	12.04	3.71
	지역자활센터	34,370.97	29,842.58	4,229.11	31,219.75	10.61	3.01
한부모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50,257.45	38,487.91	11,278.64	39,765.86	12.64	3.36
	미혼모가족복지시설	48,282.13	38,558.38	9,723.75	39,683.38	12.38	3.38
여성 복지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43,913.86	34,434.86	9,479.00	34,434.86	9.71	3.86
	일시지원시설	31,550.40	28,766.40	1,584.00	30,350.40	8.00	4.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30,600.00	29,160.00	0.00	29,160.00	10.00	3.00
	자활지원센터	39,283.85	34,729.60	3,271.75	35,449.60	12.30	2.90
	성매매피해상담소	34,347.71	32,650.57	0.00	32,650.57	11.57	5.57
	성폭력피해피보호시설	30,094.00	25,086.00	1,000.00	25,086.00	9.40	4.60
	성폭력피해상담소	28,910.11	26,220.11	170.00	26,220.11	6.32	2.95
	가정폭력피해피보호시설	31,685.57	27,645.40	2,379.69	28,699.05	5.96	3.48
	가정폭력상담소	27,438.19	25,349.19	1,145.31	26,228.56	7.03	2.78
	간접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831.57	26,153.06	3,324.76	26,370.83	5.70	4.06
전체		38,134.18	30,469.09	7,149.88	31,581.05	9.93	4.0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급여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기본급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2.9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기본급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높고 수당을 포함하면 3.3천만원으로 수당을 포함한 경우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도 기본급은 2.9천만원이고 수당은 288만원으로 보수총액은 3.2천만이다.

아동복지시설은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자립지원시설이 4.0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이 연봉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고,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종사자의 규모가 적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은 3천만원 이하로 다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수총액기준으로는 자립지원시설이 5.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 4.6천만원, 아동양육시설 4.5천만원, 아동전용시설 3.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수총액기준으로 급여편차를 보면, 가장 많은 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가장 적은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두배 이상의 급여 편차를 보였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기본급 이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기본급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시설 3.6천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천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는 장애인 영유아거주시설이 연봉액이 3천만원 이하로 다른 장애인시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이 기본급 기준 4.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3.9천만원, 정신요양시설 3.7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이 5.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2천만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4.9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기본급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이 가장 적었지만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시설에서는 모자가족복지시설의 평균 기본급이 3.8천만원이었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도 역시 3.8천만원 수준으로 두 시설이 모두 기본급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는 모자가족복지시설이 5.0천만원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4.8천만원보다도 약 2백만원정도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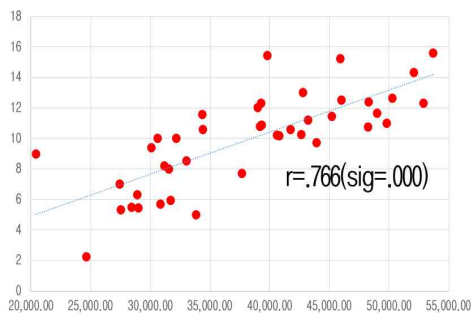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수당액은 약 1.1천만원정도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수당액인 9.7백만원보다도 약 1.5백만원정도 많은 수준이었고, 이 같은 수당의 차이가 보수총액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복지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기본급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지원복지시설은 평균 기본급이 3.4천만원이었고, 자활지원센터는 3.5천만원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보호시설은 3.3천만원이었다. 이와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5천만원으로 다른 여성복지시설에 비해서 기본급 수준이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상담소 2.6천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천만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2.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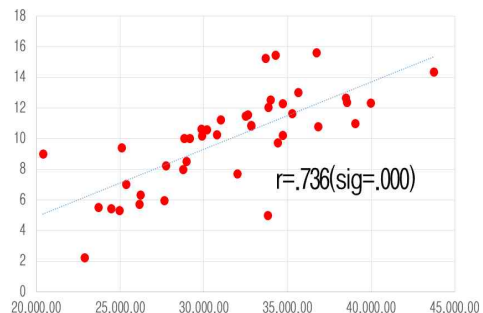
대체로 기본급 기준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등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보다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기본급이 3천만원 전후였지만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4.4천만원, 자활지원센터가 3.9천만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3.2천만원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3.0천만원 등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총액이 3천만원을 상회한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도 평균호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종사자 급여에서 호봉수는 급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급여는 다른 시설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호봉과 보수총액 그리고 기본급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보수총액과 호봉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r=.766$, $\text{sig}=.000$)가 있었고, 기본급과도 높은 상관관계($r=.736$, $\text{sig}=.000$)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2] 보수총액과 호봉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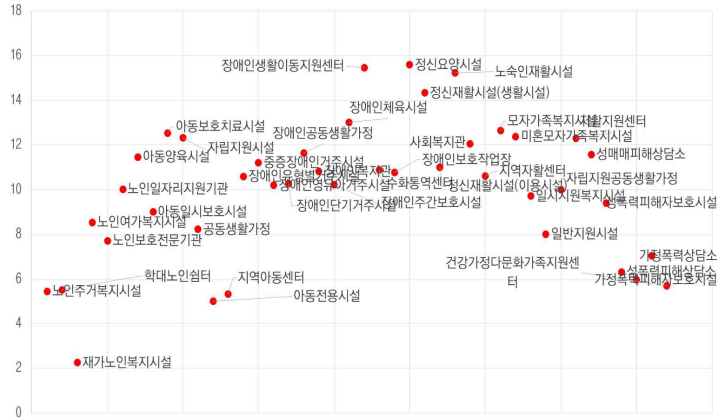
[그림6-3] 기본급과 호봉간 관계



[표6-16]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급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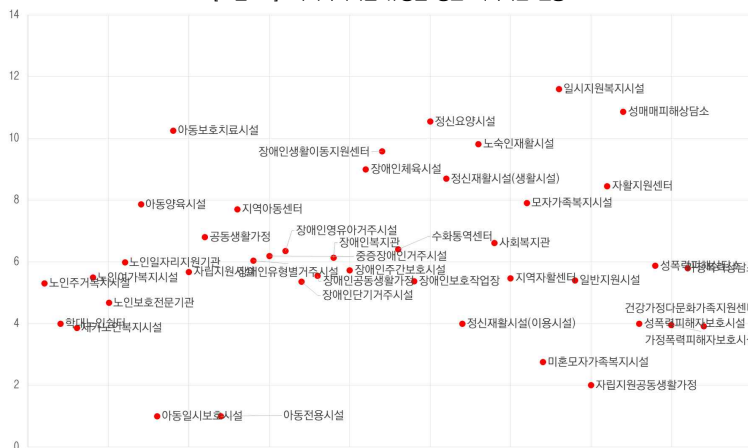
시설유형	호봉	사회복지경 력 (연)	재직기간 (연)	주 근로시간	명절수당 지급액	특별수당 지급액	연장근로수 당 지급액	가족수당 지급액	기타수당계
노인주거복지시설	5.45	8.58	5.30	40.79	1478.45	571.03	2025.93	140.69	295.24
학대노인쉼터	5.50	6.00	4.00	40.00	1297.00	1350.00	2038.00	.00	.00
재가노인복지시설	2.25	5.75	3.86	35.80	600.00	80.00	.00	.00	1392.00
노인여가복지시설	8.53	7.15	5.49	39.72	2729.31	1007.53	1.74	316.09	395.89
노인보호전문기관	7.71	9.13	4.67	40.00	3146.06	1595.29	236.38	310.59	364.7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0.02	7.95	5.98	40.00	2741.07	558.12	70.59	284.24	463.06
아동양육시설	11.46	9.46	7.86	40.00	3211.00	686.35	7764.78	472.62	607.53
아동일시보호시설	9.00	15.00	1.00	40.00		.00	.00	.00	.00
아동보호치료시설	12.54	11.48	10.25	40.00	3396.81	1675.38	6538.31	378.46	.00
자립지원시설	12.33	10.33	5.67	40.00	3993.33	1680.00	6757.33	480.00	.00
공동생활가정	8.22	9.20	6.80	51.17	498.75	1616.95	467.75	166.00	705.94
아동전용시설	5.00	9.50	1.00	40.00		.00	.00	.00	.00
지역아동센터	5.32	9.12	7.70	39.91	410.86	1336.12	22.74	8.89	825.16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10.59	9.13	6.04	39.86	3048.53	1429.21	6492.11	587.23	65.41
중증장애인가주시설	11.21	7.43	6.19	40.68	3102.69	1390.70	6884.88	612.57	235.42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10.19	9.00	6.35	40.00	3008.20	1637.73	6093.08	497.54	.00
장애인단인가주시설	10.27	8.36	5.36	40.00	3024.00	1505.45	6831.45	483.64	.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64	10.91	5.55	50.18	3394.91	883.64	8713.27	589.09	130.91
장애인복지관	10.81	9.35	6.13	40.00	3311.26	1039.30	817.10	549.79	788.8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22	8.71	5.73	39.31	3404.57	1288.84	276.80	616.76	298.30
장애인체육시설	13.00	9.00	9.00	40.00	3487.67	1800.00	.00	1840.00	.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46	10.31	9.58	40.00	3441.69	1163.08	.00	554.04	346.15
수화통역센터	10.88	10.35	6.40	40.00	3219.85	706.15	784.12	653.08	1192.31
장애인보호작업장	10.77	8.30	5.37	40.00	3662.67	1282.94	5419.89	865.55	211.51
정신요양시설	15.59	13.44	10.54	40.00	3643.41	906.43	9835.39	640.00	1922.93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14.33	12.65	8.69	40.00	3896.56	1720.00	1973.00	743.33	.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1.00	10.21	4.00	40.00	3901.93	1064.57	5190.92	1047.27	504.00
노숙인재활시설	15.24	13.70	9.81	40.00	3365.76	1778.18	6347.09	724.24	.00
사회복지관	12.04	9.97	6.61	39.75	3381.81	1166.89	4.87	579.38	290.18
지역자활센터	10.61	8.41	5.47	40.00	2973.33	1235.88	40.89	541.75	299.28
모자가족복지시설	12.64	11.59	7.91	40.00	4039.14	1277.95	5137.91	823.64	490.9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2.38	11.50	2.75	40.00	3971.63	1125.00	4293.86	870.00	.00
일시지원복지시설	9.71	11.80	11.60	40.00	3433.57	.00	5394.00	651.43	.00
일반지원시설	8.00	7.60	5.40	52.00		1584.00	.00	.00	1200.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0	10.00	2.00	40.00		.00	.00	.00	1440.00
자활지원센터	12.30	12.39	8.45	40.00	3092.50	720.00	.00	387.00	1282.50
성매매피해상담소	11.57	10.86	10.86	40.00		.00	.00	.00	1697.1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40	12.00	4.00	49.60	1000.00	.00	.00	.00	4008.00
성폭력피해상담소	6.32	6.44	5.87	40.00	323.00	.00	.00	.00	2520.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6	6.00	3.95	40.48	1232.92	1053.65	64.32	28.80	1660.48
가정폭력상담소	7.03	9.18	5.79	40.00		879.38	265.94	.00	943.6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0	4.48	3.91	40.25	2246.39	272.84	656.59	195.28	1353.76
전체	9.93	8.74	6.33	40.30	2762.30	1104.22	3108.68	439.44	514.57

[그림6-4]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균 호봉 현황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호봉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15.46호봉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숙인재활시설 15.24호봉,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14.33호봉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의 평균호봉이 가장 낮은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5.0호봉, 지역아동센터 5.32호봉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일시지원복지시설로 약 11.6년이었고, 성매매피해상담소 10.86년, 아동보호치료시설 10.25년 등의 순이었고, 재직기간이 가장 낮은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들 시설의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은 3년 미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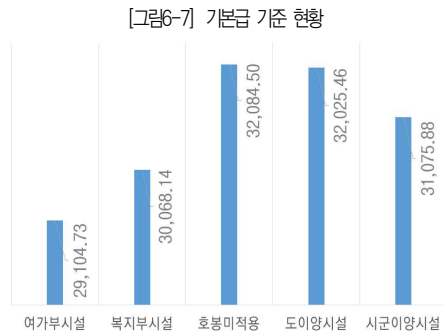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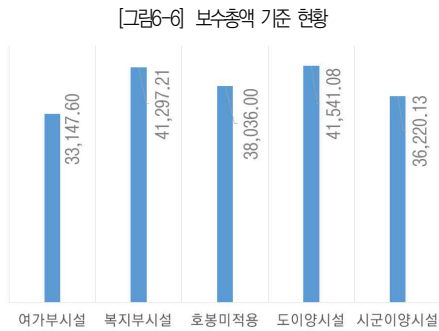
[그림6-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균 재직기간 현황



[표6-17] 사회복지시설 호봉별 보수현황

호봉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						
				수당소계	명절수당 지급액	특별수당 지급액	연장근로 수당 지급액	가족수당 지급액	기타 수당(계)	
여가부 국비	1호봉	23,707.48	20,822.57	1,664.11	1,371.94	298.26	291.54	30.43	1,220.80	
	5호봉	30,464.46	25,862.31	3,669.85	2,035.36	738.46	692.23	516.92	932.31	
	10호봉	33,147.60	29,104.73	1,777.06	1,698.00	164.15	246.00	.00	2,265.82	
	15호봉	41,015.67	35,797.00	4,642.00	2,895.00	400.00	1,876.33	435.67	576.67	
	20호봉	37,198.67	32,820.00	333.33	1,000.00	.00	.00	.00	4,045.33	
	전체	30,518.28	26,400.34	2,728.32	2,060.03	394.26	494.86	133.00	1,389.62	
복지부 국비	1호봉	28,754.71	21,949.91	6,628.32	1,918.37	995.97	3,614.82	431.18	176.47	
	5호봉	34,106.55	24,520.61	9,419.16	2,431.62	1376.77	5,256.05	398.14	166.79	
	10호봉	41,297.21	30,068.14	11,003.26	2,984.21	1438.35	6,160.79	451.40	225.81	
	15호봉	48,023.71	36,085.09	11,582.63	3,570.23	1577.37	5,599.03	836.00	356.00	
	20호봉	52,906.13	38,260.60	14,499.53	3,821.20	1440.00	8,249.53	988.80	146.00	
	25호봉	64,234.33	53,153.17	11,051.17	5,211.17	1500.00	3,620.00	720.00	30.00	
	30호봉	62,434.80	48,762.60	13,672.20	4,873.00	1368.00	6,999.20	432.00	.00	
	전체	41,601.24	30,695.79	10,689.46	3,053.03	1365.04	5,789.15	573.27	215.99	
	호봉 미적용 시설	4호봉	28,473.33	23,521.67	4,551.67	2,088.33	.00	2,463.33	.00	400.00
		6호봉	28,727.00	26,116.00	2,611.00	2,611.00	.00	.00	.00	.00
		9호봉	19,386.58	17,257.08	1,808.08	1,176.38	4.17	991.67	28.00	321.42
		10호봉	38,036.00	32,084.50	5,951.50	2,761.00	720.00	2,470.50	.00	.00
12호봉		36,568.50	32,485.50	4,083.00	3,383.50	660.00	39.50	.00	.00	
13호봉		45,481.67	32,425.33	12,656.33	3,242.67	1200.00	7,877.67	1,008.00	400.00	
도 이양 시설	21호봉	36,361.00	25,452.00	10,189.00	2,546.00	.00	7,307.00	336.00	720.00	
	1호봉	26,293.75	22,588.27	3,429.44	2,073.82	461.67	1,622.40	146.81	276.04	
	5호봉	33,850.89	25,512.36	8,133.17	2,537.23	1014.64	4,135.67	533.62	205.36	
	10호봉	41,541.08	32,025.46	9,190.22	3,172.54	1280.27	4,088.64	780.36	325.41	
	15호봉	48,821.82	37,257.93	10,824.93	3,727.00	1018.93	4,796.86	1,282.14	738.96	
	20호봉	58,253.94	45,521.88	11,485.75	4,541.56	1057.50	5,305.44	581.25	1,246.31	
	25호봉	62,672.00	52,210.71	9,381.00	5,215.86	977.14	3,119.33	514.29	1,080.29	
	30호봉	74,889.75	58,408.75	16,031.00	5,840.63	1125.00	8,615.38	450.00	450.00	
	전체	41,156.03	32,482.95	8,195.23	3,203.53	1035.53	3,601.85	498.43	468.60	
	시군 이양 시설	1호봉	22,366.45	21,113.40	1,233.05	1,445.69	293.35	.00	.00	20.00
		5호봉	26,371.25	22,769.25	3,577.00	2,219.50	1290.00	7.50	60.00	25.00
		10호봉	36,220.13	31,075.88	5,044.25	3,035.50	1286.25	.00	722.50	100.00
15호봉		44,724.33	38,103.67	6,420.67	3,807.33	1680.00	.00	933.33	200.00	
20호봉		56,144.25	48,015.00	7,804.25	4,792.25	1800.00	127.00	1,085.00	325.00	
25호봉		66,782.00	54,757.33	8,624.67	5,464.67	1800.00	.00	1,360.00	3,400.00	
전체	39,835.17	34,504.64	5,022.66	3,208.87	1071.99	4.49	530.84	266.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시설의 소관부처별 보수현황을 보면, 10호봉 기준으로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은 기본급이 2.9천만원이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은 3.0천만원,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은 3.2천만원 그리고 도이양시설은 3.2천만원 마지막으로 시군 이양시설 3.1천만원이었다. 대체로 기본급 기준에서는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이 가장 적었고, 도이양시설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소관부처별 기본급과 보수총액을 비교해 보면, 기본급 10호봉을 기준으로 여가부시설이 2.9천만원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3.0천만원 그리고 시군이양시설 3.1천만원, 도이양시설과 호봉미적용시설이 3.2천만원 등이었다. 대체로 기본급기준으로는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과 도이양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수당을 포함한 10호봉 보수 총액 기준으로는 도이양시설이 4.1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4.13천만원 그리고 호봉미적용시설이 3.8천만원 그리고 여가부 국비지원 시설이 3.3천만원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기준에서도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의 보수액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도이양시설이 기본급과 보수총액에서 다른 시설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종사자규모와 호봉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단일화할 경우 여가부시설은 1급(원장, 센터장)이 약 9.0%정도 수준이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은 5.5% 정도로 추정된다.

[표6-18]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현황

구분	종사자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여가부시설 국비	522명	비율	(9.0)	3.1	35.1	12.5	28.5	11.8
		인원(추정)	47	16	183	65	149	62
복지부시설 국비	1,552명	비율	5.5	5.7	12.7	49.7	13.2	13.1
		인원(추정)	85	88	197	771	205	203
호봉미적용시설 국비	790명	비율			0.7	56.8	42.5	
		인원(추정)			6	449	336	
도양시설 가이드	1,676명	비율	6.4	5.3	16.9	26.3	28.7	16.5
		인원(추정)	107	89	283	441	481	277
시군이양시설 가이드	175명	비율	9.2	8.0	25.2	24.5	27.0	6.1
		인원(추정)	16	14	44	43	47	11
전체	4,714명	비율	5.8	4.8	16.1	36.9	24.2	12.2
		인원(추정)	273	226	759	1739	1141	575

[표6-19]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보수현황

구분	단일직급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소계	호봉	복지부 기준안봉	복지부 총족율
여가부 시설 (국비)	1급	43,763.54	37,819.58	3175.69	13.15	50,592	74.75
	2급	38,948.78	34,372.67	3109.44	12.11	45,456	75.62
	3급	29,023.77	25,086.56	2501.00	5.41	32,032	78.32
	4급	30,233.73	26,661.67	2726.56	6.72	31,104	85.72
	5급	28,280.11	23,892.78	3158.87	4.05	26,364	90.63
	6급	28,167.82	24,932.88	1500.68	5.47	26,292	94.83
	전체	3,0477.02	26,335.84	2675.77	6.12	30,036	87.68
복지부 시설 (국비)	1급	57,571.13	46,522.19	10457.25	17.50	52,908	87.93
	2급	46,734.04	37,761.38	8779.02	14.98	47,340	79.77
	3급	40,416.56	32,340.86	7759.14	11.05	39,168	82.57
	4급	41,051.42	28,791.57	12127.21	9.95	39,600	84.78
	5급	38,972.93	31,096.44	7625.28	11.64	31,872	97.57
	6급	37,014.75	26,034.83	10753.77	8.57	28,368	91.78
	전체	4,1403.55	30,678.49	10512.25	10.81	38,124	80.47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1급						
	2급						
	3급	29,889.50	18,689.50	3520.00	4.00	31,320	59.67
	4급	30,579.34	27,761.94	2116.45	7.90	31,980	86.81
	5급	25,347.09	22,819.94	1685.08	3.71	26,364	86.56
	전체	2,8334.51	25,588.97	1937.65	6.22	28,524	89.71
도야양 시설 (가이드)	1급	63,870.09	52,071.60	10759.55	19.87	55,092	94.52
	2급	59,674.57	47,774.73	11224.61	19.32	49,812	95.91
	3급	44,905.36	36,074.90	8436.25	12.18	39,732	90.80
	4급	42,589.01	31,418.45	10687.31	10.58	33,960	92.52
	5급	33,961.57	27,862.22	5692.22	7.62	27,972	99.61
	6급	29,477.20	24,258.37	4910.07	7.11	27,384	88.59
	전체	40,592.46	32,177.23	7952.28	10.56	33,960	94.75
사군야양 시설 (가이드)	1급	57,368.87	49,730.27	6445.27	22.07	56,832	87.50
	2급	54,520.56	47,525.15	6656.94	19.15	49,812	95.41
	3급	43,207.71	37,090.39	5797.80	14.67	41,688	88.97
	4급	39,415.05	33,580.83	5714.22	11.28	35,124	95.61
	5급	26,707.82	24,057.41	2489.05	5.77	27,012	89.06
	6급	26,291.70	23,260.80	3030.90	4.22	26,160	88.92
	전체	38,990.67	33,858.00	4842.49	12.04	37,146	91.15
전체	1급	56,381.84	47,113.40	8141.15	17.23	52,908	89.05
	2급	51,310.00	42,079.81	8716.15	16.76	48,540	86.69
	3급	39,177.66	32,224.64	6258.98	10.35	38,124	84.53
	4급	38,920.69	29,334.13	9239.50	9.69	33,960	86.38
	5급	31,936.58	26,768.79	4607.90	7.38	27,972	95.70
	6급	31,340.73	24,865.30	6056.35	7.27	27,384	90.80
	전체	38,274.26	30,314.05	7450.06	9.85	33,498	90.50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직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단일화했을 때 시설 유형별 급여를 보면, 여가부시설의 경우 1급 기준으로 3.8천만원, 복지부 시설 중 국비지원시설은 5.7천만원, 호봉이 적용되지 않은 아동시설(지역 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3급 기준 1.8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직급단일화는 종사자의 규모와 호봉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5인 이하의 시설은 최고 직급을 호봉수와 연동하여 3급으로 적용하였다. 도이양시설의 경우 1급은 평균 기본급이 5.2천만원이었고, 시군이양시설은 5.0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급에 더하여 수당까지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여가부 시설의 경우 3급 기준 2.9천만원이고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은 4.0천만원, 호봉미적용 시설의 경우 3.0천만원, 도이양시설은 4.4천만원, 시군이양시설 4.3천만원 등이었다.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도 도이양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군이양시설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그리고 여가부 국비지원 시설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 시설의 평균 보수총액은 3.04천만원이었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은 4.1천만원,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은 2.8천만원, 도이양시설은 4.1천만원, 그리고 시군 이양시설은 3.9천만원이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기본급에서는 지방이양시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기준으로는 지방이양시설보다도 약 2백여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수당총액을 보면,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2.7백만원,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의 수당총액은 1.1천만원, 호봉미적용시설은 1.9백만원, 도이양시설 7.9백만원, 시군이양시설 4.8백만원 등이었다. 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수당총액은 국비지원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이양시설, 시군이양시설, 그리고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호봉미적용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수준은 종사자의 호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각 시설유형별 평균호봉을 보면,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은 평균호봉은 6.12호봉이었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은 10.81호봉, 호봉 미적용 국비지원시설 6.22호봉, 도이양시설 10.56호봉, 시군이양시설 12.04호봉이었다. 호봉순으로 보면, 시군이양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도이양시설,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 그리고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등의 순이었다.

개별 시설유형별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을 산출해 보면,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은 평균적으로 87.68%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의 평균 충족율은 80.47%,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 89.71%, 도이양시설 95.75%, 시군이양시설 91.15% 정도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도이양시설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시군이양시설, 호봉미적용 국비지원시설,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그리고 복지부 국비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복지부 국비지원시설과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그리고 호봉 미적용 국비지원시설 등은 충족율이 90% 이하였다.

[표6-20]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총족율

시설유형	시설	보수현황				복지부 기준급여 ⑥/⑦	가이드 라인 총족률 ⑧/⑨
		보수총액 ⑧	기본급 ⑨	호봉	단일직급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5인이하)	34,347.71	32,650.57	11.57	5.57	32,376	100.8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인이하)	30,094.00	25,086.00	9.40	4.60	31,458	79.74
	성폭력피해상담소	28,910.11	26,220.11	7.20	2.85	31,878	82.2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1,685.57	27,645.40	5.96	3.48	25,962	106.48
	가정폭력상담소	27,438.19	25,349.19	7.03	2.78	34,872	72.6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831.57	26,153.06	5.58	4.15	30,036	87.07
	전체	30,477.02	26,335.84	6.07	3.91	30,036	87.68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28,972.48	24,461.14	5.09	4.39	27,504	88.94
	학대노인상담(5인이하)	28,404.00	23,719.00	5.50	4.75	26,664	88.96
	노인보호전문기관	37,642.47	32,003.35	7.39	3.94	31,104	102.89
	장애인유향별거주시설	41,734.83	30,201.15	10.46	4.09	33,960	88.9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3,210.55	31,000.45	11.10	4.14	35,124	88.26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40,777.46	29,890.96	9.85	4.11	33,960	88.02
	정신요양시설	53,662.00	36,735.95	15.59	4.61	36,306	101.18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2,067.67	43,734.78	14.33	3.33	41,004	106.66
	지역자활센터	34,370.97	29,842.58	10.57	3.01	38,124	78.28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전체	41,403.55	30,678.49	10.68	4.00	38,124	80.47
	아동일시보호시설(5인이하)	20,390.00	20,390.00	9.00	4.00	33,036	61.72
	공동생활가정(5인이하)	31,191.03	27,746.02	8.15	3.94	31,980	86.76
	지역아동센터(5인이하)	27,524.91	24,973.92	5.11	4.58	27,504	90.80
도이양 시설 (가이드)	전체	28,334.51	25,588.97	6.04	4.43	28,524	89.71
	노인여가복지시설	33,007.04	28,978.33	8.06	4.57	30,414	95.28
	아동양육시설	45,188.29	32,498.77	11.46	3.97	35,124	92.53
	아동보호치료시설*(10인이하)	45,992.58	34,003.62	12.54	4.88	32,376	105.03
	자립지원시설(5인이하)	52,874.67	39,964.00	12.33	2.33	42,594	93.83
	장애인단기거주시설(10인이하)	42,625.64	30,781.09	10.27	4.82	30,732	100.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5인이하)	48,991.82	35,280.00	11.64	3.64	37,146	94.98
	장애인복지관	39,199.10	32,831.75	10.74	4.22	33,960	96.68
	장애인보호작업장	48,228.60	36,823.13	10.66	3.58	33,960	108.43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49,793.14	39,050.43	10.16	2.95	38,124	102.43
	노숙인재활시설	45,915.79	33,700.52	14.63	4.17	37,932	88.84
	모자가족복지시설	50,257.45	38,487.91	12.64	3.36	37,650	102.2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48,282.13	38,558.38	12.38	3.38	37,650	102.41
	전체	40,592.46	32,177.23	10.31	4.19	33,960	94.75
시군 이양시설 (가이드)	사회복지관	38,990.67	33,858.00	10.82	3.88	37,146	91.15
	전체	38,990.67	33,858.00	10.82	3.88	37,146	91.15
전체	전체	38,134.18	30,469.09	9.64	4.10	33,498	90.96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은 소관부처별로 그리고 국비지원시설과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간의 차이도 있지만 소관부처 내 그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시설내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별로 보수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동일한 소관부처의 시설에서도 시설의 유형별로 보수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가령,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의 유형별 평균급여를 보면,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평균 3.4천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0천만원, 성폭력피해 상담소 2.9천만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3.2천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시설유형별 보수수준의 차이는 호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시설의 급여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의 각 호봉별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을 비교해 보면,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이 100%를 상회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79.74%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상회하지만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경우 80%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의 급여수준을 정리해보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충족률의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역자활센터는 78.28%로 80%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노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8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미적용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평균 기본급이 2.0천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61.7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공동생활가정은 86.76% 정도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기본급이 2.6천만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90.8%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봉미적용시설의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이 89.71%정도 수준이다.

도이양시설 시설에서는 평균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은 94.75%이지만 이양시설 내에서도 개별 시설의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신재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 자리지원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등은 90%대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숙인재활시설은 도이양시설 중에서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이 매우 낮은 88.84%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 시군 이양시설인 사회복지관은 종사자의 평균 기본급이 3.4천만원으로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91.1%으로 여가부 국비지원시설과 복지부 국비지원시설보다는 높지만 도이양시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6-21]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시설 유형	시설	보수현황				복지부 기준급여⑥	복지부 충족률 (기본급 ⑥/⑦)	서울시 충족률 (기본+수당) ⑥/⑧
		보수총액 ①	기본급 ②	특별수당 총액 ③	보수합계 (①+②+③)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5인10하)	34347.71	32650.57	0.00	32650.57	32,376	100.85	100.8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인10하)	30094.00	25086.00	0.00	25086.00	31,458	79.74	79.74
	성폭력피해상담소	28910.11	26220.11	0.00	26220.11	34,872	75.19	75.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1685.57	27645.40	1053.65	28699.05	31,878	86.72	90.03
	가정폭력상담소	27438.19	25349.19	879.38	26228.56	34,872	72.69	75.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831.57	26153.06	272.84	26370.83	30,036	87.07	87.80
	전체	30477.02	26335.84	378.27	26676.45	30,036	87.68	88.81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28972.48	24461.14	571.03	25032.17	27,504	88.94	91.01
	학대노인쉼터(5인10하)	28404.00	23719.00	1350.00	25069.00	28,524	83.15	87.89
	노인보호전문기관	37642.47	32003.35	1595.29	33598.65	31,542	101.46	106.52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41734.83	30201.15	1429.21	31630.37	34,542	87.43	91.5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3210.55	31000.45	1390.70	32391.15	35,124	88.26	92.22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40777.46	29890.96	1637.73	31528.69	33,960	88.02	92.84
	정신요양시설	53662.00	36735.95	906.43	37760.73	37,092	99.04	101.80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2067.67	43734.78	1720.00	45454.78	41,688	104.91	109.04
	지역자활센터	34370.97	29842.58	1235.88	31219.75	38,646	77.22	80.78
	전체	41403.55	30678.49	1367.53	32064.28	34,542	88.82	92.83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아동일시보호시설(5인10하)	20390.00	20390.00	0.00	20390.00	33,036	61.72	61.72
	공동생활가정(5인10하)	31191.03	27746.02	1616.95	29362.97	31,980	86.76	91.82
	지역아동센터(5인10하)	27524.91	24973.92	1336.12	26316.33	28,344	88.11	92.85
	전체	28334.51	25588.97	1395.75	26993.96	28,524	89.71	94.64
도양 시설 (가이드)	노인여가복지시설	33007.04	28978.33	1007.53	29985.86	30,414	95.28	98.59
	아동양육시설	45188.29	32498.77	686.35	33185.12	35,346	91.94	93.89
	아동보호치료시설*(10인10하)	45992.58	34003.62	1675.38	35679.00	33,156	102.56	107.61
	자립지원시설(5인10하)	52874.67	39964.00	1680.00	41644.00	43,164	92.59	96.48
	장애인단기거주시설(10인10하)	42625.64	30781.09	1505.45	32286.55	31,872	96.58	101.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5인10하)	48991.82	35280.00	883.64	36163.64	37,650	93.71	96.05
	장애인복지관	39199.10	32831.75	1039.30	33871.05	35,124	93.47	96.43
	장애인보호작업장	48228.60	36823.13	1282.94	38106.07	34,542	106.60	110.32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49793.14	39050.43	1064.57	40115.00	38,124	102.43	105.22
	노숙인재활시설	45915.79	33700.52	1778.18	35478.70	36,306	92.82	97.72
	모자기족복지시설	50257.45	38487.91	1277.95	39765.86	37,650	102.23	105.62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48282.13	38558.38	1125.00	39683.38	37,650	102.41	105.40
	전체	40592.46	32177.23	1023.87	33201.11	33,960	94.75	97.77
시군 양성시설 (가이드)	사회복지관	38990.67	33858.00	1166.89	35024.89	37,146	91.15	94.29
	전체	38990.67	33858.00	1166.89	35024.89	37,146	91.15	94.29
전체	전체	38,134.18	30,314.05	1104.22	31581.05	33,498	90.96	94.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기본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도 큰 편차를 보인다. 일부 시설들은 기본급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수당을 포함할 경우 전체 시설의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접한 경우도 있다.

소관부처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을 보면, 여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평균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88.81%로 기본급 충족율인 87.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성매매 피해상담소가 100.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0.0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87.8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9.74%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의 경우는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92.83%로 기본급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인 88.82%보다도 약 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이 109.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06.52%, 정신요양시설 101.80%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대노인쉼터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90%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은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90%대였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호봉을 미적용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94.64%로 기본급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 89.71%보다 약 5%p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수총액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90%를 상회한 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기본급 가이드라인 충족율인 61.72%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기본급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비교적 양호한 도이양 시설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97.77%로 기본급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 94.75%보다도 약 3%p 높은 수준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신재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등은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100%를 상회하였고, 나머지 모든 시설들은 90%이상의 충족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군 이양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을 보면, 수당 포함 보수총액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94.29%로 기본급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율인 91.15%보다도 약 3%p 높은 수준이었다.

[표6-22]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시설유형	시설	보수현황				복지부 기준급여 ⑥/⑦	가이드라인 총족률 ⑧/⑨
		보수총액 ③	기본급 ④	호봉	단일직급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5인10하)	34,347.71	32,650.57	11.57	5.57	32,376	100.8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인10하)	30,094.00	25,086.00	9.40	4.60	31,458	79.74
	성폭력피해상담소	28,910.11	26,220.11	7.20	2.85	34,872	75.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1,685.57	27,645.40	5.96	3.48	31,878	86.72
	가정폭력상담소	27,438.19	25,349.19	7.03	2.78	34,872	72.6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831.57	26,153.06	5.58	4.15	30,036	87.07
	전체	30,477.02	26,335.84	6.07	3.91	30,036	87.68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28,972.48	24,461.14	5.09	4.39	27,504	88.94
	학대노인쉼터(5인10하)	28,404.00	23,719.00	5.50	4.75	28,524	83.15
	노인보호전문기관	37,642.47	32,003.35	7.39	3.94	31,542	101.46
	장애인유형별가주시설	41,734.83	30,201.15	10.46	4.09	34,542	87.43
	중증장애인가주시설	43,210.55	31,000.45	11.10	4.14	35,124	88.26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40,777.46	29,890.96	9.85	4.11	33,960	88.02
	정신요양시설	53,662.00	36,735.95	15.59	4.61	37,092	99.04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2,067.67	43,734.78	14.33	3.33	41,688	104.91
	지역자활센터	34,370.97	29,842.58	10.57	3.01	38,646	77.22
	전체	41,403.55	30,678.49	10.68	4.00	34,542	88.82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아동일시보호시설(5인10하)	20,390.00	20,390.00	9.00	3.00	37,044	61.72
	공동생활가정(5인10하)	31,191.03	27,746.02	8.15	3.00	35,952	86.76
	지역아동센터(5인10하)	27,524.91	24,973.92	5.11	4.10	29,344	88.11
	전체	28,334.51	25,588.97	6.04	3.85	30,036	89.71
도·양 시설 (가이드)	노인여가복지시설	33,007.04	28,978.33	8.06	4.57	30,414	95.28
	아동양육시설	45,188.29	32,498.77	11.46	3.97	35,346	91.94
	아동보호치료시설*(10인10하)	45,992.58	34,003.62	12.54	4.88	33,156	102.56
	자립지원시설(5인10하)	52,874.67	39,964.00	12.33	2.33	43,164	92.59
	장애인단기가주시설(10인10하)	42,625.64	30,781.09	10.27	4.82	31,872	96.58
	장애인공동생활가정(5인10하)	48,991.82	35,280.00	11.64	3.64	37,650	93.71
	장애인복지관	39,199.10	32,831.75	10.74	4.22	35,124	93.47
	장애인보호작업장	48,228.60	36,823.13	10.66	3.58	34,542	106.6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49,793.14	39,050.43	10.16	2.95	38,124	102.43
	노숙인재활시설	45,915.79	33,700.52	14.63	4.17	36,306	92.82
	모자가족복지시설	50,257.45	38,487.91	12.64	3.36	37,650	102.23
	미혼모가족복지시설	48,282.13	38,558.38	12.38	3.38	37,650	102.41
	전체	40,592.46	32,177.23	10.31	4.19	33,960	94.75
사군 이상시설 (가이드)	사회복지관	38,990.67	33,858.00	10.82	3.88	37,146	91.15
	전체	38,990.67	33,858.00	10.82	3.88	37,146	91.15
전체	전체	38,134.18	30,314.05	9.64	4.10	33,498	90.96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소관부처별로 그리고 국비시설과 지방이양시설간에도 상당하지만 소관부처 내에서도 시설의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시설 내 그리고 지방이양시설 내에서도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의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단일임금으로 전환하여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지급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을 추정해보면, 총 4,715명의 종사자에게 현재보다도 약 1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현재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총 예산은 137.5억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 총 소요되는 인건비는 159.0억원으로 단일임금 적용시 약 21.5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소관의 국비지원시설의 경우도 총 1,552명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480.3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을 모두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임금을 단일화할 경우 약 53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소요액이 53.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단일임금적용시 추가적으로 약 1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도 단일임금 적용시 추가적으로 13.1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호봉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총 790명이 종사하고 있고, 현재 인건비로만 약 199.5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단일임금 적용시 총 인건비 지원액은 22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2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16.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동생활가정 5.1억원, 아동일시보호시설 3.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시설 중 도이양시설의 경우에는 총 1,676명이 종사하고 있고 총 인건비로는 556.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약 571.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일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약 24.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양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어 단일임금 적용시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숙인 재활시설 등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이양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인건비로 지원되는 총예산이 219.3억원이지만 단일임금적용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규모는 226.8억원으로 약 7.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6-23]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시 재정추계

구분	시설유형	현금여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증감액
		종사자수	평균급여	총급여	기준급여	종사자수	총급여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	20	32,650.57	653,011	32,376	20	647,520	-5,49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7	25,086.00	1,179,042	31,458	47	1,478,526	299,484
	성폭력피해상담소	64	26,220.11	1,678,087	31,878	64	2,040,192	362,10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	2,7645.40	608,199	25,962	22	571,164	-37,035
	가정폭력상담소	17	25,349.19	430,936	34,872	17	592,824	161,88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2	26,153.06	9,205,877	30,036	352	10,572,672	1,366,795
	전체	522	26,335.84	13,755,152	30,036		15,902,898	2,147,746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95	24,461.14	2,323,808	27,504	95	2,612,880	289,072
	학대노인쉼터	5	23719.00	118,595	26,664	5	133,320	14,725
	노인보호전문기관	17	32,003.35	544,057	31,104	17	528,768	-15,289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0,201.15	32,345,432	33,960		36,371,160	4,025,72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071	31,000.45	0	35,124	1,071	0	0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29,890.96	0	33,960		0	0
	정신요양시설	164	36,735.95	6,024,696	36,306	164	5,954,184	-70,512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1	43,734.78	2,230,474	41,004	51	2,091,204	-139,270
	지역자활센터	149	29,842.58	4,446,544	38,124	149	5,680,476	1,233,932
	전체	1,552	30,678.49	48,033,606	38,124		53,371,992	5,338,386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아동일시보호시설	24	20,390.00	489,360	33,036	24	792,864	303,504
	공동생활가정	120	27,746.02	3,329,522	31,980	120	3,837,600	508,078
	지역아동센터	646	24,973.92	16,133,152	27,504	646	1,7767,584	1,634,432
	전체	790	25,588.97	19,952,034	28,524		22,398,048	2,446,014
도이양 시설 (가이드)	노인여가복지시설	270	28,978.33	7,824,149	30,414	270	8211,780	387,631
	아동양육시설	320	32,498.77	10,399,606	35,124	320	1,1239,680	840,074
	아동보호치료시설	28	34,003.62	952,101	32,376	28	906,528	-45,573
	자립지원시설	3	39,964.00	119,892	42,594	3	127,782	7,89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	30,781.09	430,935	30,732	14	430,248	-68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	35,280.00	846,720	37,146	24	891,504	44,784
	장애인복지관	668	32,831.75	21,931,609	33,960	668	2,2685,280	753,671
	장애인보호작업장	157	36,823.13	5,781,231	33,960	157	5331,720	-449,511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34	39,050.43	5,232,758	38,124	134	5108,616	-124,142
	노숙인재활시설	14	33,700.52	471,807	37,932	14	531,048	59,241
	모자카족복지시설	44	38,487.91	1,693,468	37,650	44	1656,600	-36,868
	미혼모자카족복지시설		38,558.38	0	37,650		0	0
	전체	1,676	32,177.23	55,684,276	33,960		57,120,786	1,436,510
시군이양 시설(가이드)	사회복지관	175	33,858.00	5,925,150	37,146	175	6,500,550	575,400
	전체		33,858.00	5,925,150	37,146		6,500,550	575,400
	전체	4,715	30,469.09	143,350,218	33,498	4,715	155,294,274	11,944,056

전체적으로 보면, 단일임금 적용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단일임금 적용시 전체 시설에 대한 일괄적 적용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처우가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표6-24] 전라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현황

시설 유형	시설	보수현황					복지부 기준 급여 ④	기본급 준수율	수당 포함 준수율
		직원수 ③	기본급 ①	특별수당 포함 평균급여액 ②	직원 전체 급여액 (기본급)	직원 전체 급여액 (특별수당 포함)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	20	32,651	32,651	653,011	653,011	32,376	100.85	100.8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7	25,086	25,086	1,179,042	1,179,042	31,458	79.74	79.74
	성폭력피해상담소	64	26,220	26,220	1,678,087	1,678,087	31,878	82.25	82.2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	27,645	28,699	608,199	631,379	25,962	106.48	110.54
	가정폭력상담소	17	25,349	26,229	430,936	445,886	34,872	72.69	75.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2	26,153	26,371	9,205,877	9,282,532	30,036	87.07	87.80
	전체		26,336	26,676	13,755,152		30,036	87.68	88.81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95	24,461	25,032	2,323,808	2,378,056	27,504	88.94	91.01
	학대노인쉼터	5	23,719	25,069	118,595	125,345	26,664	88.96	94.02
	노인보호전문기관	17	32,003	33,599	544,057	571,177	31,104	102.89	108.02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0,201	31,630	32,345,432	33,876,126	33,960	88.93	93.1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071	31,000	32,391	0	0	35,124	88.26	92.22
	장애인영양아거주시설		29,891	31,529	0	0	33,960	88.02	92.84
	정신요양시설	164	36,736	37,761	6,024,696	6,192,760	36,306	101.18	104.01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1	43,735	45,455	2,230,474	2,318,194	41,004	106.66	110.85
	지역자활센터	149	29,843	31,220	4,446,544	4,651,743	38,124	78.28	81.89
	전체		30,678	32,064	48,033,606	0	38,124	80.47	84.11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아동일시보호시설	24	20,390	20,390	489,360	489,360	33,036	61.72	61.72
	공동생활가정	120	27,746	29,363	3,329,522	3,523,556	31,980	86.76	91.82
	지역아동센터	646	24,974	26,316	16,133,152	17,000,349	27,504	90.80	95.68
	전체		25,589	26,994	19,952,034	0	28,524	89.71	94.64
도이양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270	28,978	29,986	7,824,149	8,096,182	30,414	95.28	98.59
	아동양육시설	320	32,499	33,185	10,399,606	10,619,238	35,124	92.53	94.48
	아동보호치료시설	28	34,004	35,679	952,101	999,012	32,376	105.03	110.20
	자립지원시설	3	39,964	41,644	119,892	124,932	42,594	93.83	97.7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	30,781	32,287	430,935	452,012	30,732	100.16	105.0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	35,280	36,164	846,720	867,927	37,146	94.98	97.36
	장애인복지관	668	32,832	33,871	21,931,609	22,625,861	33,960	96.68	99.74
	장애인보호작업장	157	36,823	38,106	5,781,231	5,982,653	33,960	108.43	112.21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34	39,050	40,115	5,232,758	5,375,410	38,124	102.43	105.22
	노숙인재활시설	14	33,701	35,479	471,807	496,702	37,932	88.84	93.53
	모자가족복지시설	44	38,488	39,766	1,693,468	1,749,698	37,650	102.23	105.62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38,558	39,683	0	0	37,650	102.41	105.40
	전체		32,177	33,201	55,684,276	0	33,960	94.75	97.77
시군이양 시설	사회복지관	175	33,858	35,025	5,925,150	6,129,356	37,146	91.15	94.29
	전체		33,858	35,025	5,925,150	0	37,146	91.15	94.29
전체	전체	4,715	30,469	31,581	143,350,218	147,898,834	33,498	90.50	94.28

[표6-25]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시 재정추계(특별수당 포함)

구분	시설유형	현급여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증감액
		종사자수	평균급여	총급여	기준급여	종사자수	총급여	
여가부 시설 (국비)	성매매피해상담소	20	32650.57	653,011	32,376	20	647,520	-5,49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7	25086.00	1,179,042	31,458	47	1478,526	299,484
	성폭력피해상담소	64	26220.11	1,678,087	31,878	64	2040,192	362,10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	28699.05	631,379	25,962	22	571,164	-60,215
	가정폭력상담소	17	26228.56	445,886	34,872	17	592,824	146,93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2	26370.83	9,282,532	30,036	352	10,572,672	1,290,140
	전체		26676.45		30,036		15,902,898	2,032,961
복지부 시설 (국비)	노인주거복지시설	95	25032.17	2,378,056	27,504	95	2,612,880	234,824
	학대노인쉼터	5	25069.00	125,345	26,664	5	133,320	7,975
	노인보호전문기관	17	33598.65	571,177	31,104	17	528,768	-42,409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1630.37	33,876,126	33,960		36,371,160	2,495,03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071	32391.15	0	35,124	1,071	0	0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31528.69	0	33,960		0	0
	정신요양시설	164	37760.73	6,192,760	36,306	164	5,954,184	-238,576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1	45454.78	2,318,194	41,004	51	2,091,204	-226,990
	지역자활센터	149	31219.75	4,651,743	38,124	149	5,680,476	1,028,733
호봉미적용 시설 (국비)	전체		32064.28	0	38,124		53,371,992	3,258,591
	아동일시보호시설	24	20390.00	489,360	33,036	24	792,864	303,504
	공동생활가정	120	29362.97	3,523,556	31,980	120	3,837,600	314,044
	지역아동센터	646	26316.33	17,000,349	27,504	646	1,7767,584	767,235
	전체		26993.96	0	28,524		22,398,048	1,384,783
도야양 시설 (가이드)	노인여가복지시설	270	29985.86	8,096,182	30,414	270	8211,780	115,598
	아동양육시설	320	33185.12	10,619,238	35,124	320	1,1239,680	620,442
	아동보호치료시설	28	35679.00	999,012	32,376	28	906,528	-92,484
	차립지원시설	3	41644.00	124,932	42,594	3	127,782	2,85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	32286.55	452,012	30,732	14	430,248	-21,76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	36163.64	867,927	37,146	24	891,504	23,577
	장애인복지관	668	33871.05	22,625,861	33,960	668	2,2685,280	59,419
	장애인보호작업장	157	38106.07	5,982,653	33,960	157	5331,720	-650,933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34	40115.00	5,375,410	38,124	134	5108,616	-266,794
	노숙인재활시설	14	35478.70	496,702	37,932	14	531,048	34,346
	모자기족복지시설	44	39765.86	1,749,698	37,650	44	1656,600	-93,098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39683.38	0	37,650		0	0
	전체		33201.11	0	33,960		57,120,786	-268,841
시군야양시설 (가이드)	사회복지관	175	35024.89	6,129,356	37,146	175	6,500,550	371,194
	전체		35024.89	0	37,146		6,500,550	0
전체	전체	4,715	31581.05	148,515,586	33,498	4,715	155,294,274	6,778,688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별수당을 포함하여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여가부 국비지원시설은 약 20.3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약 32.6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호봉을 미적용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으로 약 13.8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6-26] 사회복지종사자 동일직급별 현황(추정)

구분	단일직급	직원수 (추정)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소계	호봉	서울시 기준연봉	복지부 충족율
여가부 시설 (국비)	1급	47	43,763.54	37,819.58	3175.69	13.15	48,518	77.95
	2급	16	38,948.78	34,372.67	3109.44	12.11	45,456	75.62
	3급	183	29,023.77	25,086.56	2501.00	5.41	32,886	76.28
	4급	65	30,233.73	26,661.67	2726.56	6.72	30,570	87.22
	5급	149	28,280.11	23,892.78	3158.87	4.05	26,364	90.63
	6급	62	28,167.82	24,932.88	1500.68	5.47	26,490	94.12
	전체	522	3,0477.02	26,335.84	2675.77	6.12	30,086	87.68
복지부 시설 (국비)	1급	85	57,571.13	46,522.19	10457.25	17.50	53,196	87.45
	2급	88	46,734.04	37,761.38	8779.02	14.98	47,340	79.77
	3급	197	40,416.56	32,340.86	7759.14	11.05	39,168	82.57
	4급	771	41,051.42	28,791.57	12127.21	9.95	33,960	84.78
	5급	205	38,972.93	31,096.44	7625.28	11.64	32,124	96.80
	6급	203	37,014.75	26,034.83	10753.77	8.57	28,890	90.12
	전체	1550	4,1403.55	30,678.49	10512.25	10.81	38,124	80.47
호봉 미적용 시설 (국비)	1급							
	2급							
	3급	6	29,889.50	18,689.50	3520.00	4.00	31,320	59.67
	4급	449	30,579.34	27,761.94	2116.45	7.90	31,980	86.81
	5급	336	25,347.09	22,819.94	1685.08	3.71	26,298	86.77
	전체		2,8334.51	25,588.97	1937.65	6.22	28,524	89.71
		790						
도야양 시설 (가이드)	1급	107	63,870.09	52,071.60	10759.55	19.87	55,092	94.52
	2급	89	59,674.57	47,774.73	11224.61	19.32	49,812	95.91
	3급	283	44,905.36	36,074.90	8436.25	12.18	39,732	90.80
	4급	441	42,589.01	31,418.45	10687.31	10.58	34,542	90.96
	5급	481	33,961.57	27,862.22	5692.22	7.62	28,410	98.07
	6급	277	29,477.20	24,258.37	4910.07	7.11	27,384	88.59
	전체	1678	40,592.46	32,177.23	7952.28	10.56	33,960	94.75
사군야양 시설 (가이드)	1급	16	57,368.87	49,730.27	6445.27	22.07	56,832	87.50
	2급	14	54,520.56	47,525.15	6656.94	19.15	49,812	95.41
	3급	44	43,207.71	37,090.39	5797.80	14.67	41,346	89.71
	4급	43	39,415.05	33,580.83	5714.22	11.28	35,124	95.61
	5급	47	26,707.82	24,057.41	2489.05	5.77	27,012	89.06
	6급	11	26,291.70	23,260.80	3030.90	4.22	26,160	88.92
	전체	175	38,990.67	33,858.00	4842.49	12.04	37,146	91.15
전체	1급	273	56,381.84	47,113.40	8141.15	17.23	52,908	89.05
	2급	226	51,310.00	42,079.81	8716.15	16.76	48,540	86.69
	3급	759	39,177.66	32,224.64	6258.98	10.35	38,646	83.38
	4급	1739	38,920.69	29,334.13	9239.50	9.69	33,960	86.38
	5급	1141	31,936.58	26,768.79	4607.90	7.38	28,410	94.22
	6급	575	31,340.73	24,865.30	6056.35	7.27	27,384	90.80
	전체	4714	38,274.26	30,314.05	7450.06	9.85	33,498	90.50

사회복지종사자의 직급을 단일임금으로 적용하여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1급은 총 273명 정도로 추정되고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89.05% 정도 수준이다. 2급과 3급도 각각 80%대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을 보이고 있지만 5급과 6급의 가이드라인 충족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어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가이드라인의 충족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휴가일수는 16.5일 이었고, 이중 사용일수는 12.51일로 휴가사용율은 약 72.4% 였다.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11.54일, 그리고 생활시설 13.66일로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의 휴가사용일수가 다소 많았다.

[표6-27] 사회복지종사자 휴가 및 근무일수 현황

구분	시설형태	휴가일수	사용일수	근로시간	초과근무 (횟수)	초과근무 (시간)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
시설 형태	이용시설	15.95	11.54	33.45	1.78	3.23	259.19	237.14	28.67
	생활시설	16.23	13.66	42.00	3.15	10.47	312.01	254.80	58.25
	기타	15.61	12.41	35.58	2.59	3.93	318.35	275.88	47.57
시설 유형	노인복지시설	14.97	12.67	32.66	1.43	3.11	257.54	238.14	25.22
	아동복지시설	15.69	10.12	35.94	2.32	7.14	237.18	212.67	34.31
	청소년복지시설	17.00	17.00	40.00			210.00	200.00	10.00
	장애인복지시설	16.69	13.69	37.14	3.06	6.53	327.94	275.95	54.19
	정신보건시설	16.45	14.39	39.28	2.42	5.72	398.14	323.38	70.93
	노숙인시설	19.92	17.35	32.58	2.44	5.11	336.11	282.90	59.17
	사회복지관	16.60	14.19	32.92	0.98	2.50	296.22	273.27	23.70
	지역(광역)자활센터	16.05	11.51	34.50	1.61	1.45	262.48	241.90	19.39
	여성가족시설	15.72	13.12	38.27	1.71	6.24	271.80	241.42	33.64
	기타	17.40	12.67	42.33	1.75	5.67	241.17	224.40	13.80
운영 법인	사회복지법인	16.51	13.82	37.56	2.71	7.33	314.93	268.20	51.22
	재단법인	15.83	11.91	34.25	1.82	3.40	254.88	220.33	31.48
	사단법인	16.16	12.76	33.53	1.76	3.83	285.30	254.12	33.10
	종교법인	15.19	11.48	27.21	1.03	2.65	244.89	226.89	20.81
	개인운영	15.38	9.53	37.92	2.34	6.24	225.61	207.02	27.81
	국립/지방체	13.06	7.18	30.09	0.63	1.47	232.73	213.95	23.39
	기타	15.91	10.49	36.96	1.84	3.49	228.57	210.49	25.04
계약 형태	정규직	16.37	12.41	36.81	2.41	6.09	284.63	249.03	40.33
	계약직	13.22	10.56	31.25	1.61	4.58	220.49	201.98	26.71
	시간제	8.00	6.00	18.00			118.67	103.33	4.00
직급	최고관리자	16.87	9.58	38.22	2.73	6.74	278.56	253.63	30.65
	상급관리자	19.19	14.96	33.49	2.40	3.77	362.24	314.37	47.80
	중간관리자	17.80	14.39	37.82	2.26	4.93	321.12	281.03	46.08
	초급관리자	16.65	14.22	34.15	2.26	4.31	285.78	252.17	38.64
	실무직원	14.44	11.69	35.77	2.16	6.51	250.24	216.83	38.74
	기타	14.87	10.15	29.95	2.53	7.76	209.86	192.84	32.16
현직장 근무 기간	5년 미만	14.94	11.81	34.91	1.98	6.30	253.77	222.31	35.98
	5~10년 미만	16.75	13.22	38.38	2.54	6.18	291.34	254.26	40.32
	10~15년 미만	19.08	13.39	37.09	2.82	6.17	307.65	273.76	42.72
	15~20년 미만	20.85	14.08	38.41	2.66	5.53	341.88	301.19	42.92
사회 복지 근무 기간	20년 이상	23.15	20.44	31.63	2.98	5.19	436.95	370.97	66.85
	5년 미만	14.23	11.11	33.97	1.73	6.57	232.30	204.55	34.37
	5~10년 미만	15.76	12.30	37.22	2.23	5.28	260.32	229.98	35.85
	10~15년 미만	17.48	13.00	36.20	2.64	5.56	306.00	269.15	43.89
전체	15~20년 미만	19.36	13.48	39.99	2.72	7.28	349.64	305.45	45.44
	20년 이상	19.06	15.20	37.73	3.10	5.54	387.08	330.79	51.96
전체		16.50	12.51	36.48	2.32	5.97	284.18	249.74	39.87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복지시설이 평균 17.0일로 휴가사용일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보건시설 14.39일, 사회복지관 14.19일 등의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은 휴가사용일수가 11일 이내로 다른 시설보다도 휴가사용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운영법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등이 평균 휴가사용일수가 11일 이상이었고, 개인운영시설과 국립 지자체 직영 사회복지시설이 평균 10일 이하였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48시간이었고, 시설형태에서는 이용시설이 33.45시간 그리고 생활시설 42시간으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도 약 8시간 이상 많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으로 정신보건시설 39.28시간, 여성가족시설 38.27시간, 아동복지시설 35.94시간 등의 순이었다.

운영법인별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등은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하고 있었지만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주당 근로시간이 27.21시간으로 다른 시설보다도 근로시간이 다소 적은 수준이었다.

또한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81시간이었고 계약직은 31.25시간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0시간 등이었다. 이외 직급별 그리고 종사자의 근로기간 및 사회복지근속기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2.32회였지만 이용시설은 1.78회, 생활시설은 3.15회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서 두배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3.06회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관이 0.98회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5.97시간이었고, 그중에서도 생활시설이 10.4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시설은 3.32시간정도로 생활시설의 초과근무시간이 이용시설의 세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7.1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6.53시간, 여성가족시설 6.24시간, 정신보건시설 5.72시간, 노숙인 시설 5.11시간 등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최고관리자가 6.74시간으로 가장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실무직원 6.51시간, 중간관리자 4.93시간 등이었다. 근로형태에서는 정규직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6.09시간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인 4.58시간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6-28] 시설유형별 수당지원현황

구분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복지 특종사자 수당	한시적 임금보전수당	연차수당	기타	n
노인주거복지시설	22.2	5.6	22.2	5.6	0.0	16.7	27.8	18
학대노인쉼터	33.3	0.0	33.3	33.3	0.0	0.0	0.0	3
재가노인복지시설	40.0	0.0	20.0	0.0	0.0	20.0	20.0	5
노인여가복지시설	23.8	23.8	4.8	23.8	3.2	6.3	14.3	63
노인보호전문기관	16.7	16.7	16.7	16.7	0.0	0.0	33.3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8.6	21.4	10.7	21.4	3.6	3.6	10.7	28
아동양육시설	25.0	25.0	25.0	15.9	0.0	0.0	9.1	44
아동보호치료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4
자립지원시설	20.0	20.0	20.0	20.0	0.0	0.0	20.0	5
공동생활가정	32.1	5.1	9.0	28.2	2.6	2.6	20.5	78
지역아동센터	39.4	0.5	0.9	36.6	0.5	0.0	22.1	213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22.6	23.4	22.6	19.4	0.0	1.6	10.5	12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5	23.5	23.5	17.6	0.0	2.9	8.8	34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33.3	33.3	33.3	0.0	0.0	0.0	0.0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8.6	21.4	28.6	21.4	0.0	0.0	0.0	42
장애인복지관	23.3	23.3	13.3	16.7	0.0	13.3	10.0	3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0	27.5	7.5	23.8	0.0	5.0	6.3	80
장애인체육시설	33.3	33.3	0.0	33.3	0.0	0.0	0.0	3
장애인생활활동지원센터	37.5	31.3	6.3	25.0	0.0	0.0	0.0	16
수화통역센터	24.1	24.1	10.3	13.8	0.0	0.0	27.6	29
장애인보호작업장	22.6	22.6	22.6	21.0	1.6	6.5	3.2	62
정신요양시설	12.5	25.0	25.0	12.5	0.0	0.0	25.0	8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28.6	28.6	28.6	14.3	0.0	0.0	0.0	7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27.3	27.3	27.3	18.2	0.0	0.0	0.0	11
노숙인재활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사회복지관	26.5	28.6	4.1	24.5	4.1	2.0	10.2	49
지역자활센터	28.1	25.0	9.4	21.9	0.0	15.6	0.0	32
모자가족복지시설	23.8	23.8	23.8	23.8	0.0	0.0	4.8	21
미혼모가족복지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8
일시지원복지시설	25.0	25.0	25.0	25.0	0.0	0.0	0.0	4
일반지원시설	0.0	0.0	0.0	50.0	0.0	0.0	50.0	2
자활지원센터	22.2	22.2	11.1	22.2	0.0	11.1	11.1	9
성매매피해상담소	0.0	0.0	0.0	0.0	0.0	0.0	100.0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5.0	0.0	0.0	25.0	0.0	0.0	50.0	4
성폭력피해상담소	27.3	9.1	0.0	18.2	9.1	0.0	36.4	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6.7	0.0	13.3	20.0	6.7	0.0	33.3	15
가정폭력상담소	0.0	0.0	9.1	27.3	27.3	0.0	36.4	1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	13.3	16.7	10.0	0.0	3.3	26.7	30
전체	320 (28.34)	192 (17.01)	145 (12.84)	268 (23.74)	14 (1.24)	34 (3.01)	156 (13.82)	1129 (100.0)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수당지원 현황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28.34% 정도가 지급하고 있었고, 가족수당은 17.01%, 시간외 근무수당은 12.84%종사자 특별수당 23.74%였고, 한시적 임금보전수당 1.24% 연차수당은 30.1% 등이었다.

[표6-29] 시설유형별 복리후생 현황

구분	재취 자금지 원	안락휴 가계	근로자 대출	교육훈 련비 원	경조사 비지원	체력단 련비 원	삼시 상 당	건강검 진비 원	직원휴 게시설	여직원 휴게시 설	수유실	시설내 가족사	시설내 식당	동호회 지원	해안면 수지원	기타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0.0	0.0	0.0	0.0	33.3	0.0	0.0	11.1	22.2	11.1	0.0	0.0	22.2	0.0	0.0	0.0	9
학대노인쉼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
재가노인복지시설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노인여가복지시설	0.0	5.1	0.0	17.9	2.6	0.0	0.0	2.6	12.8	2.6	0.0	0.0	28.2	2.6	20.5	5.1	39
노인보호전문기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40.0	0.0	40.0	0.0	5
아동양육시설	0.0	0.0	0.0	11.5	11.5	0.0	3.8	7.7	23.1	7.7	0.0	3.8	19.2	0.0	7.7	3.8	26
아동보호치료시설	0.0	0.0	0.0	14.3	14.3	0.0	0.0	0.0	14.3	0.0	0.0	14.3	14.3	14.3	14.3	0.0	7
자립지원시설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공동생활가정	9.5	0.0	9.5	19.0	14.3	4.8	0.0	14.3	0.0	0.0	0.0	0.0	9.5	0.0	4.8	14.3	21
지역아동센터	0.0	0.0	0.0	50.0	7.7	0.0	3.8	3.8	0.0	0.0	0.0	0.0	7.7	0.0	3.8	23.1	26
장애인유형별가주시설	0.0	0.0	0.0	18.3	8.5	0.0	0.0	15.9	14.6	9.8	0.0	1.2	22.0	2.4	6.1	1.2	82
중증장애인가주시설	0.0	0.0	0.0	16.0	4.0	0.0	0.0	8.0	20.0	8.0	0.0	4.0	28.0	0.0	4.0	8.0	25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0.0	0.0	33.3	0.0	0.0	0.0	3
장애인단가주시설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0.0	0.0	33.3	0.0	0.0	0.0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0.0	0.0	0.0	14.3	0.0	0.0	0.0	28.6	0.0	0.0	0.0	0.0	14.3	0.0	28.6	14.3	7
장애인복지관	0.0	0.0	0.0	10.5	0.0	0.0	0.0	5.3	10.5	5.3	0.0	0.0	31.6	10.5	26.3	0.0	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0.0	5.0	0.0	10.0	10.0	0.0	0.0	0.0	5.0	5.0	0.0	0.0	35.0	10.0	15.0	5.0	20
장애인체육시설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2
수화통역센터	0.0	0.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0.0	25.0	0.0	0.0	0.0	4
장애인보호작업장	0.0	4.3	0.0	26.1	13.0	0.0	0.0	0.0	13.0	4.3	0.0	0.0	26.1	4.3	8.7	0.0	23
정신요양시설	0.0	0.0	0.0	9.1	18.2	0.0	0.0	18.2	9.1	0.0	0.0	0.0	18.2	9.1	18.2	0.0	11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0.0	0.0	0.0	25.0	0.0	0.0	0.0	25.0	0.0	0.0	0.0	0.0	0.0	25.0	25.0	0.0	4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0.0	0.0	0.0	0.0	14.3	0.0	0.0	42.9	14.3	0.0	0.0	0.0	28.6	0.0	0.0	0.0	7
노숙인재활시설	0.0	0.0	0.0	22.2	22.2	0.0	0.0	0.0	11.1	11.1	0.0	0.0	11.1	11.1	11.1	0.0	9
사회복지관	0.0	8.1	0.0	21.6	10.8	0.0	0.0	2.7	10.8	2.7	0.0	0.0	13.5	2.7	27.0	0.0	37
지역자활센터	0.0	14.3	0.0	42.9	14.3	0.0	0.0	0.0	14.3	0.0	0.0	0.0	0.0	0.0	14.3	0.0	7
모자가족복지시설	0.0	0.0	0.0	28.6	0.0	0.0	14.3	0.0	28.6	0.0	0.0	0.0	0.0	0.0	0.0	28.6	7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0.0	0.0	0.0	33.3	0.0	0.0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0.0	3
일시지원복지시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2
일반지원시설	0.0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3
자활지원센터	0.0	16.7	0.0	16.7	0.0	0.0	16.7	0.0	16.7	0.0	0.0	0.0	0.0	16.7	16.7	0.0	6
성매매피해상담소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성폭력피해상담소	0.0	28.6	0.0	28.6	14.3	0.0	14.3	0.0	14.3	0.0	0.0	0.0	0.0	0.0	0.0	0.0	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0.0	33.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0.0	3
가정폭력상담소	0.0	0.0	0.0	60.0	0.0	0.0	0.0	0.0	20.0	0.0	0.0	0.0	20.0	0.0	0.0	0.0	5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0	0.0	0.0	22.2	0.0	0.0	0.0	11.1	22.2	0.0	22.2	0.0	0.0	22.2	0.0	0.0	9
전체	2	15	2	88	39	1	6	34	57	23	2	4	90	16	51	19	449

복리후생 현황을 보면,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복리후생은 시설내 식당 90명, 교육훈련비 지원 88명, 직원휴게시설 57명, 경조사비 지원 39명 등의 순이었다.

[표6-30]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1순위)

구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단일 급여 체제로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의무화	보조금 지급 주체 이동 → 중앙 정부로 전환	현장 종사자와 인건비 관련 협의 시스템 마련	공무원 수준 으로 급여 인상	법정 수당 보조금 지급	별도 수당 확보 (지자체)	대체 인건비 현실화	출산/육 아휴직자 대한 정액의 인건비 지급 인정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	50.0	25.0	25.0	-	-	-	-	-	-	-	-	-	4
학대노인쉼터	100.0	-	-	-	-	-	-	-	-	-	-	-	1
재가노인복지시설	50.0	-	-	50.0	-	-	-	-	-	-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6.7	6.7	53.3	-	13.3	6.7	-	6.7	6.7	-	-	-	15
노인보호전문기관	-	-	-	-	-	-	100.0	-	-	-	-	-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5.0	25.0	-	-	-	-	25.0	-	-	12.5	-	12.5	8
아동양육시설	23.1	7.7	7.7	7.7	23.1	-	-	23.1	-	-	7.7	-	13
아동일시보호시설	-	-	-	-	-	-	100.0	-	-	-	-	-	1
아동보호치료시설	-	-	-	-	-	-	100.0	-	-	-	-	-	1
자립지원시설	-	-	-	-	100.0	-	-	-	-	-	-	-	1
공동생활가정	80.8	-	7.7	-	3.8	-	3.8	3.8	-	-	-	-	26
아동전용시설	75.0	-	-	-	-	-	25.0	-	-	-	-	-	4
지역아동센터	61.5	25.0	3.8	2.9	1.0	-	5.8	-	-	-	-	-	104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7.9	-	10.3	3.4	3.4	-	37.9	3.4	-	3.4	-	-	2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7.5	-	-	-	-	-	-	-	-	12.5	-	-	8
장애인영양아거주시설	-	-	-	-	-	-	100.0	-	-	-	-	-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	-	-	50.0	50.0	-	-	-	-	-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8	-	30.8	-	15.4	-	15.4	-	-	-	-	7.7	13
장애인복지관	14.3	-	42.9	-	-	-	28.6	-	14.3	-	-	-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8	4.2	16.7	4.2	4.2	-	33.3	8.3	-	4.2	-	4.2	24
장애인체육시설	-	-	-	100.0	-	-	-	-	-	-	-	-	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6.7	16.7	16.7	-	-	-	50.0	-	-	-	-	-	6
수화통역센터	14.3	-	42.9	-	-	-	42.9	-	-	-	-	-	7
장애인보호작업장	14.3	-	7.1	7.1	14.3	-	35.7	7.1	7.1	7.1	-	-	14
정신요양시설	50.0	-	-	-	-	-	50.0	-	-	-	-	-	2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	-	-	-	50.0	-	50.0	-	-	-	-	-	2
정신재활시설(아동시설)	-	-	33.3	-	-	-	66.7	-	-	-	-	-	3
노숙인재활시설	50.0	-	50.0	-	-	-	-	-	-	-	-	-	2
사회복지관	14.3	-	14.3	-	21.4	-	28.6	14.3	7.1	-	-	-	14
지역자활센터	37.5	12.5	25.0	-	-	-	25.0	-	-	-	-	-	8
모자가족복지시설	40.0	-	-	-	40.0	-	-	-	20.0	-	-	-	5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	-	-	-	50.0	-	50.0	-	-	-	-	-	2
일시지원복지시설	100.0	-	-	-	-	-	-	-	-	-	-	-	1
일부지원시설	-	-	-	-	-	-	100.0	-	-	-	-	-	1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	-	-	-	-	100.0	-	-	-	-	-	1
자활지원센터	66.7	33.3	-	-	-	-	-	-	-	-	-	-	3
성매매피해상담소	100.0	-	-	-	-	-	-	-	-	-	-	-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0.0	-	-	-	-	-	-	-	-	-	-	-	1
성폭력피해상담소	83.3	-	-	-	16.7	-	-	-	-	-	-	-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75.0	25.0	-	-	-	-	-	-	-	-	-	-	4
가정폭력상담소	85.7	-	-	14.3	-	-	-	-	-	-	-	-	7
간기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3	11.1	44.4	-	-	-	11.1	-	-	-	-	-	9
전체	161	37	45	10	22	2	63	11	5	5	1	3	365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급여 인상, 단일임금체계 구축으로 인한 보수격차 해소 등의 순이었다.

[표6-31]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구분	시설유형별 급여차이	직종 간 급여차이	직급 간 급여차이	가이드라인 권고 미준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재	호봉·학점 시 경과인정 차등적용	기타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1.4	2.4	-	-	-	-	7.1	-	4
학대노인쉼터	0.7	-	-	-	-	-	-	-	1
재가노인복지시설	0.7	-	-	-	-	-	-	11.1	2
노인여가복지시설	2.7	19.0	12.5	1.4	-	-	-	-	15
노인보호전문기관	-	-	-	1.4	-	-	-	-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7	2.4	6.3	1.4	-	-	7.1	-	8
아동양육시설	3.4	9.5	-	1.4	2.9	-	-	11.1	12
아동일시보호시설	-	-	6.3	-	-	-	-	-	1
아동보호치료시설	-	-	-	-	-	-	7.1	-	1
자립지원시설	-	-	6.3	-	-	-	-	-	1
공동생활가정	9.5	-	6.3	6.9	11.4	-	-	-	24
아동전용시설	0.7	-	-	2.8	2.9	-	-	-	4
지역아동센터	24.5	16.7	6.3	20.8	68.6	84.2	21.4	-	102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8.8	9.5	-	11.1	2.9	-	7.1	11.1	28
중증장애인가주시설	2.0	2.4	-	5.6	-	-	-	-	8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	2.4	-	-	-	-	-	-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6.3	-	-	-	7.1	-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4	4.8	-	4.2	2.9	-	-	22.2	13
장애인복지관	1.4	4.8	-	2.8	-	-	7.1	-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5	2.4	12.5	6.9	-	-	7.1	33.3	23
장애인체육시설	0.7	-	-	-	-	-	-	-	1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3.4	-	-	1.4	-	-	-	-	6
수화통역센터	2.7	-	6.3	1.4	-	-	7.1	-	7
장애인보호작업장	0.7	14.3	6.3	4.2	-	-	14.3	-	13
정신요양시설	-	-	6.3	1.4	-	-	-	-	2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1.4	-	-	-	-	-	-	-	2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0.7	-	-	-	-	-	7.1	11.1	3
노숙인재활시설	1.4	-	-	-	-	-	-	-	2
사회복지관	3.4	2.4	6.3	8.3	-	-	-	-	13
지역자활센터	5.4	-	-	-	-	-	-	-	8
모자가족복지시설	2.0	2.4	6.3	-	-	-	-	-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	1.4	-	-	-	-	1
일시지원복지시설	0.7	-	-	-	-	-	-	-	1
일반지원시설	-	-	-	1.4	-	-	-	-	1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	-	-	2.9	-	-	-	1
자활지원센터	0.7	-	-	-	2.9	5.3	-	-	3
성매매피해상담소	-	-	-	-	2.9	-	-	-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1.4	-	-	-	-	1
성폭력피해상담소	1.4	-	-	5.6	-	-	-	-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0.7	-	-	2.8	-	-	-	-	3
가정폭력상담소	0.7	2.4	6.3	2.8	-	10.5	-	-	7
간가다문화지원센터	4.8	2.4	-	1.4	-	-	-	-	9
전체	147	42	16	72	35	19	14	9	354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유형별 급여차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이드라인 권고 미준수, 직종간 급여차이 등의 순이었다. 여전히 종사자의 다수는 시설별로 종사자의 급여격차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6-32]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시행 여부(미시행 기준)

구분	근로계약서 제출	취업 규칙	운영 규정	주40 시간 근로	연장 시간 근로 제한	연차 유급 보장	사외 근로 제한	생리 휴가	출산 전후 유급 휴가 제공	유급 수유 시간	육아 휴직	퇴직 급여	재해 보상	정보 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								75.0	25.0	50.0	25.0			
재가노인복지시설					50.0			100.0	100.0	100.0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66.7	26.7	20.0	28.6		40.0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0.0	44.4	44.4	87.5	44.4	50.0	33.3		22.2	
아동양육시설					21.4	7.1	21.4	50.0	21.4	35.7	14.3			
아동일시보호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50.0	50.0	100.0	50.0	100.0	100.0	100.0			
자립지원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동생활가정				61.5	69.2	73.1	61.1	52.9	56.3	75.0	43.8	4.0		
아동전용시설					75.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25.0	25.0
지역아동센터		7.9		6.9	86.0	46.5	51.5	74.5	81.7	86.0	80.2	5.0	21.8	5.0
장애인유형별가주시설		7.1		3.6	3.6	3.6	17.9	35.7	17.9	42.9	17.9	3.7	7.4	
중증장애인가주시설					12.5	12.5		33.3		33.3				
장애인영유아가주시설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단인가주시설		50.0				50.0		50.0	50.0	50.0	5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3		23.1	23.1	25.0	42.9	57.1	57.1	57.1	57.1	15.4	15.4	15.4
장애인복지관					50.0		33.3	33.3		33.3			16.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3.5			73.9	33.3	47.6	54.5	27.3	45.5	27.3		8.3	8.7
장애인체육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3.3			66.7	50.0	16.7	33.3	20.0	40.0	20.0		16.7	
수화통역센터	14.3	50.0	14.3		28.6	14.3	42.9	42.9		57.1				
장애인보호작업장						7.1	14.3	7.1	7.7	7.7	7.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0.0	50.0		5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33.3	100.0	33.3	33.3	33.3			
노숙인재활시설					50.0			100.0		100.0	50.0		50.0	
사회복지관					71.4	21.4	14.3	15.4		14.3				
지역자활센터					75.0	25.0	28.6	42.9		57.1	14.3			12.5
모자가족복지시설		33.3				20.0	20.0	100.0	60.0	80.0	60.0		4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일시지원복지시설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원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0			100.0	100.0								
자활지원센터		33.3			100.0	33.3								
성매매피해상담소		100.0			100.0	100.0	100.0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83.3	16.7	33.3	50.0	20.0	60.0	40.0			33.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5.0			33.3	25.0	25.0	33.3	66.7	66.7	66.7			
가정폭력상담소		28.6			57.1	14.3	14.3	66.7	16.7	40.0	16.7			16.7
건강다문화지원센터				12.5	44.4	11.1	44.4	44.4	22.2	22.2	11.1			22.2
전체	0.3	9.8	0.3	8.3	55.6	32.2	37.2	55.0	40.8	57.4	39.7	2.5	10.3	4.5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급수유시간 미시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리휴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50%이상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33] 모성보호 제도시행 여부(미시행 기준)

구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율 위한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가족돌봄지원	출산전후 휴가제도	유산·사산 휴가제도	태아검진 시간 제공	수유시간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노인주거복지시설						25.0	25.0	25.0	25.0	25.0
재가노인복지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18.2	40.0	50.0	60.0	60.0	9.1	55.6	33.3	44.4	30.0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8.6	28.6	28.6	57.1	42.9	42.9	57.1	57.1	71.4	71.4
아동양육시설	10.0	80.0	80.0	80.0	100.0	22.2	90.0	77.8	87.5	70.0
아동일시보호시설					100.0					
아동보호차료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립지원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동생활가정	71.4	78.6	64.3	78.6	78.6	71.4	78.6	78.6	85.7	78.6
아동전용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아동센터	90.8	93.4	89.5	96.1	93.4	92.1	96.1	96.1	96.1	94.7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3.3	44.4	37.0	76.9	59.3	23.1	52.0	46.2	60.0	44.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8.6	14.3	71.4	57.1		28.6	57.1	57.1	
장애인영양아거주시설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5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0.0	40.0	40.0	100.0	100.0	60.0	60.0	60.0	60.0	60.0
장애인복지관		60.0	40.0	80.0	80.0		40.0	60.0	60.0	4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2.1	73.7	68.4	77.8	68.4	47.1	76.5	76.5	76.5	52.9
장애인체육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80.0	80.0	80.0	80.0	80.0	80.0	100.0	100.0	100.0	100.0
수화통역센터	16.7	33.3	83.3	83.3	33.3		40.0	40.0	80.0	40.0
장애인보호작업장	30.8	30.8	30.8	30.8	30.8	23.1	23.1	23.1	23.1	7.7
정신요양시설		100.0	50.0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66.7	100.0	100.0	100.0	100.0	33.3	100.0	33.3	33.3	100.0
노숙인재활시설	50.0	100.0	100.0	100.0	50.0					
사회복지관		23.1	23.1	84.6	15.4	21.4	30.8	42.9	46.2	14.3
지역자활센터	33.3	66.7	50.0	50.0	83.3	33.3	83.3	50.0	83.3	50.0
모자가족복지시설	60.0	80.0	60.0	80.0	60.0	60.0	80.0	60.0	80.0	80.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지원복지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원시설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활지원센터	33.3	33.3	33.3	33.3	33.3	50.0	50.0	50.0	50.0	50.0
성매매피해상담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80.0	80.0	80.0	80.0	80.0	75.0	66.7	66.7	66.7	66.7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100.0	50.0	50.0	50.0	50.0	50.0
가정폭력상담소	40.0	60.0	60.0	80.0	40.0	40.0	60.0	60.0	60.0	60.0
간·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5	50.0	42.9	42.9	57.1	14.3	28.6	28.6	28.6	57.1
전체	50.2	65.0	61.5	77.8	70.9	52.2	69.7	67.5	73.5	62.5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의 시행율이 낮았고, 다음으로 수유시간제공, 가족돌보지원, 유산 및 사산휴가제도 운영 등의 시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의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6-34]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

구분	전혀 부담 안됨 ^㉔	부담 안되는 편 ^㉕	그저 그렇 ^㉖	부담 되는 편 ^㉗	매우 부담됨 ^㉘	부담되지 않음(㉔+㉕)	부담됨 (㉖+㉗)
노인주거복지시설	-	-	100.0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100.0	-	100
노인여가복지시설	-	15.4	23.1	46.2	15.4	15.4	61.6
노인보호전문기관	-	-	-	100.0	-	-	1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50.0	50.0	-	-	50
아동양육시설	-	-	18.2	45.5	36.4	-	81.9
아동일시보호시설	-	-	100.0	-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	100.0	-	-	100
자립지원시설	-	-	100.0	-	-	-	-
공동생활가정	-	4.5	-	45.5	50.0	4.5	95.5
아동전용시설	-	-	100.0	-	-	-	-
지역아동센터	3.1	3.1	4.6	18.5	70.8	6.2	89.3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4.0	8.0	20.0	28.0	40.0	12	68
중증장애인가주시설	20.0	-	20.0	20.0	40.0	20	60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	-	100.0	-	-	100
장애인단인가주시설	-	50.0	-	50.0	-	50	5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40.0	40.0	20.0	-	60
장애인복지관	16.7	16.7	16.7	50.0	-	33.4	5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8	5.3	5.3	42.1	31.6	21.1	73.7
장애인체육시설	100.0	-	-	-	-	100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	-	100.0	-	-	100
수화통역센터	28.6	14.3	42.9	14.3	-	42.9	14.3
장애인보호작업장	-	27.3	18.2	54.5	-	27.3	54.5
정신요양시설	50.0	50.0	-	-	-	100	-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	-	-	-	100.0	-	1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	-	50.0	50.0	-	-	50
노숙인재활시설	-	-	-	100.0	-	-	100
사회복지관	-	18.2	9.1	54.5	18.2	18.2	72.7
지역자활센터	-	28.6	14.3	42.9	14.3	28.6	57.2
모자가족복지시설	-	-	40.0	60.0	-	-	60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	-	-	100.0	-	-	100
일시자원복지시설	-	-	-	100.0	-	-	100
일반자원시설	-	-	-	-	100.0	-	1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	-	-	100.0	-	100
자활지원센터	-	-	-	50.0	50.0	-	100
성매매피해상담소	-	100.0	-	-	-	100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	-	-	100.0	-	100
성폭력피해상담소	-	-	-	60.0	40.0	-	100
가정폭력상담소	-	14.3	28.6	42.9	14.3	14.3	57.2
간접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6.7	11.1	22.2	-	66.7	22.2
전체	4.5	10.1	14.2	36.0	35.2	14.6	71.2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에서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4.6%밖에 되지 않았고, 부담된다는 의견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3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6-35] 출산휴가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정도

구분	전혀 부담 안됨①	부담 안되는 편②	그저 그렇음③	부담 되는 편④	매우 부담됨⑤	부담되지 않음(③+④)	부담됨 (②+⑤)
노인주거복지시설	-	-	100.0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100.0	-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	18.2	9.1	63.6	9.1	18.2	72.7
노인보호전문기관	-	100.0	-	-	-	100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33.3	66.7	-	-	66.7
아동양육시설	-	9.1	27.3	36.4	27.3	9.1	63.7
아동보호치료시설	-	-	-	100.0	-	-	100.0
자립지원시설	-	-	100.0	-	-	-	-
공동생활가정	-	7.1	7.1	14.3	71.4	7.1	85.7
아동전용시설	-	-	100.0	-	-	-	-
지역아동센터	4.8	1.6	9.5	23.8	60.3	6.4	84.1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8	11.5	19.2	30.8	34.6	15.3	65.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0	-	20.0	20.0	40.0	20	6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50.0	-	50.0	-	50	5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80.0	20.0	-	100.0
장애인복지관	16.7	33.3	-	50.0	-	50	5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2.2	5.6	5.6	44.4	22.2	27.8	66.6
장애인체육시설	100.0	-	-	-	-	100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	-	100.0	-	-	100.0
수화통역센터	33.3	-	50.0	16.7	-	33.3	16.7
장애인보호작업장	-	27.3	18.2	54.5	-	27.3	54.5
정신요양시설	50.0	50.0	-	-	-	100	-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	-	-	-	100.0	-	10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	-	50.0	50.0	-	-	50.0
노숙인재활시설	-	-	-	100.0	-	-	100.0
사회복지관	-	40.0	10.0	30.0	20.0	40	50.0
지역자활센터	-	33.3	33.3	33.3	-	33.3	33.3
모자가족복지시설	-	20.0	20.0	60.0	-	20	6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	50.0	50.0	-	100.0
일반지원시설	-	-	-	-	100.0	-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	-	-	100.0	-	100.0
자활지원센터	-	-	-	50.0	50.0	-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	100.0	-	-	-	100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100.0	-	-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	-	-	66.7	33.3	-	10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100.0	-	100.0
가정폭력상담소	-	28.6	14.3	57.1	-	28.6	57.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6.7	11.1	22.2	-	66.7	22.2
전체	5.6	13.3	14.1	35.7	31.3	18.9	67.0

다음으로 출산휴가제도로 인한 업무부담정도에서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6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의 유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의 다수 시설에서 부담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36]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시 인력운영 방법

구분	계약직 대체 인력 추가고용	남은 인력끼리 나누서 해결	기타	새정규직 인력 채용으로 해결	지난 3년간 대상자 없었음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50.0	50.0	-	-	-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100.0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85.7	-	-	-	14.3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100.0	-	-	-	-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2.5	25.0	12.5	-	-	100.0
아동양육시설	53.8	23.1	-	-	23.1	100.0
아동일시보호시설	100.0	-	-	-	-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	50.0	-	-	50.0	100.0
자립지원시설	-	100.0	-	-	-	100.0
공동생활가정	52.0	20.0	-	-	28.0	100.0
아동전용시설	25.0	-	25.0	-	50.0	100.0
지역아동센터	21.8	16.8	3.0	2.0	56.4	100.0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64.3	3.6	3.6	3.6	25.0	100.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5.0	12.5	-	-	12.5	100.0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100.0	-	-	-	-	10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00.0	-	-	-	-	1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1.7	8.3	25.0	-	25.0	100.0
장애인복지관	85.7	14.3	-	-	-	10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9.1	13.6	4.5	-	22.7	100.0
장애인체육시설	-	-	-	-	100.0	100.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50.0	16.7	-	-	33.3	100.0
수화통역센터	28.6	42.9	-	-	28.6	100.0
장애인보호작업장	28.6	28.6	-	-	42.9	100.0
정신요양시설	100.0	-	-	-	-	100.0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0.0	50.0	-	-	-	100.0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100.0	-	-	-	-	100.0
노숙인재활시설	-	-	-	-	100.0	100.0
사회복지관	100.0	-	-	-	-	100.0
지역자활센터	50.0	37.5	-	-	12.5	100.0
모자기족복지시설	80.0	20.0	-	-	-	100.0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50.0	-	-	50.0	-	100.0
일시지원복지시설	100.0	-	-	-	-	100.0
일반지원시설	100.0	-	-	-	-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100.0	-	-	-	-	100.0
자활지원센터	66.7	33.3	-	-	-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100.0	-	-	-	-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100.0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80.0	-	-	-	20.0	10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6.7	-	-	-	33.3	100.0
가정폭력상담소	28.6	14.3	-	-	57.1	100.0
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88.9	-	-	-	11.1	100.0
전체	49.4	15.1	2.8	1.1	31.5	100.0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처리방법을 보면, 계약직 대체인력 활용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난 3년간 대상자가 없었다는 시설도 31.5%였다. 이외에도 남은 인력들이 업무공백을 해결했다는 시설도 15.1%였다.

[표6-37]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신규인력고용의 어려운 점

구분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체인력 낮은 급여로 인력채용 어려움	해당업무수행능력 갖춘 인력 구하기 어려움	내부적으로 해결가능 (대체인력불필요)	해당기간만 일하겠다는 인력 구하기 어려움	기타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25.0	-	25.0	-	50.0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100.0	-	-
노인여가복지시설	21.4	7.1	71.4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100.0	-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2.5	-	50.0	-	25.0	12.5	-
아동양육시설	15.4	30.8	30.8	-	23.1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	-	100.0	-	-
아동보호치료시설	-	50.0	50.0	-	-	-	-
자립지원시설	-	-	-	-	100.0	-	-
공동생활가정	60.0	8.0	12.0	-	20.0	-	-
아동전문시설	25.0	50.0	-	-	-	25.0	-
지역아동센터	38.3	18.1	10.6	1.1	23.4	8.5	-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3.6	14.3	42.9	-	39.3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37.5	-	-	62.5	-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	-	-	100.0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50.0	-	50.0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7.3	-	45.5	-	9.1	18.2	-
장애인복지관	-	-	50.0	-	50.0	-	-
장애인주거보호시설	14.3	9.5	38.1	-	33.3	4.8	-
장애인체육시설	-	-	-	-	100.0	-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3.3	16.7	50.0	-	-	-	-
수화통역센터	-	-	57.1	14.3	28.6	-	-
장애인보호작업장	14.3	14.3	35.7	-	35.7	-	-
정신요양시설	-	50.0	-	-	50.0	-	-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50.0	-	-	-	50.0	-	-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	-	100.0	-	-	-	-
노숙인재활시설	-	100.0	-	-	-	-	-
사회복지관	7.1	14.3	64.3	-	14.3	-	-
지역자활센터	62.5	-	12.5	-	25.0	-	-
모자가족복지시설	20.0	-	80.0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0.0	-	-	-	50.0	-	-
일시지원복지시설	-	-	100.0	-	-	-	-
일시지원시설	-	-	100.0	-	-	-	-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100.0	-	-	-	-	-
자활지원센터	-	66.7	-	33.3	-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100.0	-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	10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40.0	-	60.0	-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50.0	-	50.0	-	-
가정폭력상담소	57.1	14.3	28.6	-	-	-	-
건강가정·문화가족지원센터	-	22.2	44.4	-	33.3	-	-
전체	24.9	14.7	30.5	0.9	25.2	3.8	-

직장동료의 출산 및 육아시 대체인력의 신규채용시의 어려운 점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당 기간만을 원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25.2%,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체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높았다.

[표6-38]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구분	근로 기준법 준수	유연근무 제 도입	법정 배치 기준 준수	교육 기회 보장	산업 안전 보장 체계 마련	유급 병가 제도 입	일·장 영양 지원	복지 포인트 제공	대체 인력 제도 마련	학습 휴가 제 도입	심리 적응 지원 체계 마련	자녀 돌봄 휴가 제 도입	장기 근속자 안식 휴가 제 시행	기타	근로 환경 개선 과제 인
노인주거복지시설									50.0				25.0		25.0
학대노인쉼터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								50.0					50.0		
노인여가복지시설	7.1	14.3	21.4				7.1	7.1	7.1		14.3		21.4		
노인보호전문기관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2.5		25.0				25.0	12.5					12.5		12.5
아동양육시설	16.7		41.7		25.0							8.3	8.3		
아동일시보호시설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50.0						50.0						
지립자원시설			100.0												
공동생활가정	65.4		11.5		3.8			3.8			3.8		7.7		3.8
아동전용시설							25.0	25.0	25.0						25.0
지역아동센터	21.2	5.8	2.9	1.9	1.0	2.9	1.0	11.5	27.9		5.8		15.4	1.0	1.9
장애인유형별가주	17.9	10.7	14.3		3.6	3.6		14.3	7.1		7.1		10.7	3.6	7.1
중증장애인가주	12.5	25.0	25.0										12.5	12.5	12.5
장애인영유아가주			100.0												
장애인단인가주			50.0								5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8		7.7					23.1	7.7			7.7	7.7	7.7	7.7
장애인복지관			60.0								4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4	13.0	52.2	4.3	4.3		4.3		4.3						
장애인체육시설					100.0										
장애인생활이동센터	16.7							33.3					50.0		
수화통역센터	14.3	28.6				14.3		14.3	14.3				14.3		
장애인보호작업장	14.3		71.4			7.1							7.1		
정신요양시설			50.0										50.0		
정신재활시설(생활)		50.0							50.0						
정신재활시설(이용)	50.0										50.0				
노숙인재활시설	50.0	50.0													
사회복지관	7.1		57.1			7.1		14.3			7.1		7.1		
지역자활센터		12.5	25.0			12.5		25.0					12.5		12.5
모자가족복지시설	40.0										20.0			20.0	2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0.0				50.0								
일시자원복지시설			100.0												
일반자원시설		100.0													
지립자원공동생활가정	100.0														
지립자원센터	33.3												66.7		
성매매피해상담소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16.7			33.3		33.3		16.7
가정폭력피해자보호	50.0										25.0				25.0
가정폭력상담소	14.3	14.3		14.3	14.3					14.3			14.3		14.3
간접지원가족지원센터	11.1	11.1	11.1			11.1					33.3			11.1	11.1
전체	20.3	6.7	18.4	1.1	2.5	2.5	2.2	8.9	11.4	0.3	6.7	0.3	12.0	1.9	4.7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2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정배치기준 준수 18.4%,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 시행 12.0%, 대체인력제도 마련 11.4%, 복지포인트 지급 8.9%, 유연근무제 도입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39] 직무나 업무강도 대비 보수수준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한다 [㉧+㉨]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17.7	30.7	33.3	14.7	3.7	48.4	18.4	2.56	430
	여성	24.2	33.8	27.7	12.3	2.0	58.0	14.3	2.34	1075
시설 형태	이용시설	26.6	34.2	25.7	11.1	2.4	60.8	13.5	2.28	970
	생활시설	14.6	30.5	35.3	17.0	2.6	45.1	19.6	2.63	459
	기타	10.3	25.6	53.8	7.7	2.6	35.9	10.3	2.67	39
시설 유형	노인시설	9.1	37.7	37.0	14.9	1.3	46.8	16.2	2.62	154
	아동청소년시설	37.1	35.2	18.1	7.2	2.4	72.3	9.6	2.03	542
	장애인시설	10.7	27.7	40.5	18.2	2.9	38.4	21.1	2.75	412
	정신보건·노숙인	16.7	14.3	47.6	16.7	4.8	31.0	21.5	2.79	42
	사회복지관	7.0	31.0	32.4	28.2	1.4	38.0	29.6	2.86	71
	자활센터	18.9	39.6	34.0	5.7	1.9	58.5	7.6	2.32	53
	여성가족시설	24.3	39.5	23.7	10.2	2.3	63.8	12.5	2.27	177
	기타	50.0	33.3	16.7			83.3		1.67	6
근로 형태	정규직	22.2	33.2	29.1	13.1	2.4	55.4	15.5	2.40	1303
	계약직	23.6	32.8	31.0	9.8	2.9	56.4	12.7	2.36	174
	사각지대		50.0			50.0	50.0	50	3.50	4
직위	최고관리자	46.8	35.2	11.6	5.3	1.1	82.0	6.4	1.79	284
	상급관리자	22.1	31.6	26.3	16.8	3.2	53.7	20	2.47	95
	중간관리자	13.6	32.2	37.0	13.6	3.7	45.8	17.3	2.62	273
	초급관리자	8.0	31.3	39.3	19.6	1.8	39.3	21.4	2.76	112
	실무직원	18.3	32.3	32.8	14.3	2.3	50.6	16.6	2.50	693
	기타	13.2	42.1	23.7	13.2	7.9	55.3	21.1	2.61	38
전 체		332(22.2)	493(33.0)	439(29.4)	194(13.0)	37(2.5)	55.2	15.5	2.41	14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와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조사결과를 보면, 업무강도 대비 만족도 수준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2%이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종사자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지만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종사자보다는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용시설은 업무강도 대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8%였지만 생활시설은 불만족의 비율이 45.1%정도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아동청소년시설의 불만족 정도가 7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성가족복지시설 63.8%, 노인시설 46.8%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시설과 정신보건 및 노숙인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은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족도의 비율이 30%대로 다른 시설의 불만족 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근로형태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보수수준의 불만족의 정도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6-40] 유사직군 종사자 대비 보수수준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다 [b]	보통 이다	그렇다 [c]	매우 그렇다 [d]	만족하지 않는다 [a+b]	만족 한다 [c+d]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21.0	33.6	28.8	15.0	1.7	54.6	16.7	2.43	420
	여성	31.1	32.6	24.6	10.7	1.1	63.7	11.8	2.18	1046
시설 형태	이용시설	34.4	32.9	20.6	11.1	1.1	67.3	12.2	2.17	579
	생활시설	18.0	32.4	35.3	13.1	1.1	50.4	14.2	2.25	1392
	기타	10.5	34.2	42.1	10.5	2.6	44.7	13.1	2.12	943
	노인시설	12.4	39.3	33.1	14.5	0.7	51.7	15.2	2.47	450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시설	44.2	34.0	13.9	6.2	1.7	78.2	7.9	2.61	38
	장애인시설	14.9	28.8	39.0	15.6	1.7	43.7	17.3	2.24	1431
	정신보건·노숙인	21.4	21.4	28.6	28.6		42.8	28.6	2.52	145
	사회복지관	13.0	33.3	26.1	27.5		46.3	27.5	1.87	532
	자활센터	37.3	37.3	21.6	3.9		74.6	3.9	2.61	403
	여성가족시설	31.8	36.4	22.0	9.2	0.6	68.2	9.8	2.64	42
	기타	33.3	16.7	33.3	16.7		50.0		2.68	69
	정규직	28.2	33.5	25.7	11.5	1.1	61.7	12.6	2.18	34
근로 형태	계약직	28.4	31.4	26.6	12.4	1.2	59.8	13.6	1.79	309
	시간제		50.0			50.0	50.0	50	2.21	33
	최고관리자	54.0	33.3	6.2	6.2	0.4	87.3	6.6	2.01	100
직위	상급관리자	33.7	32.6	18.0	14.6	1.1	66.3	15.7	2.25	1446
	중간관리자	17.8	36.0	33.3	12.1	0.8	53.8	12.9	2.24	1270
	초급관리자	17.0	27.7	34.8	19.6	0.9	44.7	20.5	2.27	169
	실무직원	23.5	32.2	30.6	12.1	1.6	55.7	13.7	3.50	4
	기타	13.2	42.1	21.1	18.4	5.3	55.3	23.7	2.24	1443
전 체		409 (28.1)	481 (33.0)	375 (25.8)	173 (11.9)	18 (1.2)	61.1	13.1	1.66	276

유사직군 종사자 대비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종사자보다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족도가 67.3%로 생활시설 종사자 50.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만족도가 63.7%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시설과 자활센터의 불만족도가 70%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여성가족시설 68.2%, 노인시설 51.7% 등의 순이었다.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의 불만족도가 61.7%로 계약직의 불만족도 59.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사한 수준이었고, 직위별로 보면 최고관리자의 불만족도가 87.3%로 나타나 직위가 높을수록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구분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	직렬 간 급차이 부적절	직급 간 급차이 부적절	호봉 간 급차이 부적절	시설 유형별 보수격차 부적절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의무이행권고	기타
성별	남성	64.9	2.1	1.9	2.1	12	19.8	2.4
	여성	58.6	1.2	2.7	3.5	15.2	21.6	2.7
시설 형태	이용시설	61.8	1	2.6	2.8	14.9	19.7	3.1
	생활시설	56.5	2.5	2	3.9	14.1	23.6	2
	기타	59.5	0	0	2.7	10.8	27	0
시설 유형	노인시설	72.8	2.7	0.0	3.4	5.4	17.0	1.4
	이동청소년시설	59.3	1.3	1.1	2.3	15.3	23.1	2.5
	장애인시설	62.5	1.2	3.0	4.9	14.6	16.0	2.5
	정신보건·노숙인	45.2	4.8	2.4	2.4	23.8	26.2	0.0
	사회복지관	61.4	0.0	4.3	2.9	7.1	15.7	10.0
	지활센터	47.1	2.0	0.0	0.0	31.4	27.5	2.0
	여성가족시설	56.4	1.2	5.8	3.5	15.1	27.9	1.7
	기타	66.7	0.0	0.0	0.0	33.3	33.3	0.0
근로 형태	정규직	60.1		1.6		2.4		3.1
	계약직	66.3		0.6		1.8		3
	시간제	100		0		0		0
직위	최고관리자	58.1	1.4	0.4	1.1	17.3	24.5	1.8
	상급관리자	52.2	1.1	6.7	2.2	20	22.2	1.1
	중간관리자	54.6	3	3	2.6	15.1	24.7	3
	초급관리자	59.4	0.9	0	5.7	14.2	17	2.8
	실무직원	63.9	1	2.9	3.7	12.5	19.2	3.2
	기타	70.3	0	2.7	5.4	10.8	10.8	0
전 체		878(60.2)	21(1.4)	36(2.5)	45(3.1)	211(14.5)	307(21.0)	39(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보수수준 자체가 낮은 경우가 문제라는 인식이 60.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이 21.0%, 시설 유형별 보수격차 부적절 14.5%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61.8%로 생활시설 종사자 56.5%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 문제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수준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노인시설이 72.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타 시설 66.7%, 장애인시설 62.5%, 사회복지관 61.4% 등의 순이었다. 근로형태별로는 계약직의 경우가 낮은 보수수준이 문제라는 인식도가 66.3%로, 정규직의 인식도 60.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실무 직원의 인식도가 63.9%로 직위가 낮아질수록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문제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6-42] 소속된 시설에서 보조금 및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1순위

구분		보조금 부족	월급 지체	승진 제한	경력직 채용의 어려움	인건비 중당 사업비 부족	직원 사기 저하	이직률 증가	낮은 보수로 채용 어려움	낮은 보수로 서비스 질저하	기타
성별	남성	28.6	0.9	4.9	7.5	2.6	27.7	17.4	4.2	4.0	2.1
	여성	40.4	1.1	4.2	7.5	3.3	24.8	9.3	3.2	4.7	1.4
시설 형태	이용시설	41.8	1.0	5.4	4.2	3.3	26.0	11.3	1.9	4.2	0.9
	생활시설	27.1	1.4	2.5	14.3	2.5	25.1	11.8	6.8	5.2	3.4
	기타	26.3		2.6	13.2	5.3	26.3	10.5	2.6	10.5	2.6
시설 유형	노인시설	24.7		4.7	4.7	6.0	28.0	22.7	2.7	6.0	0.7
	아동청소년시설	50.6	0.7	2.1	4.9	1.1	24.0	9.0	2.2	4.7	0.7
	장애인시설	20.1	2.5	8.4	12.4	4.0	28.8	12.2	4.7	4.2	2.7
	정신보건·노숙인	26.8			12.2	4.9	36.6	7.3	2.4	7.3	2.4
	사회복지관	27.1		17.1	10.0	7.1	17.1	11.4	1.4	2.9	5.7
	자활센터	34.0			5.7	3.8	28.3	26.4	1.9		
	여성가족시설	50.9	1.2	0.6	6.4	2.3	20.8	5.8	5.2	5.2	1.7
	기타	66.7						33.3			
	정규직	38.3	1.2	4.6	7.4	3.2	24.4	10.9	3.6	4.5	1.8
근로 형태	계약직	29.2	0.6	1.8	5.3	2.9	34.5	17.0	2.9	5.3	0.6
	시간제						100.0				
직위	최고관리자	57.6		2.1	2.8	0.7	18.7	10.2	2.8	3.9	1.1
	상급관리자	41.8	1.1	8.8	4.4	2.2	26.4	6.6	3.3	5.5	
	중간관리자	28.0	1.9	5.6	11.9	6.0	24.3	10.8	4.9	4.1	2.6
	초급관리자	28.3	0.9	11.5	8.8	6.2	16.8	13.3	7.1	5.3	1.8
	사무직원	32.3	1.3	3.6	7.9	2.7	29.4	13.2	2.8	4.9	1.9
	기타	43.2			8.1	5.4	35.1	8.1			
전 체		542 (37.0)	16 (1.1)	66 (4.5)	110 (7.5)	47 (3.2)	372 (25.4)	171 (11.7)	51 (3.5)	66 (4.5)	25 (1.7)

시설에서 보조금 및 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 25.4%와 이직률의 증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41.8%로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시설은 27.1%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재원 마련 어려움 정도가 낮았다.

시설에서 보조금 및 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 25.4%와 이직률의 증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41.8%로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시설은 27.1%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재원 마련 어려움 정도가 낮았다.

[표6-43]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

구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단일급여 체계 구축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보조금을 분리 지급 방식으로 변경	적은 기본급과 다수 수당 체계의 임금 방식 개선	보조금 지급 주체를 중앙정부로 전환	운영방법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의무화
성별	남성	60.1	6.3	6.8	9.4	5.6	2.1
	여성	53.4	10.6	8.9	7.5	5.7	2.3
시설 형태	이용시설	55.5	11	10.8	6.3	4	1.9
	생활시설	53.4	6.2	3.3	11.3	10	3.3
	기타	64.1	10.3	5.1	5.1	2.6	2.6
시설 유형	노인시설	56.6	7.9	5.3	7.9	4.6	2.6
	아동청소년시설	57.7	9.2	14.0	6.8	4.2	2.6
	장애인시설	49.1	7.9	3.9	12.3	7.9	3.4
	정신보건·노숙인	67.5	12.5	5.0		2.5	
	사회복지관	50.0	4.2	2.8	6.9	9.7	
	자활센터	53.8	17.3	13.5	9.6	1.9	1.9
	여성가족시설	62.7	10.2	4.5	4.5	5.1	0.6
	기타	66.7				16.7	
근로 형태	정규직	56.3	9.2	8.4	7.7	6	2.2
	계약직	49.1	9.8	8.1	10.4	4	3.5
	시간제				33.3		
직위	최고관리자	64.1	12	12.7	2.5	2.5	1.4
	상급관리자	56.4	10.6	9.6	5.3	8.5	
	중간관리자	57.3	8.6	7.5	4.5	10.9	1.9
	초급관리자	47.8	8.8	11.5	8	6.2	0.9
	실무직원	51.8	9	6.1	11.6	4.6	3.2
	기타	60.5		10.5	13.2		5.3
전 체		822(55.4)	139(9.4)	124(8.4)	118(7.9)	83(5.6)	34(2.3)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5.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가 9.4%로 많았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의 필요성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보건·노숙인 시설이 6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여성가족시설(62.7%), 아동청소년시설(57.7%), 노인시설(5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의 경우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과 준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55.5%로 생활시설 53.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는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제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10.4%, 33.3%로 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6-44] 일(담당업무내용, 업무량 포함)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만족 [㉢]	매우만족 [㉣]	불만족 [㉠+㉡]	만족 [㉢+㉣]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1.9	12.9	47.7	32.2	5.4	14.8	37.6	3.26	428
	여성	5.6	16.7	45.5	28.7	3.5	22.3	32.2	3.08	1069
시설 형태	이용시설	5.2	16.5	42.2	30.9	5.2	21.7	36.1	3.14	460
	생활시설	3.7	16.5	48.8	26.9	4.0	20.2	30.9	3.11	375
	기타	4.4	15.5	46.9	30.3	2.9	19.9	33.2	3.12	588
시설 유형	노인시설	5.7	17.0	42.8	29.8	4.6	22.7	34.4	3.11	969
	아동청소년시설	2.6	11.9	50.7	31.9	2.9	14.5	34.8	3.20	454
	장애인시설	2.6	23.1	56.4	15.4	2.6	25.7	18.0	2.92	39
	정신보건·노숙인	2.5	15.3	49.7	28.7	3.8	17.8	32.5	3.16	157
	사회복지관	8.4	16.2	45.8	25.5	4.1	24.6	29.6	3.01	537
	자활센터	2.9	14.9	44.3	33.5	4.3	17.8	37.8	3.21	415
	여성가족시설		26.2	42.9	26.2	4.8	26.2	31.0	3.10	42
	기타		12.9	37.1	47.1	2.9	12.9	50.0	3.40	70
	정규직		17.6	54.9	25.5	2.0	17.6	27.5	3.12	51
근로 형태	계약직	1.7	16.7	47.1	31.0	3.4	18.4	34.4	3.18	174
	시간제	33.3		50.0	16.7		33.3	16.7	2.50	6
	최고관리자	4.5	15.9	46.0	29.6	4.1	20.4	33.7	3.13	1298
직위	상급관리자	5.2	17.3	46.2	27.7	3.5	22.5	31.2	3.07	173
	중간관리자			50.0	25.0	25.0	0.0	50.0	3.75	4
	초급관리자	8.7	20.6	43.7	24.5	2.5	29.3	27.0	2.92	277
	실무직원	4.3	14.0	40.9	35.5	5.4	18.3	40.9	3.24	93
	기타	3.0	17.0	42.4	34.3	3.3	20.0	37.6	3.18	271
전 체		1.8	9.8	49.1	37.5	1.8	11.6	39.3	3.28	112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 등을 포함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9.3%로 불만족 11.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36.1%로 생활시설 종사자 30.9%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자활센터 종사자의 만족도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시설로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18.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 또한 29.6%로 낮은 수준이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계약직 종사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34.4%로 정규직 종사자 만족도 27.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중간관리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50.0%로 가장 높았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중간관리자의 점수가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6-45] 보수(수당 및 보너스 포함)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만족 [㉢]	매우 만족 [㉣]	불만족 [㉠+㉡]	만족 [㉢+㉣]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15.1	32.3	38.1	12.6	1.9	47.4	14.5	2.54	430
	여성	23.1	33.2	33.2	9.4	1.2	56.3	10.6	2.33	1067
시설 형태	이용시설	26.4	35.5	27.6	9.3	1.1	61.9	10.4	2.23	965
	생활시설	10.9	28.0	46.8	12.5	1.8	38.9	14.3	2.66	457
	기타	5.1	25.6	56.4	12.8		30.7	12.8	2.77	39
시설 유형	노인시설	7.7	42.6	38.1	11.0	0.6	50.3	11.6	2.54	155
	아동청소년시설	33.3	34.6	24.5	6.3	1.3	67.9	7.6	2.08	538
	장애인시설	11.2	28.6	44.2	13.8	2.2	39.8	16.0	2.67	412
	정신보건·노숙인	7.1	19.0	59.5	14.3		26.1	14.3	2.81	42
	사회복지관	5.6	32.4	36.6	23.9	1.4	38.0	25.3	2.83	71
	자활센터	23.1	42.3	25.0	7.7	1.9	65.4	9.6	2.23	52
	여성가족시설	27.8	32.4	33.0	6.8		60.2	6.8	2.19	176
	기타	33.3	33.3	33.3			66.6	0.0	2.00	6
근로 형태	정규직	20.2	33.7	34.2	10.3	1.5	53.9	11.8	2.39	1298
	계약직	24.9	31.2	34.1	9.2	0.6	56.1	9.8	2.29	173
	시간제	50.0		25.0	25.0		50.0	25.0	2.25	4
직위	최고관리자	41.1	35.1	18.8	4.6	0.4	76.2	5.0	1.88	282
	상급관리자	20.7	29.3	37.0	12.0	1.1	50.0	13.1	2.43	92
	중간관리자	10.7	32.6	41.1	13.3	2.2	43.3	15.5	2.64	270
	초급관리자	7.3	30.0	47.3	15.5		37.3	15.5	2.71	110
	실무직원	18.6	33.5	36.2	10.0	1.7	52.1	11.7	2.43	699
	기타	18.4	36.8	26.3	15.8	2.6	55.2	18.4	2.47	38
	전 체	20.7	33.2	34.4	10.3	1.4	53.9	11.7	2.38	1491

수당 및 보너스 등을 포함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족도가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하다.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불만족도가 61.9%로 생활시설 종사자 38.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불만족도가 67.9%로 가장 높았다.

한편,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경우가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만족도가 16.0%로 높았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계약직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불만족도가 56.1%로 정규직 종사자 불만족도 53.9%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최고관리자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3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시설유형에서 사회복지관이 2.83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6-46]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의사 유무

구분		그렇다	아니다
성별	남성	29.3	70.7
	여성	31.6	68.4
시설 형태	이용시설	32.6	67.4
	생활시설	28.4	71.6
	기타	28.2	71.8
시설 유형	노인시설	27.2	72.8
	아동청소년시설	34.9	65.1
	장애인시설	23.2	76.8
	정신보건·노숙인	21.4	78.6
	사회복지관	31.9	68.1
	자활센터	39.6	60.4
	여성가족시설	42.9	57.1
	기타	33.3	66.7
근로 형태	정규직	29.2	70.8
	계약직	46.0	54.0
	시간제		100.0
직위	최고관리자	39.8	60.2
	상급관리자	18.9	81.1
	중간관리자	25.5	74.5
	초급관리자	31.0	69.0
	실무직원	31.2	68.8
	기타	23.7	76.3
전 체		465(30.8)	1045(69.2)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의사에 대해서는 이직의사가 없다는 경우가 69.2%로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 30.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를 시설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가 32.6%로 생활시설 종사자 28.4%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여성가족시설 종사자의 이직에 대한 의사가 42.9%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시설에 이어 자활센터(39.6%)와 아동청소년시설(34.9%), 사회복지관(31.9%) 등의 종사자의 이직에 대한 의사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형태별로는 계약직의 경우가 이직에 대한 의사가 46.0%로 많았고, 직위별로는 최고관리자의 이직에 대한 의사가 39.8%로 높게 나타났다.

[표6-47]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의사 사유 1순위

구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음	업무량 많아서	근로 시간이 길어서	직업간 관계가 나빠서	보수가 낮아서	조직 상하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원 보장 받지 못해서	직업/종업자에게 위험을 느껴서	학업/결혼/질병등 개인 사유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기타
성별	남성	6.2	18.5		1.5	50.8	3.8	2.3		1.5	6.9	8.5
	여성	3.1	21.3	4.0	0.3	42.9	7.4	3.4	0.6	7.1	2.8	7.1
시설 형태	이용시설	4.3	17.2	1.8	0.6	49.5	5.8	2.5	0.6	6.5	4.6	6.5
	생활시설	3.0	26.1	7.5	0.7	31.3	8.2	5.2		3.7	3.0	11.2
	기타	8.3	33.3			41.7	8.3			8.3		
시설 유형	노인시설		23.3		2.3	41.9	16.3			4.7	4.7	7.0
	아동청소년시설	2.6	23.5	2.6		57.7	2.0	1.5		2.6	2.0	5.6
	장애인시설	5.1	16.2	8.1	2.0	41.4	7.1	2.0		4.0	6.1	8.1
	정신보건·노숙인	10.0	30.0			30.0	10.0			10.0	10.0	
	사회복지관	4.3	21.7			4.3	8.7			26.1	8.7	26.1
	자활센터		13.6			59.1	4.5			13.6	4.5	4.5
	여성가족시설	7.8	16.9	3.9		29.9	9.1	11.7	1.3	7.8	3.9	7.8
	기타					50.0			50.0			
근로 형태	정규직	3.5	21.3	3.0	0.8	46.6	6.6	3.0		5.1	3.8	6.3
	계약직	6.1	17.1	2.4		37.8	6.1	3.7	2.4	7.3	4.9	12.2
	시간제											
직위	최고관리자	2.6	29.8	1.8		52.6		5.3		1.8	0.9	5.3
	상급관리자		10.0			45.0	5.0	5.0			15.0	20.0
	중간관리자	4.0	26.7	1.3		33.3	10.7	2.7	1.3	5.3	2.7	12.0
	초급관리자	8.6	11.4		2.9	34.3	14.3			11.4	8.6	8.6
	실무직원	4.0	16.1	5.4	0.4	46.9	7.6	2.7	0.4	6.3	4.0	6.3
	기타		11.1	11.1		44.4				22.2		11.1
	전 체	18 (3.8)	97 (20.3)	16 (3.4)	2 (0.4)	215 (45.1)	31 (6.5)	15 (3.1)	2 (0.4)	26 (5.5)	18 (3.8)	37 (7.8)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아서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업무량이 많아서가 20.3%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가 낮아서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를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49.5%로 생활시설 31.3%보다 이직의사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자활센터(59.1%)와 아동청소년시설(57.7%)의 경우가 보수수준이 낮아서 이직의사가 높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 종사자가 보수수준이 낮은 이유로 이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6%로 매우 비정규직 종사자 37.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최고관리자의 경우가 보수수준이 낮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상급관리자가 45.0%로 나타나 직위가 높을수록 낮은 보수가 이직의사를 갖게 되는 이유로 나타났다.

[표6-48]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근무계획

구분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다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이 있다면 그만둘 생각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다닐 생각이다	정년까지 다닐 생각이다
성별	남성	2.2	23.3	47.0	27.6
	여성	4.1	25.5	46.1	24.3
시설 형태	이용시설	4.2	27.3	45.0	23.5
	생활시설	2.0	18.9	48.2	30.9
	기타	2.6	33.3	53.8	10.3
시설 유형	노인시설	3.9	30.3	51.6	14.2
	아동청소년시설	3.6	23.8	44.5	28.0
	장애인시설	2.3	18.3	47.8	31.8
	정신보건·노숙인	2.4	19.0	42.9	35.7
	사회복지관	5.7	27.1	51.4	15.7
	자활센터	5.7	37.7	41.5	15.1
	여성가족시설	6.4	33.5	42.8	17.3
	기타		66.7	16.7	16.7
근로 형태	정규직	3.1	23.4	46.4	27.2
	계약직	8.1	35.5	45.3	11.0
	시간제			75.0	25.0
직위	최고관리자	2.6	19.0	33.9	44.5
	상급관리자	2.2	18.5	45.7	33.7
	중간관리자	3.4	23.5	46.6	26.5
	초급관리자	3.7	29.9	50.5	15.9
	실무직원	4.3	27.8	50.4	17.6
	기타	2.6	21.1	55.3	21.1
전 체		52(3.6)	360(24.7)	676(46.4)	368(25.3)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근무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다닐 생각인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년까지 다닐 생각을 가진 경우 25.3%,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이 있다면 그만 둘 생각인 경우 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이 있으면 그만 둘 생각인 경우가 27.3%로 생활시설 종사자 18.3% 보다 이직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서의 정년까지 다닐 생각인 경우가 가장 높은 시설은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이 35.7%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다닐 생각인 경우가 높은 시설은 노인시설이 51.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계속 다닐 생각인 경우가 46.4%, 정년까지 다닐 생각인 경우가 27.2%로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계약직 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6-49] 입사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한 법정휴가제도 종류 및 사용정도

구분		연차유급 휴가(일)	생리휴가(일)	출산전후 휴가(개월)	유산·사산 휴가(일)	모두 사용인합
성별	남성	13.75	1.38	0.34	0.00	0.97
	여성	13.30	1.15	4.11	0.57	1.01
시설 형태	이용시설	12.79	1.47	3.73	0.55	1.00
	생활시설	14.99	0.14	4.69	0.44	1.00
	기타	13.25	0.00	1.29	0.00	1.00
	노인시설	14.57	0.00	4.71	1.11	1.00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시설	11.20	0.87	1.31	0.16	0.98
	장애인시설	14.88	0.85	4.98	0.31	1.00
	정신보건·노숙인	15.33	0.00	2.50	0.00	1.00
	사회복지관	15.72	0.25	11.47	12.50	1.00
	지하센터	13.34	1.64	1.80	0.00	1.00
	여성가족시설	14.49	2.71	1.50	0.00	1.09
	기타	15.00	0.00	0.00	0.00	
	정규직	13.58	1.24	4.32	0.55	1.00
근로 형태	계약직	11.93	0.91	0.63	0.00	1.00
	시간제	6.00				
직위	최고관리자	10.95	1.82	0.40	0.00	0.97
	상급관리자	15.78	0.09	2.14	0.00	1.00
	중간관리자	15.81	1.39	6.74	0.31	1.00
	초급관리자	14.82	0.00	6.55	3.00	1.00
	실무직원	12.97	0.94	2.31	0.31	1.02
	기타	10.94				1.00
전 체		14.82	1.09	3.83	0.50	1.00

입사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한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사용정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 14.82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리휴가는 평균 1.09일, 출산전후 휴가 평균 3.83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는 평균 12.7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생활시설 종사자는 평균 14.99일로 이용시설 보다 생활시설 종사자의 연차사용일수가 많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평균 15.7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어서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평균 15.33일, 장애인 시설 14.88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 종사자가 평균 13.5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고, 직위별로는 중간관리자의 경우 평균 15.8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50]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

구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성별	남성	92.3	6.4	7.7	5.1
	여성	54.3	57.7	7.5	8.3
시설 형태	이용시설	62	48.7	6.4	7
	생활시설	53.7	52	13	12.2
	기타	66.7	66.7	0	0
시설 유형	노인시설	47.7	52.3	4.5	6.8
	아동청소년시설	74.1	42.5	7.9	6.6
	장애인시설	57.6	47.5	8.1	7.1
	정신보건·노숙인	40.0	60.0	6.7	0.0
	사회복지관	31.3	68.8	6.3	0.0
	자활센터	16.7	100.0	25.0	58.3
	여성가족시설	44.3	60.7	4.9	8.2
	기타	0.0	100.0	0.0	0.0
근로 형태	정규직	62.1	46.7	7.4	7.4
	계약직	53.2	66.1	11.3	12.9
	시간제				
직위	최고관리자	87.5	26.7	4.2	5
	상급관리자	50	46.9	15.6	15.6
	중간관리자	54.5	54.5	5.2	7.8
	초급관리자	31.3	68.8	12.5	9.4
	실무직원	52.6	57.7	8.8	8.4
	기타	77.8	77.8	11.1	11.1
전 체		293(60.4)	242(49.9)	38(7.8)	39(8.0)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로는 전체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리휴가의 경우가 49.9%로 뒤이어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종사자의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종사자의 경우는 생리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57.7%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시설은 아동청소년시설(74.1%), 장애인 시설(57.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시설(52.3%)을 비롯한 사회복지관(68.8%), 자활센터(100%), 여성가족시설(60.7%) 등의 경우는 생리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시설로 나타났다.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은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의 경우는 생리휴가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6-51]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

구분		과도한 업무량 업무공백	기관/상사/동 료에게 눈치보여서	금여사감실적 하향불이익	법정휴가제도 에 대해 모름	개인연차 공휴일로 대체사용	1년미만근무/ 개인및5인 이하사업장	기관에서 휴가사용 거부/축소시행	기타
성별	남성	60.9	14.1	2.2	3.3	9.8	12	5.4	13
	여성	51	19.6	1.6	10.2	17.6	22.8	4.3	11.1
시설 형태	이용시설	33.3	15.7	0.0	7.8	19.6	39.2	5.9	15.7
	생활시설	45.1	23.5	3.9	14.7	18.6	22.5	5.9	10.8
	기타	49.7	22.8	1.0	8.8	16.1	21.2	4.7	10.9
시설 유형	노인시설	64.6	12.2	1.6	6.3	15.3	14.3	3.2	11.1
	아동청소년시설	47.4	34.2	2.6	13.2	18.4	0.0	2.6	5.3
	장애인시설	62.8	13.0	0.8	7.1	8.7	32.0	3.6	11.5
	정신보건·노숙인	43.4	17.9	5.7	13.2	23.6	8.5	8.5	11.3
	사회복지관	50.0	50.0	0.0	0.0	12.5	6.3	0.0	0.0
	자활센터	52.9	23.5	0.0	11.8	23.5	5.9	0.0	11.8
	여성가족시설	23.5	35.3	0.0	0.0	41.2	0.0	0.0	23.5
	기타	38.9	23.6	0.0	11.1	25.0	25.0	4.2	15.3
	정규직	100.0	0.0	0.0	0.0	0.0	0.0	0.0	0.0
근로 형태	계약직	56.9	17.9	1.3	7.5	15.7	20	4.3	9.9
	시간제	25	23.4	3.1	17.2	21.9	26.6	3.1	25
	최고관리자								
직위	상급관리자	77.4	6	0	0.8	8.3	15.8	0.8	10.5
	중간관리자	65.7	20	0	2.9	25.7	8.6	5.7	5.7
	초급관리자	55.3	27.1	5.9	8.2	20	8.2	8.2	11.8
	실무직원	33.3	18.5	3.7	22.2	18.5	11.1	0	18.5
	기타	37.9	22.1	1.3	12.9	18.8	30.4	5.4	11.3
전 체		53.8	30.8	0	15.4	15.4	23.1	0	23.1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관 및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30.8%, 1년 미만 근무자거나 5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인 경우가 23.1%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설형태에서 이용시설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자거나 개인 및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해서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으나 생활시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공백이 45.1%로 시설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시설이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공백으로 인해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가족시설의 경우는 개인연차를 공휴일로 대체사용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52]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수당 1순위

구분		가족 수당	명절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처우개선 수당	장액 급식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재택근로 보조수당	기타
성별	남성	7.7	7.9	27.3	17.5	7.5	14.9	8.6	7.7	0.9
	여성	7.1	9.9	21.0	23.4	10.4	14.1	8.7	4.1	1.2
시설 형태	이용시설	7.2	9.2	23.3	22.0	11.6	11.8	9.5	4.1	1.2
	생활시설	7.3	8.2	22.2	20.6	5.5	20.0	7.1	8.0	1.1
	기타	2.6	15.4	28.2	17.9	12.8	15.4	5.1	2.6	
	노인시설	4.5	10.4	28.6	21.4	11.7	11.0	7.8	3.9	0.6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시설	12.3	9.0	22.1	25.2	8.2	8.8	9.7	3.4	1.3
	장애인시설	2.9	7.0	21.1	16.7	10.2	22.3	10.0	9.0	0.7
	정신보건·노숙인		7.1	16.7	7.1	14.3	40.5	7.1	4.8	2.4
	사회복지관	2.8	2.8	34.7	22.2	8.3	15.3	4.2	9.7	
	자활센터		9.4	34.0	22.6	11.3	7.5	9.4	5.7	
	여성가족시설	9.7	14.9	21.1	25.7	8.0	11.4	5.1	2.3	1.7
	기타		16.7	16.7		33.3			16.7	16.7
	정규직	7.0	8.4	23.6	20.6	9.4	15.2	9.0	5.5	1.2
근로 형태	계약직	8.6	16.1	18.4	27.6	10.3	9.8	4.6	3.4	1.1
	시간제				100.0					
직위	최고관리자	16.7	7.6	23.9	18.8	6.5	6.9	17.0	2.2	0.4
	상급관리자	4.3	3.2	22.3	17.0	9.6	18.1	11.7	6.4	7.4
	중간관리자	3.7	6.7	24.3	16.0	7.8	19.4	12.7	9.0	0.4
	초급관리자	2.7	12.4	20.4	19.5	14.2	16.8	7.1	6.2	0.9
	사무직원	6.0	10.9	23.2	26.0	11.0	13.9	3.3	4.9	0.7
	기타	5.3	15.8	13.2	18.4	2.6	23.7	10.5	5.3	5.3
	전 체	107 (7.2)	138 (9.3)	342 (23.0)	321 (21.6)	142 (9.6)	213 (14.3)	127 (8.5)	79 (5.3)	17 (1.1)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수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처우개선수당 21.6%, 연가 보상비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수당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관(34.7%)과 자활센터(34.0%)가 30%를 상회 하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욕구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근로형태로 보면 계약직은 시간외 근로수당 18.4%, 처우개선 수당 27.6%로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욕구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은 시간외 근로수당 23.6%, 처우개선 수당 20.6%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6-53] 반드시 적용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 1순위

구분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근로자 대출	경조사비	체력 단련비	교육 훈련비	휴양 시설	직원 휴게 시설	동호회 지원	연차 휴가	유급 보전 휴가
성별	남성	37.9	1.6	4.7	4.7	7.4	4.4	3.0	2.3	0.2	10.2	1.9
	여성	22.3	2.3	3.6	6.1	6.6	3.9	2.1	4.6	0.2	15.8	3.6
시설 형태	이용시설	23.2	2.1	3.9	6.2	7.0	4.1	2.1	3.5	0.2	15.9	3.9
	생활시설	33.9	2.2	3.6	4.0	6.7	3.1	2.4	5.1		10.5	1.3
	기타	25.6	2.6	7.7	5.1	7.7	7.7	2.6	5.1	2.6	7.7	2.6
시설 유형	노인시설	19.7	2.0	4.6	7.2	7.2	4.6	1.3	6.6		8.6	2.0
	아동청소년시설	26.0	1.3	2.8	5.8	7.3	2.8	1.7	1.3		22.4	2.2
	장애인시설	32.9	1.4	4.8	4.8	6.3	3.4	3.1	6.3	0.2	10.1	2.7
	정신보건·노숙인	28.6		7.1	2.4	9.5	4.8		4.8		4.8	4.8
	사회복지관	25.4	4.2	2.8	5.6		1.4	2.8	5.6	1.4	14.1	7.0
	지하센터	30.2	1.9	3.8	5.7	9.4	5.7	5.7	5.7		5.7	3.8
	여성가족시설	21.8	5.7	4.6	4.6	7.5	8.6	1.7	4.6	0.6	10.3	5.7
	기타	33.3					16.7	16.7				
	정규직	27.4	2.1	4.0	5.1	7.3	4.0	2.4	3.9	0.2	13.8	3.0
근로 형태	계약직	24.7	2.4	2.4	10.0	2.9	3.5	1.8	5.9	0.6	16.5	3.5
	시간제								33.3			33.3
직위	최고관리자	27.5	0.7	3.9	7.1	10.7	2.9	1.1	0.7		20.4	2.9
	상급관리자	31.9	1.1	3.2	4.3	5.3	5.3	3.2	2.1		10.6	2.1
	중간관리자	29.5	1.8	3.7	3.7	7.7	3.7	2.2	5.5	0.4	11.1	1.5
	초급관리자	27.3	2.7	4.5	4.5	4.5	5.5	1.8	6.4	0.9	11.8	2.7
	사무직원	24.7	2.9	3.6	6.1	5.5	4.2	2.7	5.3	0.1	13.2	4.0
	기타	25.0		8.3	5.6	8.3		5.6			25.0	
전 체		397 (26.8)	31 (2.1)	57 (3.8)	83 (5.6)	102 (6.9)	58 (3.9)	35 (2.4)	63 (4.2)	3 (0.2)	210 (14.2)	45 (3.0)

반드시 적용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로는 전체적으로 자녀 학자금 제도가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연차휴가 제도 14.2%, 체력 단련비 지원 6.9%, 경조사비 지원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구분에서 남성이 37.9%로 전체 평균 26.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시설의 형태로 보면 자녀 학자금 제도 적용을 원하는 응답이 생활시설이 33.9%로 기타시설 25.6%, 이용시설 23.2%에 비해 높았다.

시설유형별보면, 장애인시설의 경우가 자녀학자금 지원제도를 원하는 경우가 32.9%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상급관리자의 경우가 31.9%로 높게 나타났다.

[표6-54] 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구분		시행여부		사용경험 여부		
		실시	미실시	있음	없음	해당없음
성별	남성	65.7	34.3	8.2	37.2	54.6
	여성	56.4	43.6	8.4	29.6	62.1
시설 형태	이음시설	55.1	44.9	8.1	32.2	59.7
	생활시설	67.4	32.6	8.4	30.6	60.9
	기타	75.0	25.0	11.4	48.6	40.0
시설 유형	노인시설	72.6	27.4	11.8	31.6	56.6
	아동청소년시설	30.4	69.6	3.3	25.5	71.2
	장애인시설	75.4	24.6	11.1	36.7	52.2
	정신보건·노숙인	83.3	16.7	23.7	34.2	42.1
	사회복지관	93.9	6.1	23.5	32.4	44.1
	자활센터	75.0	25.0	6.4	42.6	51.1
	여성가족시설	70.9	29.1	3.6	34.5	61.8
	기타	100.0			20.0	80.0
근로 형태	정규직	59.6	40.4	9.2	31.7	59.1
	계약직	56.1	43.9	3.0	32.3	64.6
	시간제		100.0		25.0	75.0
직위	최고관리자	23.3	76.7	3.0	25.5	71.5
	상급관리자	66.3	33.7	12.6	43.7	43.7
	중급관리자	79.7	20.3	15.1	32.7	52.2
	초급관리자	81.4	18.6	20.2	32.1	47.7
	실무직원	60.4	39.6	5.4	32.6	62.0
	기타	41.9	58.1		25.0	75.0
전 체		711(59.1)	492(40.9)	111(8.3)	426(31.8)	801(59.9)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59.1%,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40.9%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기타(100.0%), 사회복지관(93.9%), 정신보건·노숙인 시설(83.3%) 등이 높은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청소년 시설은 육아휴직(급여)제도 실시 수준이 30.4%로 전체 평균 59.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제도 사용경험 여부는 전체적으로 해당 없음 59.9%, 없음 31.8%, 있음 8.3% 순으로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고 사용경험에서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시설이 많았다.

[표6-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구분		시행여부		사용경험 여부		
		실시	미실시	있음	없음	해당없음
성별	남성	65.7	34.3	8.2	37.2	54.6
	여성	56.4	43.6	8.4	29.6	62.1
시설 형태	이용시설	55.1	44.9	8.1	32.2	59.7
	생활시설	67.4	32.6	8.4	30.6	60.9
	기타	75.0	25.0	11.4	48.6	40.0
시설 유형	노인시설	72.6	27.4	11.8	31.6	56.6
	아동청소년시설	30.4	69.6	3.3	25.5	71.2
	장애인시설	75.4	24.6	11.1	36.7	52.2
	정신보건·노숙인	83.3	16.7	23.7	34.2	42.1
	사회복지관	93.9	6.1	23.5	32.4	44.1
	자활센터	75.0	25.0	6.4	42.6	51.1
	여성가족시설	70.9	29.1	3.6	34.5	61.8
	기타	100.0			20.0	80.0
	정규직	59.6	40.4	9.2	31.7	59.1
	계약직	56.1	43.9	3.0	32.3	64.6
근로 형태	시간제		100.0		25.0	75.0
	최고관리자	23.3	76.7	3.0	25.5	71.5
직위	상급관리자	66.3	33.7	12.6	43.7	43.7
	중간관리자	79.7	20.3	15.1	32.7	52.2
	초급관리자	81.4	18.6	20.2	32.1	47.7
	사무직원	60.4	39.6	5.4	32.6	62.0
	기타	41.9	58.1		25.0	75.0
전 체		711(59.1)	492(40.9)	111(8.3)	426(31.8)	801(59.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여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 59.1%, 미실시 40.9%로 실시하고 경우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형태별로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은 생활시설이 67.4%로 이용시설 55.1%보다 더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를 보면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가 23.7%, 사회복지관 종사자 23.5%로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사용한 경험이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경험은 전체적으로 해당 없음이 59.9%로 가늠게 나타났고 제도가 있으나 사용을 한적이 없는 경우가 31.8%,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3%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표6-56] 유연근무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구분		시행여부		사용경험 여부		
		실시	미실시	있음	없음	해당없음
성별	남성	38.8	61.2	7.9	46.4	45.6
	여성	27.9	72.1	5.5	42.2	52.2
시설 형태	이용시설	29.1	70.9	6.1	43.7	50.2
	생활시설	34.2	65.8	6.2	43.1	50.7
	기타	37.9	62.1	11.8	52.9	35.3
시설 유형	노인시설	39.5	60.5	6.3	46.1	47.7
	아동청소년시설	16.0	84.0	4.0	36.1	59.9
	장애인시설	38.8	61.2	5.1	49.9	45.0
	정신보건·노숙인	39.4	60.6	17.1	45.7	37.1
	사회복지관	63.6	36.4	17.9	49.3	32.8
	지하철센터	39.5	60.5	10.9	43.5	45.7
	여성가족시설	32.8	67.2	6.3	45.0	48.8
	기타	66.7	33.3		20.0	80.0
근로 형태	정규직	31.3	68.7	7.0	44.1	48.9
	계약직	29.9	70.1	1.8	39.0	59.1
	시간제		100.0		25.0	75.0
직위	최고관리자	15.7	84.3	4.4	37.4	58.1
	상급관리자	45.1	54.9	14.0	46.5	39.5
	중간관리자	41.6	58.4	10.1	46.2	43.7
	초급관리자	32.0	68.0	8.7	54.8	36.5
	사무직원	31.0	69.0	4.4	43.0	52.6
	기타	20.7	79.3		33.3	66.7
전 체		366(31.0)	815(69.0)	82(6.3)	565(43.5)	651(50.2)

전체적으로 유연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9.0%로 실시하고 경우 31.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시설형태별로 살펴보면 유연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관 63.6%, 기타 시설 66.7%로 미실시 하는 기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관 17.9%,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17.1%로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사용한 경험이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해당 없음 50.2%, 없음 43.5%로 나타났고, 이는 유연근무 제도를 미실시 하는 기관이 69.0%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6-57]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 시행 여부 및 사용경험 여부

구분	시행여부		사용경험 여부			
	실시	미실시	있음	없음	해당없음	
성별	남성	38.8	61.2	2.5	49.0	48.5
	여성	28.5	71.5	2.4	44.1	53.4
시설 형태	이용시설	31.4	68.6	3.1	45.6	51.3
	생활시설	33.1	66.9	1.4	45.5	53.1
	기타	17.9	82.1		55.9	44.1
시설 유형	노인시설	40.0	60.0	2.3	49.2	48.4
	아동청소년시설	13.1	86.9	1.1	38.0	61.0
	장애인시설	44.6	55.4	3.9	50.7	45.4
	정신보건·노숙인	21.2	78.8		54.3	45.7
	사회복지관	68.2	31.8	3.0	54.5	42.4
	자활센터	27.0	73.0	6.7	46.7	46.7
	여성가족시설	34.5	65.5	1.9	48.8	49.4
	기타	66.7	33.3		25.0	75.0
	정규직	31.3	68.7	2.3	46.4	51.3
근로 형태	계약직	29.2	70.8	1.2	41.1	57.7
	시간제		100.0		25.0	75.0
직위	최고관리자	12.1	87.9	1.3	39.8	58.9
	상급관리자	41.5	58.5	4.7	57.0	38.4
	중간관리자	42.4	57.6	2.5	51.3	46.2
	초급관리자	41.8	58.2	3.9	53.4	42.7
	실무직원	31.9	68.1	2.5	43.8	53.7
	기타	13.8	86.2		30.6	69.4
전 체		369(31.3)	810(68.7)	32(2.5)	596(45.7)	675(51.8)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를 전체적으로 미실시 하고 있는 경우가 68.7%로 실시하고 경우 31.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관(68.2%), 기타시설(66.7%)은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해당 없음이 51.8%로 가장 많았고, 사용을 한적이 없는 경우가 45.7%로 나타났고,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로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를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의 경우가 6.7%로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사용한 경험이 적은 수준이었다.

[표6-58]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편이다 [㉠]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	보통 이다	보장 받는 편이다 [㉢]	충분히 보장 받는 편이다 [㉣]	보장 받지 못한다 [㉠+㉡]	보장 받는다 [㉢+㉣]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0.7	4.0	22.4	38.9	34.0	4.7	72.9	4.01	424
	여성	1.5	7.8	26.8	42.2	21.6	9.3	63.8	3.75	1044
시설 형태	이용시설	1.5	7.1	22.6	44.0	24.8	8.6	68.8	3.84	950
	생활시설	0.9	6.5	30.7	35.7	26.2	7.4	61.9	3.80	446
	기타			37.8	43.2	18.9	0.0	62.1	3.81	37
시설 유형	노인시설	0.7	5.2	31.4	41.2	21.6	5.9	62.8	3.78	153
	아동청소년시설	1.1	7.6	22.3	39.8	29.1	8.7	68.9	3.88	525
	장애인시설	1.5	5.1	26.9	41.8	24.7	6.6	66.5	3.83	409
	정신보건·노숙인			30.8	43.6	25.6	0.0	69.2	3.95	39
	사회복지관		5.6	19.4	51.4	23.6	5.6	75.0	3.93	72
	자활센터		3.9	33.3	41.2	21.6	3.9	62.8	3.80	51
	여성가족시설	2.4	12.9	24.1	42.9	17.6	15.3	60.5	3.61	170
	기타	16.7		16.7	66.7		16.7	66.7	3.33	6
	정규직	1.2	6.5	24.4	41.7	26.2	7.7	67.9	3.85	1270
근로 형태	계약직	1.2	9.4	32.9	41.8	14.7	10.6	56.5	3.59	170
	시간제			50.0		50.0	0.0	50.0	4.00	4
	최고관리자	1.8	7.7	23.8	38.5	28.2	9.5	66.7	3.84	273
직위	상급관리자	1.1	4.3	19.4	40.9	34.4	5.4	75.3	4.03	93
	중간관리자	0.7	4.5	25.0	48.1	21.6	5.2	69.7	3.85	268
	초급관리자		3.7	23.1	43.5	29.6	3.7	73.1	3.99	108
	실무직원	1.6	8.4	27.9	38.9	23.2	10.0	62.1	3.74	681
	기타			26.3	50.0	23.7	0.0	73.7	3.97	38
전 체		19 (1.3)	98 (6.7)	375 (25.7)	603 (41.3)	366 (25.1)	8.0	66.4	3.82	1461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장 받는다는 생각이 66.4%로 높게 나타났고,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8.0%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근로형태별로도 살펴보면 살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시간제 50.0%, 이어서 계약직 56.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82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직위 구분에서 상급관리자가 4.03점, 성별 구분에서 남자가 4.01점, 근로형태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4.00점 순이었다.

[표6-59]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구분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약건/표현의 자유를 띌 권리	동등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공정/유리한 노동조건을 받을 권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자유를 누릴 권리	개인에함부로간섭/공격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운 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권리	기타
성별	남성	40.2	13	7.6	31.5	13	22.8	3.3	7.6	5.4	0	7.6
	여성	44.5	18.4	15.6	44.5	23	29.8	6.7	9.2	4.6	1.2	5.8
시설 형태	이용시설	40.7	12.5	13.6	44.7	22	26.7	7	11	3.7	1.1	8.4
	생활시설	49.2	28.9	15.6	35.2	18	32	3.9	6.3	7.8	0.8	2.3
	기타	57.1	14.3	14.3	28.6	28.6	0	0	0	0	0	0
시설 유형	노인시설	23.8	11.9	21.4	26.2	16.7	26.2	16.7	11.9	0.0	0.0	2.4
	아동청소년시설	58.2	13.8	6.9	47.6	18.0	34.4	3.7	4.8	2.1	0.5	6.9
	장애인시설	37.9	23.0	16.1	25.3	24.1	13.8	4.6	12.6	11.5	2.3	10.3
	정신보건·노숙인	50.0	0.0	0.0	50.0	33.3	33.3	0.0	16.7	0.0	0.0	0.0
	사회복지관	27.3	0.0	27.3	54.5	18.2	0.0	27.3	18.2	0.0	0.0	9.1
	자활센터	20.0	20.0	0.0	70.0	30.0	30.0	0.0	0.0	0.0	0.0	0.0
	여성가족시설	20.4	31.5	24.1	53.7	25.9	37.0	7.4	14.8	11.1	1.9	1.9
	기타	33.3	33.3	66.7	33.3	33.3	33.3	0.0	33.3	0.0	0.0	33.3
근로 형태	정규직	46.6	16.4	10.2	43.2	18.6	29.7	5.9	8.5	4.5	0.8	5.6
	계약직	25.4	22	32.2	37.3	30.5	20.3	6.8	10.2	3.4	0	8.5
	시간제											
직위	최고관리자	65.8	14.2	5	47.5	15	30	4.2	6.7	5	0	4.2
	상급관리자	17.6	17.6	11.8	47.1	17.6	5.9	11.8	11.8	5.9	0	11.8
	중간관리자	50.9	13.2	20.8	30.2	20.8	22.6	9.4	9.4	7.5	0	3.8
	초급관리자	32.1	21.4	14.3	46.4	21.4	32.1	10.7	10.7	0	0	0
	사무직원	32.3	20.1	16.9	40.7	24.3	30.7	4.2	9.5	4.2	2.1	6.9
	기타	25	0	25	37.5	25	0	25	0	0	0	25
전 체		43.6 (43.6)	17.1 (17.1)	13.7 (13.7)	41.9 (41.9)	28.0 (20.7)	28.0 (28.0)	6.0 (6.0)	8.7 (8.7)	4.6 (4.6)	1.0 (1.0)	5.8 (5.8)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며 인권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동등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41.9%, 생활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형태 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49.2%)이 이용시설(40.7%)보다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에 대한 욕구가 아동청소년시설이 58.2%로 가장 높았다.

한편, 동등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자활센터 7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회복지관 54.5%, 여성가족시설 53.7%, 정신보건·노숙인 시설 50.0% 등의 순이었다.

[표6-60] 근무 중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목격 경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성별	남성	3.3	96.7
	여성	6.4	93.6
시설 형태	이용시설	6.3	93.7
	생활시설	4.2	95.8
	기타	2.9	97.1
시설 유형	노인시설	11.8	88.2
	아동청소년시설	2.9	97.1
	장애인시설	5.0	95.0
	정신보건·노숙인		100.0
	사회복지관	11.3	88.7
	자활센터		100.0
	여성가족시설	8.7	91.3
	기타	16.7	83.3
근로 형태	정규직	5.2	94.8
	계약직	7.8	92.2
	시간제		100.0
직위	최고관리자	3.7	96.3
	상급관리자	3.6	96.4
	중간관리자	5.7	94.3
	초급관리자	8.3	91.7
	실무직원	6.1	93.9
	기타	2.7	97.3
전 체		73(5.5)	1258(94.5)

근무 중인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에 대해서는 목격한 경험이 없다는 경우가 94.5%로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 5.5%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인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을 시설유형별로 보면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노인시설(11.8%)과 사회복지관(11.3%)아 타 사회복지 시설유형들에 비해 인권침해 목격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61] 근무 중인 시설에서 목격했던 인권침해 이유 1순위

구분		외모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종교	정치 / 사회	혼인여부	지역	고용형태	장애여부	기타
성별	남성	10.0	25.0				5.0	5.0		5.0	15.0	15.0	20.0
	여성	20.4	9.2	12.2	7.1	1.0	7.1	4.1	4.1	1.0	20.4	1.0	12.2
시설 형태	이용시설	19.2	13.1	6.1	7.1	1.0	7.1	5.1	4.0	2.0	19.2	3.0	13.1
	생활시설	16.7	5.6	27.8	5.6						22.2	5.6	16.7
	기타			100.0									
	노인시설	16.0	12.0	8.0	4.0	4.0	20.0	4.0			20.0	4.0	8.0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시설	27.3	13.6	13.6			4.5	4.5	4.5	4.5	13.6		13.6
	장애인시설	16.1	16.1	6.5			3.2	9.7	6.5	3.2	19.4	9.7	9.7
	정신보건·노숙인										100.0		
	사회복지관	23.1	7.7		15.4		7.7		7.7		15.4		23.1
	자활센터	50.0			50.0								
	여성가족시설	14.3	9.5	23.8	19.0						19.0		14.3
	기타												100.0
	정규직	21.1	11.6	9.5	8.4	1.1	7.4	3.2	2.1	2.1	21.1	2.1	10.5
근로 형태	계약직	10.0	5.0	10.0			5.0	10.0	10.0		15.0	10.0	25.0
	시간제												
직위	최고관리자	33.3		20.0	6.7			6.7	6.7	6.7	6.7	6.7	6.7
	상급관리자	25.0							50.0			25.0	
	중간관리자	4.2	12.5	16.7	8.3		16.7	4.2			20.8		16.7
	초급관리자	25.0	12.5		12.5		12.5				18.8		18.8
	사무직원	17.9	14.3	8.9	5.4	1.8	3.6	3.6	1.8	1.8	23.2	3.6	14.3
	기타	100.0											
전 체		22 (19.0)	13 (11.2)	12 (10.3)	8 (6.9)	1 (0.9)	8 (6.9)	4 (3.4)	4 (3.4)	2 (1.7)	22 (19.0)	4 (3.4)	16 (13.8)

근무 중인 시설에서 목격했던 인권침해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외모와 고용형태에서 오는 인권침해가 각 1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별 11.2%, 연령 10.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외모로 인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우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자활시설이 50.0%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시설 27.3%, 사회복지관 23.1%, 장애인시설 16.1%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21.1%, 계약직 10.0%로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외모로 인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우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보건·노숙인시설에서의 경우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노인시설 20.0%로 나타났고, 근로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21.1%, 계약직이 15.0%로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고용형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62]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 1순위

구분		고충처리제도적극 활용	인권지침/제도마련 요구	외부조직과연계통해 해결창구마련	가해자외분리방안 마련요구	시설장/종사자대상 인권교육강화	기타
성별	남성	44.7	14.7	8.0	13.2	17.7	1.7
	여성	39.2	19.0	8.8	13.0	18.4	1.7
시설 형태	이용시설	39.7	19.8	8.4	11.8	18.4	1.9
	생활시설	42.3	13.4	8.7	17.1	16.7	1.8
	기타	36.8	18.4	10.5	10.5	23.7	
시설 유형	노인시설	36.5	17.3	12.2	13.5	20.5	
	아동청소년시설	47.0	16.4	6.9	8.6	19.6	1.5
	장애인시설	39.1	14.7	8.8	19.9	14.7	2.7
	정신보건·노숙인	45.0	20.0	7.5	17.5	10.0	
	사회복지관	46.5	16.9	11.3	14.1	9.9	1.4
	자활센터	37.7	22.6	7.5	7.5	24.5	
	여성가족시설	25.9	25.9	10.6	14.7	21.2	1.8
	기타		33.3		16.7	33.3	16.7
	정규직	41.5	16.6	8.3	13.7	18.4	1.6
	계약직	37.2	23.3	10.5	9.9	17.4	1.7
근로 형태	시간제	33.3			33.3	33.3	
	최고관리자	47.3	15.4	5.4	5.7	23.7	2.5
	상급관리자	36.2	23.4	3.2	7.4	27.7	2.1
	중간관리자	42.5	10.8	8.2	16.0	20.1	2.2
	초급관리자	39.3	15.2	11.6	14.3	18.8	0.9
	사무직원	38.3	20.3	10.5	15.9	13.7	1.3
	기타	37.1	28.6	2.9	8.6	20.0	2.9
전 체		600(40.7)	260(17.6)	126(8.5)	194(13.2)	268(18.2)	26(1.8)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충 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18.2%, 인권지침 및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응답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시설이 고충 처리제도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성가족시설의 경우는 고충 처리제도 적극활용 25.9%, 인권지침 및 제도 마련을 요구 25.9%로 같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충처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63] 근무 중인 시설에서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는 방식

구분		시설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	시설장에게 개인적 으로 고충을 의논 하는	동료상담을 통해서 해결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해결하지 않고 고무조건 참음	기타
성별	남성	17.1	43.6	30.7	0.8	9.1	6.0
	여성	10.5	49.0	34.8	1.0	11.4	4.9
시설 형태	이용시설	10.5	46.9	32.6	0.9	11.8	6.1
	생활시설	17.8	47.2	33.3	0.7	9.0	3.7
	기타	10.5	55.3	44.7	2.6	7.9	
시설 유형	노인시설	9.8	36.6	45.1	0.7	12.4	3.3
	아동청소년시설	8.9	58.3	26.7	0.8	7.0	7.6
	장애인시설	21.5	41.4	31.2	1.0	12.0	3.8
	정신보건·노숙인	7.5	62.5	25.0	0.0	15.0	2.5
	사회복지관	16.7	40.3	36.1	0.0	13.9	1.4
	자활센터	10.2	38.8	34.7	0.0	14.3	8.2
	여성가족시설	6.4	39.1	48.7	1.3	14.1	5.8
	기타		40.0	40.0			20.0
	정규직	13.2	48.3	32.4	0.9	10.0	5.3
	계약직	7.3	40.0	45.5	1.2	15.8	4.2
근로 형태	시간제		50.0				50.0
	최고관리자	21.6	38.8	29.5	3.1	6.2	9.7
직위	상급관리자	17.4	57.6	28.3		2.2	3.3
	중간관리자	17.0	52.1	29.0	1.5	8.1	2.7
	초급관리자	14.5	45.5	32.7		13.6	3.6
	실무직원	7.3	46.8	37.7	0.3	13.6	5.0
	기타	5.4	59.5	27.0		13.5	8.1
전 체		175(12.6)	657(47.4)	463(33.4)	13(0.9)	147(10.6)	72(5.2)

근무 중인 시설에서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을 의논하는 방식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33.4%, 시설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방식 12.6% 등의 순으로 근무 중 경험하는 고충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근무 중 경험하는 고충을 시설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을 의논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으나 노인시설(45.1%)과 여성가족시설(48.7%)은 동료와의 상담을 통해 근무 중 경험하는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직위별로는 시설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을 의논하는 경우가 상급관리자 57.6%, 중간관리자 52.1%, 실무직원 4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64]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

구분		예	아니오	평균 경험횟수
성별	남성	93.6	6.4	1.95
	여성	86.2	13.8	1.76
시설 형태	이용시설	87.2	12.8	1.61
	생활시설	91.3	8.7	2.27
	기타	94.3	5.7	1.44
시설 유형	노인시설	89.9	10.1	2.02
	아동청소년시설	89.7	10.3	1.64
	장애인시설	94.3	5.7	2.10
	정신보건·노숙인	97.4	2.6	1.35
	사회복지관	91.5	8.5	1.36
	자활센터	81.1	18.9	1.64
	여성가족시설	73.2	26.8	1.96
	기타	50.0	50.0	1.33
	정규직	90.6	9.4	1.82
	계약직	74.4	25.6	1.79
근로 형태	시간제	25.0	75.0	4.00
	최고관리자	92.7	7.3	1.75
직위	상급관리자	93.7	6.3	1.74
	중간관리자	92.7	7.3	1.91
	초급관리자	91.0	9.0	1.59
	실무직원	85.2	14.8	1.85
	기타	66.7	33.3	2.17
전 체		1285(88.5)	167(11.5)	1.82

최근 1년간 받은 인권교육 경험이 경우가 88.5%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11.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근로형태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음이 더 높은 것에 비해 시간제 종사자는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이 없음이 75.0%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음 25.0%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최근 1년간 받은 평균 인권교육 경험 횟수는 1.82회이고, 가장 많은 인권 교육 경험을 것은 근로형태에서 시간제 종사자가 4.00회로 가장 많은 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 형태에서 시간제 종사자가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이 없음이 75.0%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제 종사자 1인이 받은 교육 횟수가 많았다.

한편, 최근 1년간 받은 인권교육의 주관기관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기관에서 받은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련 협회 24.2%, 시설자체 20.8%, 국가인권위원회 19.1% 등의 순이었다.

[표6-65] 최근 1년간 받은 인권교육 주관기관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관련 교육기관	관련협회	시설자체	기타
성별	남성	25.8	12.8	49.6	24	21.9	4.7
	여성	15.6	13.4	53.1	24	20.1	4
시설 형태	이용시설	12.3	13.7	55.2	21.1	21.3	3.1
	생활시설	33.6	12.7	44.8	33.1	19.4	5.5
	기타	8.6	2.9	68.6	8.6	17.1	11.4
시설 유형	노인시설	12.4	10.2	54.0	8.0	29.2	5.8
	아동청소년시설	7.2	13.1	65.8	29.8	12.1	4.4
	장애인시설	37.8	11.9	40.8	26.2	22.2	4.1
	정신보건·노숙인	32.4	8.1	56.8	2.7	8.1	0.0
	사회복지관	35.5	19.4	33.9	12.9	25.8	0.0
	자활센터	4.8	4.8	35.7	11.9	61.9	11.9
	여성가족시설	7.1	16.7	46.0	32.5	28.6	2.4
	기타	0.0	0.0	33.3	0.0	66.7	33.3
	정규직	20	12.7	52.1	24.3	20.8	4.3
	계약직	9.8	15.9	49.2	23.5	18.9	3.8
근로 형태	시간제			100.0			
	최고관리자	8.4	13.1	57.4	35.5	15.1	4
직위	상급관리자	20.2	13.5	51.7	20.2	27	4.5
	중간관리자	29.7	13.1	45.3	23.3	25	4.2
	초급관리자	23.2	10.1	45.5	15.2	27.3	9.1
	실무직원	18.8	13.9	51.7	22	19.7	3.7
	기타	12.5	12.5	66.7	20.8	16.7	
전 체		243(19.1)	169(13.3)	655(51.5)	308(24.2)	265(20.8)	54(4.2)

시설 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는 관련 교육기관(55.2%)과 시설자체(21.3%)에서 인권교육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시설 종사자는 관련 교육기관(44.8%)과 국가인권위원회(33.6%), 관련 협회(33.1%)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복지관 35.5%,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32.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활센터의 경우 시설자체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61.9%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관련 교육기관(33.9%)에서 인권교육을 받는 것 보다 국가인권위원회(35.5%)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6-66] 인권교육 필요 정도

	구분	매우 불필요 [㉠]	불필요 [㉡]	보통	필요 [㉢]	매우 필요 [㉣]	불필요 [㉠+㉡]	필요 [㉢+㉣]	평균	전체 (n)
성별	남성	0.2	1.9	33.3	46.9	17.6	2.1	64.5	3.80	426
	여성	1.6	1.9	33.5	45.4	17.5	3.5	62.9	3.75	1038
시설 형태	이용시설	1.4	2.1	34.0	43.0	19.5	3.5	62.5	3.77	948
	생활시설	0.9	1.4	32.2	50.5	15.1	2.3	65.6	3.77	444
	기타			42.1	50.0	7.9	0.0	57.9	3.66	38
	노인시설	2.0	2.0	43.1	43.1	9.8	4.0	52.9	3.57	153
시설 유형	아동청소년시설	1.3	1.3	30.5	48.9	18.0	2.6	66.9	3.81	534
	장애인시설	1.0	2.5	32.5	44.8	19.1	3.5	63.9	3.79	397
	정신보건·노숙인		4.9	46.3	39.0	9.8	4.9	48.8	3.54	41
	사회복지관	1.4	1.4	31.4	48.6	17.1	2.8	65.7	3.79	70
	자활센터		1.9	41.5	32.1	24.5	1.9	56.6	3.79	53
	여성가족시설	1.8	2.4	30.5	46.3	18.9	4.2	65.2	3.78	164
	기타			33.3	16.7	50.0	0.0	66.7	4.17	6
	정규직	1.3	1.6	32.8	46.6	17.7	2.9	64.3	3.78	1271
	계약직	0.6	4.1	39.8	39.8	15.8	4.7	55.6	3.66	171
	시간제				66.7	33.3	0.0	100.0	4.33	3
직위	최고관리자	2.1	1.1	31.7	50.2	14.9	3.2	65.1	3.75	281
	상급관리자		1.1	30.4	50.0	18.5	1.1	68.5	3.86	92
	중간관리자	1.1	2.2	33.0	46.7	17.0	3.3	63.7	3.76	270
	초급관리자	0.9	2.7	27.7	46.4	22.3	3.6	68.7	3.87	112
	실무직원	1.2	2.2	36.4	42.7	17.4	3.4	60.1	3.73	667
	기타			27.8	50.0	22.2	0.0	72.2	3.94	36
전 체		18 (1.2)	28 (1.9)	490 (33.6)	668 (45.8)	254 (17.4)	46 (3.1)	922 (63.2)	3.76	1458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하다. 시설 형태별로 보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65.6%로 이용시설 종사자 62.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66.9%로 가장 높았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종사자의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64.3%로 계약직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55.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위 별로는 초급관리자와 상급관리자의 경우가 68%를 상회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의식이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7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시설유형에서 기타를 제외하고 아동청소년시설이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6-67]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법

구분		고충처리제도적극 활용	인권지침/제도마련 요구	외부조직과연계통해 해결창구마련	가해자와분리방안 마련요구	시설장/종사자대상 인권교육강화	기타
성별	남성	44.7	14.7	8.0	13.2	17.7	1.7
	여성	39.2	19.0	8.8	13.0	18.4	1.7
시설 형태	이용시설	39.7	19.8	8.4	11.8	18.4	1.9
	생활시설	42.3	13.4	8.7	17.1	16.7	1.8
	기타	36.8	18.4	10.5	10.5	23.7	
시설 유형	노인시설	36.5	17.3	12.2	13.5	20.5	
	아동청소년시설	47.0	16.4	6.9	8.6	19.6	1.5
	장애인시설	39.1	14.7	8.8	19.9	14.7	2.7
	정신보건·노숙인	45.0	20.0	7.5	17.5	10.0	
	사회복지관	46.5	16.9	11.3	14.1	9.9	1.4
	자활센터	37.7	22.6	7.5	7.5	24.5	
	여성가족시설	25.9	25.9	10.6	14.7	21.2	1.8
	기타		33.3		16.7	33.3	16.7
근로 형태	정규직	41.5	16.6	8.3	13.7	18.4	1.6
	계약직	37.2	23.3	10.5	9.9	17.4	1.7
	시간제	33.3			33.3	33.3	
직위	최고관리자	47.3	15.4	5.4	5.7	23.7	2.5
	상급관리자	36.2	23.4	3.2	7.4	27.7	2.1
	중간관리자	42.5	10.8	8.2	16.0	20.1	2.2
	초급관리자	39.3	15.2	11.6	14.3	18.8	0.9
	실무직원	38.3	20.3	10.5	15.9	13.7	1.3
	기타	37.1	28.6	2.9	8.6	20.0	2.9
전 체		600(40.7)	260(17.6)	126(8.5)	194(13.2)	268(18.2)	26(1.8)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가 18.2%, 인권지침 및 제도 마련 요구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고충처리제도의 적극적 활용(42.3%)과 가해자와의 분리방안 마련 요구(17.1%)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시설은 고충처리제도의 적극적 활용(39.7%),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18.4%)의 필요성이 높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시설과 정신보건 및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고충처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40%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인권지침제도의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시설이 25.9%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정규직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식교육 강화가 18.4%, 계약직은 인권지침 및 제도마련 요구가 23.3%로 고충처리제도에 이어서 높은 수준이었다.

4. 종사자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과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징이나 직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직업만족도 및 직업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과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직업만족과 직업지속성은 현재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의 정도와 지속적인 근무의향으로 구성된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과 근로형태, 직위, 경력, 휴가 및 보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13개 문항의 척도로 구성된 직업만족도와 직업중요정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척도로 구성된 직업만족도와 직업중요도는 직업과 관련된 일, 보수, 업무환경, 고용안정 등의 직무요인과 상급자와의 관계, 동료 및 하급자와의 관계 등의 관계요인 구성하였고 만족정도 그리고 중요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직업만족도와 직업중요도의 경우 하위변인들의 개념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성분으로 검출된 변인을 선별하고 종속변수인 직업만족과 직업지속성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표6-68] 측정도구

구분	범주	변수	정의
종속변수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직업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정도 (5점)
		직업지속성	현재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근무의향 (4점)
독립변수	인구학적요인	성별	1=남성, 0=여성
		근로형태	1=일용직사원, 2=계약직, 3=정규직
		직위	1=실무직원, 2=초급관리자, 3=중간관리자, 4=상급관리자, 5=최고관리자
		현시실경력	현재 시설 총 재직 경력(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총 재직경력(월)
		휴가일수	법정휴가일수 (일)
		보수총액	월평균 보수총액 (만원)
	직업만족도	직업만족정도	총 13개 문항의 평균 (1점-5점) : 일, 보수, 업무환경, 고용안정, 인사승진, 휴직제도, 상급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종사자간의 의사소통, 이용자와의 관계
	직업중요도	직업중요도	총 13개 문항의 평균 (1점-5점) : 일, 보수, 업무환경, 고용안정, 인사승진, 휴직제도, 상급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종사자간의 의사소통, 이용자와의 관계

[표6-69] 직업만족 및 직업중요도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하위범주	문항번호	문항수	요인 적재량	추출 제곱합	분산	KMO측도값	Bartlett 구형성검정
직업만족도	업무만족도	1번~7번	7문항	.637~.778	5.446	41.889	.895	10187.940 ***
	관계만족도	8번~13번	6문항	.714~.906	2.551	61.514		
직업중요도	업무중요도	1번~7번	7문항	.602~.733	7.547	58.053	.950	13608.875 ***
	관계중요도	8번~13번	6문항	.689~.882	1.275	67.858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분석의 직각회전인 베리맥스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는 1, 요인적재량은 .4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만족도와 직업중요도는 일, 보수, 업무환경 등 업무특성과 상급자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하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된 관계특성이 단일요인으로 검출되었다. 가령, 직업만족도의 경우 총 13개 문항중 업무특성으로 구성된 1번~7번까지의 업무만족요인의 요인적재량은 .637~.778로 나타났고, 관계특성으로 구성된 8번~13번까지의 관계만족요인의 요인적재량은 .714~.905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의 개념타당도 분석결과 KMO(Kaiser 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89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Bartlett구형성 검정은 10187.940(p=.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6-70]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하위범주	세부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α
직무 만족도	업무 만족도 (7문항)	일(담당업무내용, 업무량 포함)	1	5	3.13	.883	.835
		보수(수당 및 보너스 포함)	1	5	2.38	.969	
		업무환경(사무공간, 휴게실 등)	1	5	3.12	.968	
		고용안정	1	5	3.39	.951	
		인사/승진/노무관리	1	5	3.09	.896	
		교육훈련 기회	1	5	3.47	.854	
		휴직제도 등 복리후생제도	1	5	3.04	1.057	
	관계 만족도 (6문항)	상급자와의 관계	1	5	3.76	.820	.918
		동료와의 관계	1	5	3.94	.708	
		하급자와의 관계	1	5	3.86	.725	
		시설장·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1	5	3.78	.811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5	3.85	.752	
		이용자(생활인)와의 관계	1	5	3.91	.723	
	업무 중요도 (7문항)	일(담당업무내용, 업무량 포함)	2	5	4.28	.630	.874
		보수(수당 및 보너스 포함)	1	5	4.44	.644	
		업무환경(사무공간, 휴게실 등)	1	5	4.15	.693	
		고용안정	1	5	4.37	.667	
		인사/승진/노무관리	1	5	4.10	.725	
		교육훈련 기회	1	5	4.06	.736	
		휴직제도 등 복리후생제도	1	5	4.32	.667	
	관계 중요도 (6문항)	상급자와의 관계	2	5	4.32	.655	.946
		동료와의 관계	2	5	4.35	.647	
		하급자와의 관계	2	5	4.30	.668	
		시설장·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1	5	4.36	.639	
		종사자 간 의사소통	2	5	4.41	.623	
직무 중요도		이용자(생활인)와의 관계	2	5	4.43	.635	

[표6-71] 직업만족도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일업무	1.000	.435***	.395***	.400***	.433***	.316***	.415***	.245***	.213***	.196***	.255***	.221***	.210***
보수		1.000	.299***	.358***	.439***	.243***	.481***	.095***	.005***	-.014***	.063***	-.019***	.019***
업무환경			1.000	.441***	.500***	.448***	.390***	.377***	.308***	.278***	.366***	.317***	.245***
고용안정				1.000	.568***	.412***	.430***	.343***	.213***	.213***	.285***	.196***	.168***
인사/승진					1.000	.490***	.477***	.358***	.226***	.221***	.324***	.199***	.178***
교육훈련						1.000	.529***	.320***	.263***	.256***	.292***	.211***	.228***
복리후생							1.000	.280***	.209***	.185***	.230***	.159***	.158***
상급자와의 관계								1.000	.703***	.666***	.726***	.628***	.467***
동료와의 관계									1.000	.862***	.676***	.777***	.591***
하급자와의 관계										1.000	.675***	.739***	.562***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1.000	.703***	.516***
총사시간 의사소통												1.000	.600***
이용자와의 관계													1.000

***p<.001

한편, 직업만족과 직업지속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고 독립변수에서 제외될 변수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대체로 요인분석에서 검출된 단일요인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직무만족도의 단일요인인 관계만족도의 경우 상급자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하급자와의 관계,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등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r > .6$,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지속성도 직업만족도와 유사하게 단일요인의 하위 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r > .4$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6-72] 직업지속성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일업무	1.000	.503***	.493***	.517***	.447***	.424***	.449***	.453***	.451***	.423***	.443***	.475***	.454***
보수		1.000	.464***	.560***	.430***	.323***	.494***	.419***	.411***	.389***	.405***	.420***	.390***
업무환경			1.000	.558***	.553***	.534***	.507***	.480***	.484***	.465***	.488***	.489***	.432***
고용안정				1.000	.586***	.467***	.573***	.558***	.549***	.527***	.537***	.525***	.479***
인사/승진					1.000	.567***	.542***	.504***	.487***	.466***	.471***	.466***	.400***
교육훈련						1.000	.553***	.528***	.502***	.493***	.512***	.483***	.444***
복리후생							1.000	.592***	.584***	.547***	.563***	.558***	.489***
상급자와의 관계								1.000	.861***	.832***	.779***	.742***	.598***
동료와의 관계									1.000	.874***	.796***	.778***	.630***
하급자와의 관계										1.000	.789***	.785***	.632***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1.000	.799***	.637***
총사시간 의사소통												1.000	.705***
이용자와의 관계													1.000

***p<.001

[표6-73]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구분		분석모델1			분석모델2		
		베타	t	VF	베타	t	VF
인구학적 특성요인	성별(여자)	-.063	-1.840	1.095	-.103	-3.147**	1.121
	근로형태	.069	2.032*	1.080	.049	1.519	1.088
	직위	.079	2.167*	1.259	.032	.891	1.341
	현사실경력	.015	.319	2.120	.010	.230	2.124
	사회복지경력	.037	.713	2.555	.063	1.267	2.563
	휴기일수	-.003	-.097	1.231	.000	.009	1.235
	보수총액	.085	2.040*	1.621	.106	2.641**	1.708
직업요인	업무만족도				-.049	-1.522	1.098
	관계만족도				.344	9.707***	1.319
	업무중요도				.024	.575	1.835
	관계중요도				-.061	-1.392	2.047
상수			10.376***			5.582***	
F			4.926***			13.464***	
F 변화량						27.403***	
R2			.037			.141	
adjusted R2			.029			.130	

**p<.01, *p<.05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모형으로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2모형으로 직업요인을 변수로 투입,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인구학적 요인만 투입한 모형1에서는 근로형태($\beta=.069$, $p<.05$)와 직위($\beta=.079$, $p<.05$) 그리고 보수총액($\beta=.085$,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형태는 안정적인수록, 직위는 상위직위일수록 그리고 보수총액은 많을수록 직업만족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beta=-.103$, $p<.01$), 보수총액($\beta=.106$, $p<.01$) 그리고 직업요인에서 관계만족정도($\beta=.344$, $p<.001$)가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보수총액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요인에서는 관계의 만족정도가 직업만족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관계의 정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는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상급자나 관리자 등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6-74]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구분		분석모델1			분석모델2		
		베타	t	VIF	베타	t	VIF
인구학적 특성요인	성별(여자)	.041	1.222	1.083	.019	.579	1.121
	근로형태	.053	1.577	1.079	.041	1.231	1.089
	직위	.104	2.878**	1.253	.076	2.058*	1.336
	현사설경력	.132	2.822**	2.106	.129	2.799**	2.112
	사회복지경력	.024	.473	2.555	.036	.704	2.563
	휴가일수	.008	.219	1.232	.012	.342	1.236
	보수총액	.075	1.831	1.636	.095	2.266*	1.732
직업요인	업무만족도				.012	.356	1.110
	관계만족도				.178	4.906***	1.309
	업무중요도				-.027	-.636	1.843
	관계중요도				-.018	-.394	2.032
상수		6.336***			3.689***		
F		10.962***			9.523***		
F 변화량					6.526***		
R2		.079			.072		
adjusted R2		.106			.095		

**p<.01, *p<.05

다음으로 직업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구학적 요인만을 투입한 모형1에서는 직위($\beta=.053$, $p<.01$)와 시설경력($\beta=.132$,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요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2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의 직위($\beta=.076$, $p<.01$), 시설경력($\beta=.129$, $p<.01$) 그리고 보수총액($\beta=.095$,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요인에서는 직업만족도와 유사하게 관계만족도($\beta=.176$, $p<.001$)가 직업지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위가 높고 시설경력이 많으며, 보수총액이 높을수록 현 직장에서의 업무를 지속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장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현 직장 에서 근무를 지속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현 직장에서의 근무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고 직장내 구성성원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만족도나 직업지속성의 영향요인으로서 보수나 인사승진, 복리후생 등의 업무특성보다는 상급자나 시설장, 동료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은 급여나 복리후생 향상과 함께 시설내 종사자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6-75] 관계만족도 하위변인의 직업만족 및 직업지속성 영향요인

구분	직무만족도			근로지속성		
	베타	t	VF	베타	t	VF
상급자와의 관계	.207	5.427***	2.473	.067	1.609	2.506
동료와의 관계	-.001	-.018	5.046	-.034	-.575	5.060
하급자와의 관계	-.053	-1.059	4.318	-.068	-1.254	4.236
시설장·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228	5.700***	2.720	.204	4.707***	2.738
종사자 간 의사소통	-.071	-1.685	3.061	-.025	-.536	3.068
이용자(생활인)와의 관계	.128	4.070***	1.674	.031	.913	1.685
상수	15.820***			17.668***		
F	43.933***			9.335***		
R ²	.155			.038		
adjusted R ²	.151			.034		

**p<.01, *p<.05

한편, 직업만족도와 직업지속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정을 위해 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의 높은 선형관계의 발생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근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가장 큰 인과적 영향관계를 보인 관계만족도를 세부적으로 탐색하기 관련 변인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직업만족과 직업지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는 다양한 관계특성 중에서 상급자와의 관계($\beta=.207$, $p<.001$),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와의 관계($\beta=.228$, $p<.001$), 그리고 이용자와의 관계($\beta=.128$,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지속성은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와의 관계($\beta=.204$,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만족도는 상급자와 시설장 그리고 이용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업만족의 정도가 높았고, 직무지속성은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현 직장에서의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급자나 시설장 등 사실상 시설운영의 전반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위직급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생활인과의 관계도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직능단체와의 집단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체로 시설의 유형별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쟁점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표6-7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박신애 단장)	· 지역아동센터는 기본급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많이 부족하지만 기관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할 경우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와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 후원금을 많이 발굴하는 센터의 경우 추가적으로 종사자에게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간의 처우개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건비의 지원액이 동결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는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기본인상율은 준수되어야 만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 ·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 가령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하송봉 원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법인운영시설과 개인운영시설간의 격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법인운영시설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기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거의 충족하고 있음 ※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포함한 보수총액으로 가이드라인 충족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복리후생으로 제시된 복지포인트 최저가 10만원으로 제시되었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다소의 금액 상향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운영가치에 따라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여 인건비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서영희 부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각 직능단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필요	
김성준 사무국장 (전북 사회복지사회협회)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처우개선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 필요 · 일부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는 등 시군별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다른 지역은 시행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유급병가제도 60일 보장 경우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사후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권센터를 사회복지사회 협회 부설로 설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표 계속〉

구분	주요내용	비고
박은미 국장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 아동복지시설은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현원대비 정원이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인력충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인건비 지원이 현원의 70%만 지원되고 있고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인건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을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강가은 국장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법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운영시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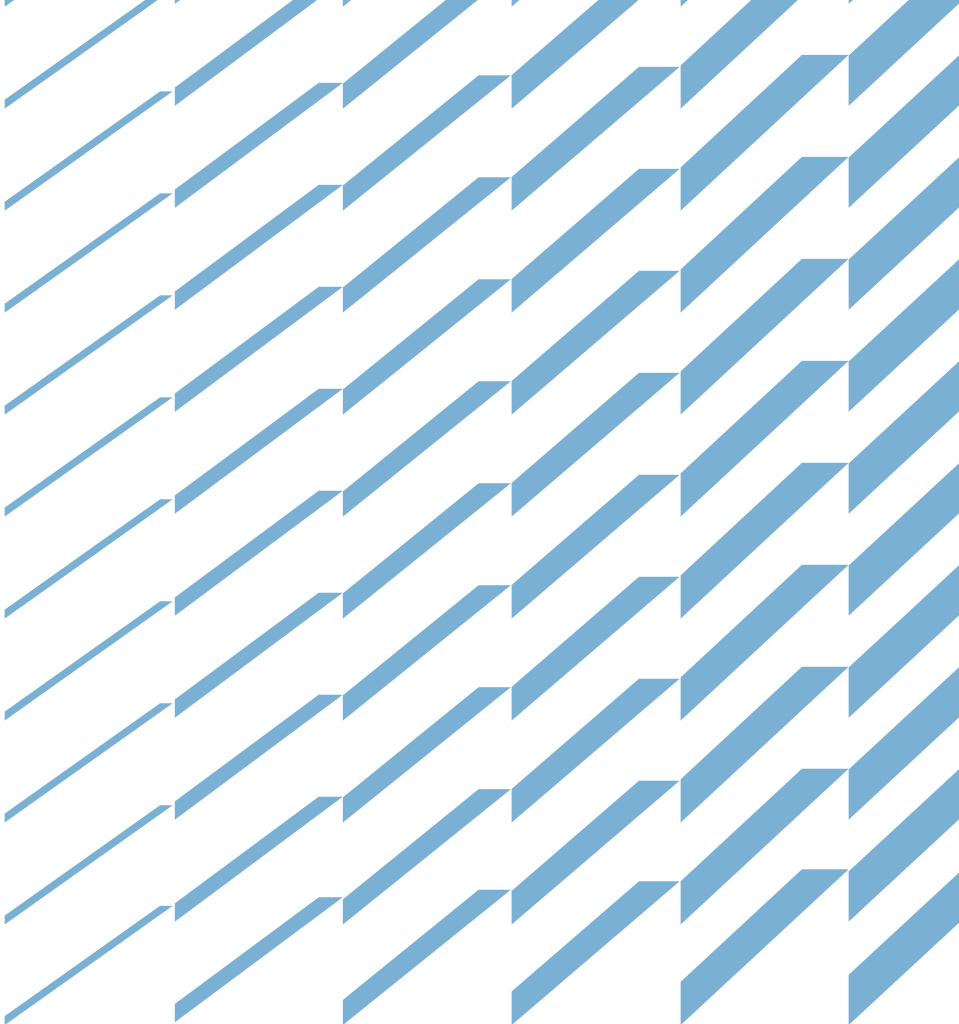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체감하고 있는 보수체계나 처우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종사와 각 직능별 단체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로 현재의 보수체계나 처우실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수나 처우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으로 타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격차도 문제이지만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실무자의 체감도는 상이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동결되어 종사자의 인건비 사실상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는 법인운영시설과 개인운영시설간의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총 73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중에 있고, 이중 68개소의 시설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총 5개의 개인운영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68개소의 거주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의 지원기준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의 약 70%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개인운영시설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인건비지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시군간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의 차이에 따른 임금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가 다수 희망하고 있는 유급병가 제도의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센터의 설치의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갑질과 종사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갑질과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침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인권센터와 함께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권상담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정원대비 현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종사자의 충원 그리고 충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약 70%밖에 되지 않고 인건비도 현원의 70%만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부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주문하였다.



제 7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 
1.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2. 복리후생 지원 확대
 3.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4.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5.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7.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제 7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1.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사회복지종사자의 시설유형별 급여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단일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차원에서도 국비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지역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시설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임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 시설별 직급체계를 업무량에 따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직급의 적용을 위한 표준화는 대체로 타시도에서 추진중인 사례를 참고하여 종사자의 규모와 경력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호봉을 보면, 시설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평균호봉이 6호봉에 불과하지만 도이양시설의 경우에는 평균호봉이 10호봉이고 복지부의 국비지원시설도 평균호봉이 10호봉을 상회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규모도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단일임금제도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한다. 학대노인쉼터와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들은 평균 종사자 수가 5명 이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를 단일임금제도로 편입할 경우 종사자의 규모와 경력을 교차하여 유사한 업무량을 토대로 직급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단일임금체계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이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단일임금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의 격차가 심각한 시설을 우선하여 단일임금제도를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단일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예산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일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도 모든 시설을 단일임금제도로 편입하지 않고,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전라북도도 단일임금적용대상을 임금격차가 심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7-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직급체계(안)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전라북도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이상
				5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미만
				5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5인 이상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0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5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과장	과장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 지도원	5인 이상	7년 미만
				5인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 지도원	5인 이상	5년 미만
				5인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단일임금체계의 적용시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임금격차가 심각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임금수준이 여타 시설에 비해서 낮은 호봉미적용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단일임금체계 적용은 2023년으로 계획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단일임금을 적용 시 검토되어야 할 점은 재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다. 대부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은 도비와 시군이 함께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표7-2]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계획(안)

구분	2023년	2024년	2025	2026년
적용대상 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국비지원시설	여성복지시설
추정예산	21.4억	40.2억원	46.2억원~53.4억원	21.4억원
시군비 비율	협의 필요(전라북도-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협의회)			

2. 복리후생 지원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시도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선택적 복지와 함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 사회복지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와 함께 건강검진비를 전국 평균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복지의 경우 부양가족수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건강검진비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선택적 복지와 건강검진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이 적합하다.

선택적 복지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10호봉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25만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적합하다. 선택적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처와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건강검진비도 종사자 1인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비는 전라북도 사복지사협회를 주관으로 지역 종합검진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정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검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건강검진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검진대상자의 경우에는 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야 하되 정밀검진을 요하는 2차 재검의 경우에는 공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일괄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충족한 시설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시설을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조건으로 해당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100%적용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표7-3] 복지후생지원제도(안)

구분	대상	소요예산	비고
선택적 복지	· 정규직(호봉에 따라 차등지원) · 비정규직(정액 지급)	· 정규직 : 10호봉 이하 10만원, 10년~20년 20만원, 20년 이상 25만원 · 비정규직 : 정액 10만원 지급 ※ 연평균 소요예산액 약 9.5억원(정규직 적용기준)	· 서울 : 25~33만원 * 10호봉 미만 25~10호봉 이상 33만원
건강 검진비 지원 및 휴가제도 운영	· 정규직(정액지원) · 비정규직(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 정규직원 정액 20만원 지원 ※ 연평균 9.5억원 소요 * 건강검진비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사회복지사회협회 주관으로 협약을 맺은 검진기관 검진 후 지원	· 인천 1인당 20만원(정액)
유급 병가제도 확대	· 정규직 종사자 * 비정규직(계약직, 시간제 등)은 법 인이나 시설 자체 비용부담으로 권고	· 정규직 : 유급병가 연 60일 보장 * 도비지원시설 : 유급병가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 ※ 결월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으로 활용 * 국비지원시설 : 대체인력지원 사업비로 유급병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유급병가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은 전라북도 지침으로 별도 제시 ※ 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시설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 서울시 유급병가종사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지원 (시급 10,702원/일 85,616원, 월 2,236,710원)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사회복지시설 경력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 현 재직중인 시설에서의 경력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산출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30년 이상 20일 ※ 장기휴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인천 : 5일~20일 서울 : 5일~10일

전라북도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100%에 맞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14개 시군이 함께 재정부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이양시설뿐만 아니라 시군이양시설 그리고 국비지원시설과 호봉미적용시설까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일원화된 기준하에서 100%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추가예산의 재정적 부담은 전라북도와 함께 시군이 함께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시도의 경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광역시도와 함께 시군이 공동부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모두 맞출 경우 기존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사실상 처우개선 수당은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시군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처우개선수당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수수준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임금차액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제도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처우개선수당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적정급여가 아닌 최소한의 급여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처우개선 수당을 바로 폐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가치나 방향에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 임금의 100%까지 지급되는 시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고,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는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포인트와 연동하여 처우개선수당의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하고 유급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입원이나 수술, 통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의사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증빙을 통해서 최대 연 60일까지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도화하고 유급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급병가로 발생하는 소요예산은 병가대상자의 기존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건비의 지원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병가기간 동안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병가자 대상 인건비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월 30일 이상 병가자의 경우 최대수령액은 203백만원 정도이다.

장기간의 병가로 인하여 대체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제도화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예방과 정신적·정서적 치유와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장기휴가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20일까지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휴가제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다양한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광주 등의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장기휴가 일수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장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장기휴가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제도 활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와 통합하여 편성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해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대체로 보조금의 교부방식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비지원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인건비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봉상승분에 대한 종사자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예산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괄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교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이나 수당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표7-4]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방식

구분	항목별 보조	포괄보조
지방이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정신재활시설(생활, 이용),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국고지원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문쉼터,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선방향		·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침 마련 · 개인호봉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4.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중 다수시설이 연차휴가나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인력의 부족이나 대체인력 활용 부재로 인해 적절한 휴가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전라북도의 이번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시설이 57.4%에 이르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 인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설도 55.6%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의 장기간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그룹홈 등 사회복지생활시설과 함께 일부 이용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세부조건들이 다소 까다롭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량이 많지 않다보니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체감하는 대체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의 지원을 통해 시설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제도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대체인력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갖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대상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대체인력의 전문성 정도에 따른 인건비의 차등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현재 대체인력 지원대상인 사회복지직과 조리원 등으로만 지원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직업훈련교사나 간호사, 취사원 등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7-5]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

구분	사업내용	비고
대체인력 전문성 부족	· 대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program 운영 (교육비 지원) · 대체인력 전문인력제도 운영(대체인력의 전문성 교육 이수자 인증)	예산사업 (교육예산)
대체인력 인건비 확대	· 대체인력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인건비 차등지원 * 국가의 지급기준에 더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추가인건비 지원을 통해 대체인력 전문성 강화와 활용도 향상 견인	예산사업 (인건비 확대)
대체인력 활용 확대	· 대체인력의 야간 및 주말 파견에도 활용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장기근속휴가, 해외연수, 병가 등의 사유에도 대체휴가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재 자원일수 5일 최대 10일에서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제도개선
대체인력 은행 운영	· 대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정도에 따른 인력은행 운영 · 대체인력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시설에 대체인력으로 활용	제도개선

[표7-6] 대체인력제도 운영현황

	연도	계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배우자)	순환 근무	기타
파견사유	2020년	1,070	479	16	1	8	0	268	298
	2021년	1,528	782	35	5	27	5	388	286
파견시설	구분	계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기타시설 (노숙, 정신요양)			
	2020년	1,070	947	3	69	51			
	2021년	1,528	1,260	16	182	70			
파견일수		계	5일 미만	5일	5일 초과				
	2020년	1,070	987	81	2				
	2021년	1,528	1,383	85	60				

대체인력제도의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대체인력의 전문성과 특정 시기동안의 대체인력활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대체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대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정 교육수준의 이수를 전제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지원단가를 대체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분야의 경력이 많고 전문성의 수준이 높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기준단가 이상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체인력의 활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직 13명, 그리고 조리원 2명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는 조리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량에서 조리원 대체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의 입원이나 수술 등의 병가로 인한 병가 시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유급병가로 인한 결원은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사회복지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급병가 최대 60일 보장과 해당기간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기도 그리고 광주 등 다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이양시설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시설까지 유급병가 60일을 제도화하고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센터의 사업운영을 구체화해야 한다.

5.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이나 운영지침에 따라 종사자의 정원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생활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미충족 인력에 대한 추가확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은 일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져 사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결국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운영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정원에 맞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력운영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미충족 현원에 대해서 바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져 사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률 등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에 근거한 교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정원규정에 맞게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 종사자 현원의 70%정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원 대비 현원 충족율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인력충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군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법정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자립지원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7-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 충족 및 미충족 시설 현황

현원 미충족 시설		현원 충족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90.8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2.50)	학대노인쉼터	노숙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72.13)	장애인복지관 (93.83)	재가노인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83.5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8.35)	노인보호전문기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75.00)	장애인보호작업장 (83.6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일시지원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92.31)	사회복지관 (99.3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일반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83.33)	지역자활센터 (91.40)	장애인체육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도넛터 (98.13)	여성자활지원센터 (91.23)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장애인거주시설 (91.0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85.61)	수화통역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90.00)		정신요양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시군의 종사자 간 종사자의 보수와 복리후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도 내에서도 지원금액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군간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을 일정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지역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향후 전라북도에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새롭게 신설할 경우 시군 차원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동일 사업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광역차원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간 편차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광역차원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모든 시군이 일원화된 기준하에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국내외연수비나 교육비 그리고 힐링캠프 등의 교육활동지원 등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방식을 변경한다.

[표7-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군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라북도	· 보수교육지원(20년부터 2천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지원(11년부터 2천만원)/ · 사회복지사 힐링투어	
전주시	·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연간 30만원 지원/ ·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1억원 지원 · 동아리 연간 1천만원 지원(10개 동아리*100만원)	
군산시	·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연간 13만원 지원대상 확대(400명~700명)	65,000원×2회(상,하반기)
익산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복수당 연간 10만원 지원	50,000원×2회(상,하반기)
정읍시	· 사회복지종사자 명절수당 연간 20만원 /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2천만원 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 2천만원 지원	10만원×2회(명절)
남원시	· 남원시 사회복지 기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1천만원 지원	700명×연10만원(1회) 6개월 이상 남원거주, 사설장 제외
김제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연간 10만원 지원 ·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450만원 지원 · 김제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개소 지원	5천만원 (김제사랑 상품권)
완주군	·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연간 5만원 지원 / · 사회복지사 행사비 500만원 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2천만원 지원	연간 1회 지원
진안,무주,장수	· 공동모금회 힐링프로그램 3회기 진행 지원(1천만원)	
임실군	· 종사자 처우개선비 연간 26만원 지원	13만원×2회(명절)
부안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간 15만원 지원	3년 이상자 복지포인트 지급

또한, 전라북도와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라북도-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정책간담회를 구성하여 매년 시군과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방향과 세부사업을 협의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7.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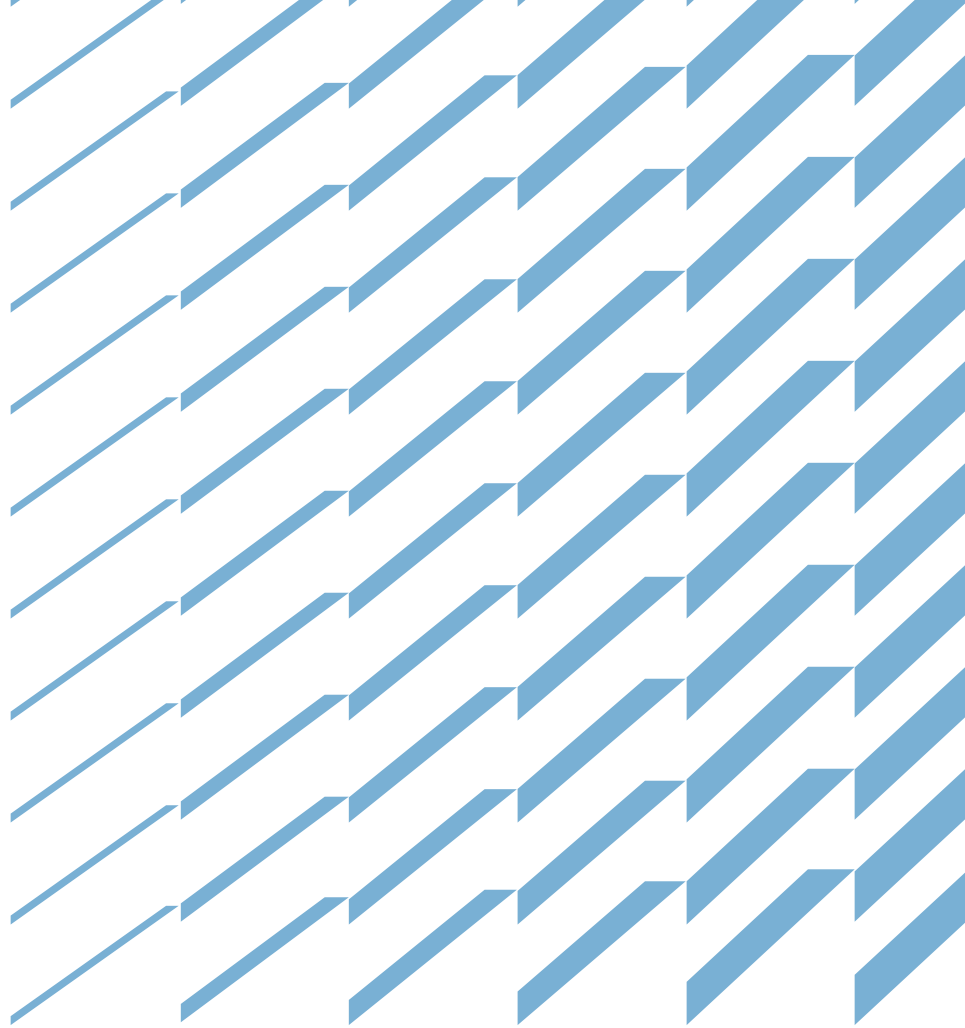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지속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간의 관계의 만족도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관계가 직업만족 정도 그리고 직업지속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은 사회복지사협회 혹은 사회복지협의회 차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가 아닌 일부 종사자만 지원을 받고 있다. 일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한 심리적 치유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속적인 근무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현 직업에 대한 만족의 정도나 지속적인 근로의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내의 상급자나 센터장 등의 책임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와 같은 선별적 지원보다는 개별 시설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향상방안 등의 물질적 보상과 함께 시설내 종사자들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책임자인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간의 관계성 회복이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이나 의무 보수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만이 아닌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호소통을 통한 직원들간의 신뢰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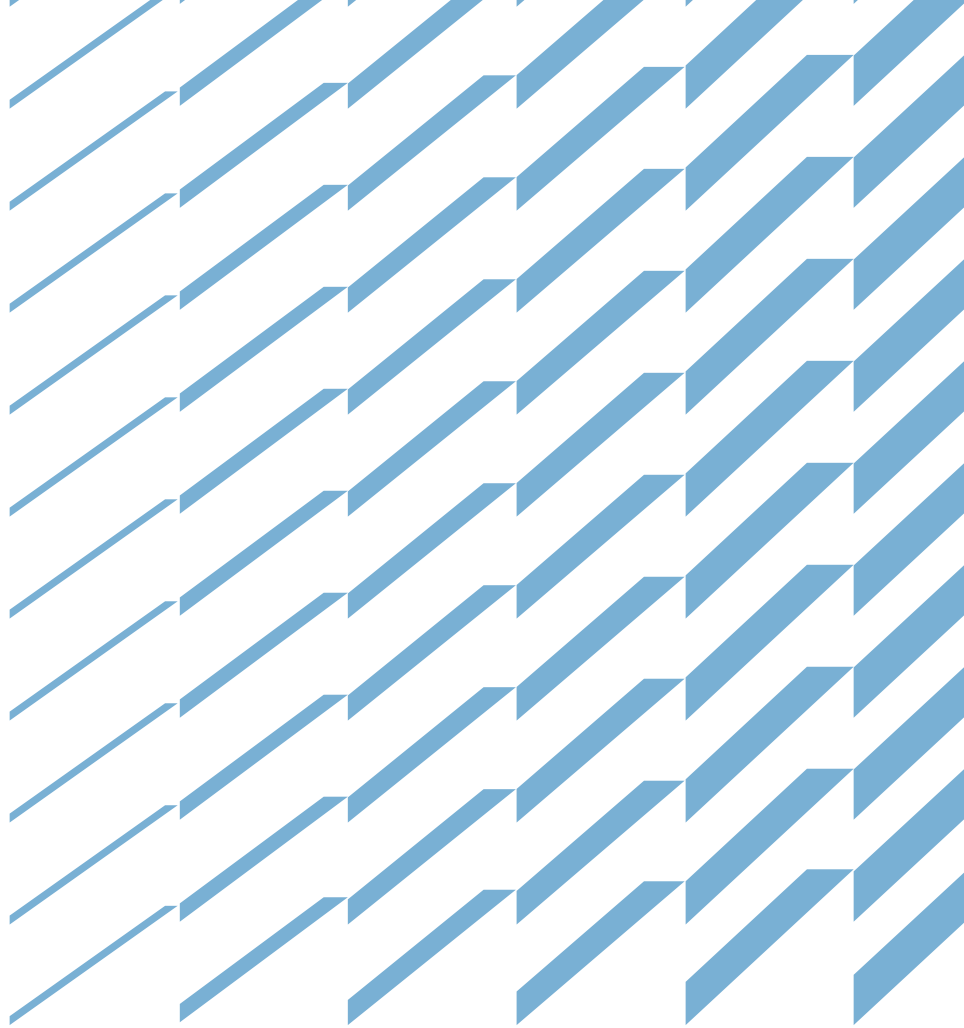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유경, 조성호, 박경수, 윤덕찬, 임성은, 김윤희 & 정희선. (2020).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김미숙, 박경수, 윤덕찬, 정희선 & 김가희.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채영, 김란희, 류제곤, 이상윤, 이운기, 이춘희, 최모세, 황수주 & 정재명. (2020).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 광주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 (2020).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 서울시. (2020).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서울시 복지정책실.
- 송민경, 서미경 & 이은영. (2019). 제2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오민수 & 조해진. (2019).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
- 오승환. (202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회협.
- 정혜원, 이원희 & 정요한. (2019).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은희, 김덕준, 함창모, 남윤명 & 이유나. (2020).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 충청북도.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8).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부천시.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2020.12.31). [서울시사회복지사회협]. <https://www.sasw.or.kr/zbxe/notice/532787>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04.28).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62702



부록

1.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제 설문지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체계 및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다 발전된 여건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 설문지는 반드시 인사총무 과/부장님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체계개선을 위하여 정확한 현황자료가 필요하므로, 번거롭더라도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 시설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담당 : 양희승 주무관(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280-2403



조사 참고 사항(반드시 숙지)

- 회신기간 : 2021년 11월 26일(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방법 : 우편(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또는 이메일(yhs8835@korea.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 양희승 주무관(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시설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는 귀 시설의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부장님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조사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보험을 납부하는(주40시간이상 근무) 정규직과 계약직 모든 전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3. 본 조사는 2021년 6월 30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인건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2021년 인건비를 추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4. 한 시설 내에 여러 부설시설을 운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시설별로 별개의 조사표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5. 조사표의 항목별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작성자 현황

성명	소속부서	직위	메일주소	연락처(전화번호)

B. 사회복지시설 일반현황 (2021년 6월 30일 기준)

B-1	시설명			B-2	설립연도		
B-3	운영주체	☐ 1) 사회복지법인(법인명:)		☐ 2) 재단법인(법인명:)		☐ 3) 학교법인(법인명:)	
		☐ 4) 사단법인(법인명:)		☐ 5) 의료 법인(법인명:)		☐ 6) 국립·지방자치단체(법인명:)	
		☐ 7) 개인운영		☐ 8) 기타()			
	건립 및 운영형태	☐ 1) 직영(관립-관영)		☐ 2) 위탁		☐ 3) 개인운영	
B-4	시설 소재지	(신주소) 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번지(신주소: 로 길)					
B-5	시설 연락처	전화번호: () - 팩 스: () -					
B-6	이용자 현황	생활시설: 정원 ()명, 현원 ()명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용시설: 정원 ()명, 2020년 이용자 실인원 수 ()명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정원이 있는 경우 기입하시고, 정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실인원수만 기입하십시오.					
B-7	직원수	정원 총 ()명 / 현원 총 ()명					
		정규직 ¹⁾	명	계약직 ²⁾	명		

B-8 귀 시설의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a. 2021년 규정(지침)상 종사자 수		b. 2021년 6월 30일 현 종사자 수		c. 법정인력기준 대비 현원의 비율	d. 법정인력기준 대비 추가로 필요한 종사자수
복지부(여가부) 규정상 종사자 수	지자체 지침상 종사자수	정규직	계약직		
명	명	명	명	%	명

* a. 2021년 규정(지침)상 종사자 수 : 종사자 정원을 말함 b. 2021년 6월 30일 재직중인 전체 직원수를 의미함 c. 법정인력 기준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의미함

1)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주40시간이상 상근 인력

2) 주40시간 이상 상근직(사업전담인력·프로포컬 사업비, 사업비 등 기타사업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

B-9 귀 시설이 해당하는 부분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별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노인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2) 학대노인쉼터	☐ 3) 재가노인복지시설 ☐ 4) 노인여가복지시설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 6) 아동양육시설 ☐ 7) 아동일시보호시설 ☐ 8) 아동보호치료시설 ☐ 9) 자립지원시설 ☐ 10) 공동생활가정	☐ 11) 아동상담소 ☐ 12) 아동전용시설 ☐ 13) 가정위탁지원센터 ☐ 14) 지역아동센터 ☐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 16)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 1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8)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2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21) 장애인복지관 ☐ 2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23) 장애인체육시설 ☐ 24)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25) 수화통역센터 ☐ 26) 점자도서관 ☐ 2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28) 장애인보호작업장 ☐ 29) 장애인근로사업장 ☐ 3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 31) 정신요양시설 ☐ 32)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33)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 34) 노숙인자활시설 ☐ 35) 노숙인재활시설 ☐ 36) 노숙인요양시설	☐ 3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8)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39)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 40) 사회복지관
기타		☐ 41) 결핵·한센시설 ☐ 44) 기타 (자세히)	☐ 42) 지역자활센터 ☐ 43) 상담보호센터 ☐ 45) 기타 (자세히)
여성 · 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46) 모자가족복지시설 ☐ 47) 부자가족복지시설 ☐ 4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49) 일시지원복지시설	☐ 5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51) 일반지원시설 ☐ 52) 청소년지원시설 ☐ 5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54)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55) 자활지원센터 ☐ 56)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5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58)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 5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60) 가정폭력상담소 ☐ 61) 긴급전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 63) 청소년쉼터 ☐ 64) 청소년자립지원관 ☐ 65) 청소년치료재활시설 ☐ 6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류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보육시설은 제외.

C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현황 (2021년 6월 30일자 기준 근무자, 2021년 인건비 기준 적용, 단위 : 천원)

자료작성시 15~16page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기입해주십시오

연번	8. 출생 년도	9. 성별 남=1 여=2	10. 직위 직종 종사자 임원	11. 호봉	12. 최종 학력	13. 사회복지 종 경력		14. 현 시설 재직기간		15. 종사상 지위	16. 근무 형태	17. 주 근로시간 1주	18. 시간외 근로수당 월 최대 인정시간		19. 인건비 주된 재원	20. 사회보험 가입 여부	21. 퇴직금 적립 여부
						년	월	년	월				보조금	자부담			
예	1979	2	1	7	4	15	3	4	3	1	2	40	5	10	2	1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인사/급여자료를 근거, 2021년 6월 30일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및 계약직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년(2021년 1월-12월)로 환산하여 작성해주십시오. 2021년 인건비지급기준표를 반영한
추계금액을 천원단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ex) 5월 31일자로 종사자가 퇴사한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인원총원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인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함)

▶ 작성시, 성명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정규직 해당자를 상단에, 계약직 해당자를 하단에 작성해 주십시오. ▶ 종사자 수가 15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위의 표를 복사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연번	22. 년 보수 총액 (24+25+26) 세전금액 (단위: 천원)	23. 2020년 연간 기본급 (단위: 천원)	24. 관고수당 등 소계 (단위: 천원)	24-1. 명월휴가비		24-2. 시비특별수당		24-3. 연장근로수당		24-4. 가족수당		25. 기타수당 소계 (단위: 천원)	25-1. 00수당 (예시: 한시적임금보전수당)	
				연간 지급기준	연간 지급액	연간 지급기준	연간 지급액	연간 지급 기준	연간 지급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	연간 지급액		연간 지급 기준	연간 지급액
예	51,405	40,461	8,544	기본급×120%	4,028	-	-	통상임금×1/2 09×1.5	3,076	3	1,440	2,400	월20만원	2,4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기타수당은 한시적임금보전수당, 교통비, 급식비, 직책(급)보조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연번	25-2. ○○수당 (예시, 교통비)		25-3. ○○수당		26. 연차사용												
	연간 지급 기준	연간 지급액	연간 지급 기준	연간 지급액	연차 일수	연차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여부)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기타수당은 교통비, 급식비, 직책(급)보조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C1. 귀 시설의 시설의 인건비 지급 출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분	정부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
	중앙정부(국비)	광역시(도비)	기초(시군비)			
C1-1 총 인건비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_____천원
C1-2 총 인건비 비율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 펀드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후원금에 포함합니다

C2. 귀 시설의 최근3년간(2018~2020) 전년도 대비 기본급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C2-1 기본급 인상률	_____%	_____%	_____%
C2-2 총액 인상률(자부담 포함)	_____%	_____%	_____%

※ 중도 개원한 시설의 경우 개원 전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기록. 예를 들어 2018년 9월 개원한 시설은 2019년 대비 2020년부터 기록

C3. 귀 시설의 보수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과 복리후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해당되는 수당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C3-1	수당	__① 명절휴가비	__④ 시비특별종사자수당	__⑦ 기타 ()	__⑩ 기타 ()
		__② 가족수당	__⑤ 한시적임금보전수당	__⑧ 기타 ()	__⑪ 기타 ()
		__③ 시간외근로수당	__⑥ 연차수당	__⑨ 기타 ()	
C3-2	복리후생	__① 자녀 학자금 지원	__⑥ 경조사비 지원	__⑪ 여직원 휴게시설	__⑫ 해외연수 지원
		__② 휴양시설 제공	__⑦ 체력단련비 지원	__⑫ 수유실	__⑬ 기타()
		__③ 안식휴가제	__⑧ 심리상담(치료) 지원	__⑬ 시설 내 거숙사	
		__④ 근로자 대출	__⑨ 건강검진비 지원	__⑭ 시설 내 식당 또는 식사(유료)	
		__⑤ 교육훈련비지원	__⑩ 직원휴게시설	__⑮ 동호회 지원	

E. 사회복지시설 재무현황

E1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 시설의 2021년 예산규모 및 총 인건비 지급액(예산)은 어떠합니까? 2020년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

연간 총 수입=①~⑦까지의 합 (2020년 말 기준)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① 사업수익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업수익)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② 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기타보조금)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③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④ 입소비용수입 (이용료 등 입소자로부터 받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⑤ 파년도 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비용)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⑥ 전입금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⑦ 기타 (차입금, 이월금, 잡수입, 요양급여수입 등)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연간 총 지출=①~⑨까지의 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① 인건비 (급여, 계수당, 일용직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②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③ 운영비Ⅰ (재무회계 규칙상 01, 사무비 관에 있는 13, 운영비를 의미함)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재산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④ 운영비Ⅱ (재무회계상 '03, 사업비 관에 있는 '31, 운영비를 의미함)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⑤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⑥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마용비, 기타 교육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⑦ 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자활사업비)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⑧ 기타 (전출금, 파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일액	전	백	십	원	만원

※ 재무회계규칙의 항목 기준으로 구분된 것으로 실제 인입되어 있지 않거나 항목 포함되면 기입해주시고 사실유형에 따라 목이 다를 경우 항목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표시된 부분(연간 총 수입과 연간 총 지출)은 총수입의 합계 및 총지출의 합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F. 근로자의 근로 여건

F1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항목들에 대한 시행여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시행 여부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서술
			①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	② 시행되고 있지 않다	
F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①	②	
F1-2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 종사자 의견 청취, 신고	①	②	
F1-3	운영규정	인사·복무·보수 내부규정 마련	①	②	
F1-4	근로시간과 휴식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①	②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①	②	
		연차 유급휴가 보장	①	②	
F1-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준수	시간외 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①	②	
		생리휴가(무급) 제공	①	②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제공	①	②	
		유급수유시간 제공	①	②	
		육아휴직	①	②	
F1-6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①	②	
F1-7	재해보상	업무상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	①	②	
F1-8	정보제공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년1회 이상)	①	②	

F2 지난 3년간(2018.1.1.~ 2020.12.31.) 귀 시설의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제도 시행여부와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제도		a. 시행여부		이용현황 ¹⁾		d. 기관의 부담정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용현황이 없을지라도 향후 시행 시 예상되는 부담정도 선택)
		① 시행	② 미시행	b. 대상자(명)	c. 이용자(명)	
지난 3년(2018.1.1.~2021. 12.31.)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시)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2017 도 2명 + 2018 3명 + 2019 3명 = 8명으로 작성 예시) 이용자 : 36-1~6 해당항목에 이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 숫자를 작성						
F2-1	육아휴직(급여) 제도	①	②	양	양	① 전혀 부담안됨 ② 부담안되는편임 ③ 그저 그러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F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①	②	양	양	
F2-3	육아지원율 위한 조치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①	②	양	양	
F2-4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직업능력개발, 향상 등)	①	②	양	양	
E2-5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직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사용할 수 있는 제도	①	②	양	양	
이용현황 대상자는 지난 3년(2018.1.1.~ 2021.12.31.)동안 (임산·출산·육아기) 해당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F2-6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제도	①	②	양	양	① 전혀 부담안됨 ② 부담안되는편임 ③ 그저 그러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F2-7	유산·사산 휴가(급여) 제도	①	②	양	양	
F2-8	태아 검진시간 제공	①	②	양	양	
F2-9	수유시간 제공	①	②	양	양	
F2-10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①	②	양	양	

F3 직원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한다면 휴가 종사자의 주된 업무 공백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__①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
 __②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
 __③ 일용직 인력을 고용하여 해결
 __④ 기타()
 __⑤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여 해결
 __⑥ 지난 3년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음

F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신규인력)고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__② 대체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낮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__③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
 __④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여서 대체인력 고용이 필요 없었음
 __⑤ 해당 기간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
 __⑥ 기타()

F5 다음 보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보수 외)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① 근로기준법 준수(근로시간과 휴식, 재해보상 등) | ② 유연근무제 도입 |
|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 준수 |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기회 보장 |
| 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안전 보장 체계 마련 | ⑥ 유급병가제도 도입 |
| ⑦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모성보호제도 적용의 의무화 | ⑧ 복지포인트 제공 |
| ⑨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 ⑩ 학습휴가제 도입 |
| ⑪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⑫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
| ⑬ 장기근속자를 위한 안식 휴가제도 시행 | ⑭ 기타 () |
| ⑮ 근로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 |

참고1) 작성요령

9. 성별은 남자=1, 여자=2번으로 기입
 10. 직위 및 직종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 및 지침에 규정된 시설종사자의 직위 및 직종 기재(해당사항이 없을시 가장 유사한 직종을 기입)

직위 직종	생활시설				
	1. 시설장	2. 사무국장, 총무, 실장	4. 과장, 팀장	5. 생활복지사	5. 생활지도원
	6. 사무원	7.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8. 관리인(관리인, 경비원)	9. 정신보건 전문요원	10. 상담지도원
	11. 간호사-간호조무사	12. 영양사	13. 물리치료사	14. 사회복지교사	15. 직업훈련교사
	16. 임상심리상담원	17. 자립지원전담요원	18. 작업지도원	19. 보육사	20. 촉탁의사
	21. 요양보호사	22. 기타()			
	이용시설				
	23. 관장(센터장, 소장)	24. 부장, 실장	25. 과장, 팀장	26. 선임사회복지사	27. 사회복지사
	28. 일반직 관장	29. 일반직 사무국장	30. 일반직 1급	31. 일반직 2급	32. 일반직 3급
	33. 일반직 5급	34. 일반직 5급	35. 보건의료직 1급	36. 보건의료직 2급	37. 보건의료직 3급
	38. 보건의료직 4급	39. 촉탁의사	40. 사무직 1급	41. 사무직 2급	42. 사무직 3급
	43. 사무직 4급	44. 관리직 1급	45. 관리직 2급	46. 관리직 3급	47. 관리직 4급(교용직)
	48. 영양사	49. 조리사	50. 취사원	51. 직업훈련교사	52. 수화통역사
	53. 기능교사	54. 보육교사	55. 사서	56. 요양보호사(간병인)	57. 활동보조원
	5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59. 성폭력 전문상담원	60. 상담사	61. 가족생활지도사	62. 다문화가족사예관리사
	63. 통번역사	64. 기타()			
	* 23~27(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급, 2급 및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보건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등				
	* 사무직 : 경리, 회계, 전산담당 등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교용직, 기능직				

11. 호봉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시설별로 다른 호봉체제를 무시하고 현 시설의 호봉체제에 따른 호봉 수를 기입
 12. 최종학력 : 고졸미만=1, 고등학교 졸업=2, 2~3년제 대학졸업=3, 4년제 대학졸업=4, 대학원 졸업이상=5 번으로 기입
 13. 사회복지 총경력 :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유사경력을 100%로 산정하여 총 종사기간을 년 월로 작성(2021년 6월 30일 기준)
 14. 현 시설 재직기간 : 현 시설의 재직기간을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입

참고2) 작성요령

15. 종사상 지위

1.	상용직(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임시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 일용직(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과 기타(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종사자에서 제외) * 시설에서 고용한 상용직, 임시직만 기입

16. 근무형태

1.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보장,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
2.	비정규직 기간제(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는 근로)
3.	비정규직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로)
4.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 파트타임(일 8시간 미만, 주 36시간 미만 근로)
5.	비정규직 비전형근로(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근로)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회복지요원 등의 파견직은 종사자에서 제외(시설에서 고용한 상용직, 임시직만 기입)

17. 주근로시간 :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무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18. 시간의 근로수당 최대 월 인정시간 : 재원의 성격에 따라 시간의 근로시간의 월 최대인정시간을 기입

19. 인건비의 주된 재원 : 국비=1, 도비=2, 시군비=3, 자부담(법인 및 시설)=4, 후원금=5, 기타=6

20. 사회보험가입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1, 일부 미가입=2, 모두 미가입=3

21. 퇴직금 적립여부 : 적립=1, 미적립=2

22. 보수총액 : 기본급 총액+수당 총액(정근수당, 기달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명월수당, 법인수당 등)의 합산액으로 기재

* 22 년 보수 총액은 23(연간기본급)+24(권고수당 등)+25(기타수당)의 합산액으로 기재

26. 연차사용 : 연차일수는 2020년 말 기준 한해 법정 연차일수를 기재, 연차사용일은 2020년 말 기준 한해 연차사용일수를 기재,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여부는 수당지급=1, 미지급=2 기재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제 설문지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질문지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의견을 폭 넓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우리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담당 : 양희승 주무관(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80-2403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1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세요.

성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연령	(세)
현 시설에서의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_____년 _____개월
법정 휴가일수	총 _____일	법정휴가 사용일수	총 _____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_____시간 _____분	초과근무시간	주평균 _____회 주평균 _____시간
월평균 보수총액	월 _____만원(세전)	월평균 기본급	월 _____만원(세전)
		월평균 수당	월 _____만원
종사하는 복지시설의 시설형태	__① 이용시설 __② 생활시설 __③ 기타	종사하는 복지시설의 유형	__① 노인복지시설 __② 아동복지시설 __③ 청소년복지시설 __④ 장애인복지시설 __⑤ 정신보건시설 __⑥ 노숙인시설 __⑦ 사회복지관 __⑧ 지역(광역)자활센터 __⑨ 여성가족시설 __⑩ 기타(작능단체, 협회 등)
운영법인	__① 사회복지법인 __② 재단법인 __③ 사단법인 __④ 의료법인 __⑤ 종교법인 __⑥ 개인운영 __⑦ 국립지방자치단체 __⑧ 기타()		
근로형태	__① 정규직 __② 계약직 __③ 일용직 __④ 시간제		
직위	__① 최고관리자(원장, 관장, 센터장 등) __③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__⑤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모든 직원)	__②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실장 등) __④ 초급관리자(선임, 주임, 대리 등) __⑥ 기타()	
직종	__①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__③ 기능직, 시설관리직 __⑤ 기타()	__② 일반직, 사무직 __④ 보건의료직	

B. 근로조건

B-1 다음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수준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보수수준은 다른 유사직군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들과 비교하여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 ② 직렬 간 급여 차이가 부적절함
③ 직급 간 급여차이가 부적절함 ④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가 부적절함
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 격차가 부적절함 ⑥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임
⑦ 기타()

B-3 귀하가 소속된 시설의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② 보조금 지급시기가 늦어짐으로서 월급 지급의 지체
③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승진 제한 ④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경력직 직원 채용의 어려움
⑤ 인건비 부족분 충당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족 ⑥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
⑦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들의 이직률 증가 ⑧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채용의 어려움
⑨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⑩ 기타()

B-4 귀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②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방식(사업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으로 변경
- ④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제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 ⑤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⑥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 ⑦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⑧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 ⑨ 시설별 최소 승진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
- ⑩ 각종 필요수당의 신설
- ⑪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 ⑫ 기타()

내용	B-5-1 만족도					B-5-2 중요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일일담당업무내용, 업무량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보수(수당 및 보너스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환경(사무공간, 휴게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인사/승진/노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교육훈련 기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휴직제도 등 복리후생제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상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하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시설장·공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종사자 간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이용자(생활인)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① 그렇다

B-7-1 현재 이직의사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업무량이 많아서
③ 근로시간이 길어서 ④ 직원 간의 관계가 나빠서
⑤ 보수가 낮아서 ⑥ 조직상하 간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⑦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해서 ⑧ 상·하급자나 동료 및 이용자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⑨ 학업·결혼·임신·출산·질병 등 개인 사유로
⑩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⑪ 기타()

196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B-8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에서 향후 몇 년동안 근무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조만간 그만 둘 생각이다
- ②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이 있다면 그때 그만둘 생각이다
- ③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다닐 생각이다
- ④ 정년까지 다닐 생각이다

C. 복리후생

C-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귀하가 실제로 사용한 법정휴가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① 연차유급휴가 (2020년: 일)	② 생리휴가 (2020년: 일)
③ 출산전후휴가 (개월)	④ 유산·사산휴가 (일)
⑤ 모두 사용안함	

C-2 만약 귀하가 법정휴가제도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C-2-1 보장받지 못한 법정 휴가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연차유급휴가
- ② 생리휴가
- ③ 출산전후휴가
- ④ 유산·사산휴가

C-2-1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것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과도한 업무량/업무공백
- ② 기관상사동료 간에 눈치가 보여서
- ③ 급여삭감실적 하향 등 불이익
- ④ 법정 휴가제도에 대해 모름
- ⑤ 개인연차 및 공휴일로 대체사용
- ⑥ 1년 미만 근무 / 개인 및 5인 이하 사업장
- ⑦ 기관에서 휴가사용 거부·축소 시행
- ⑧ 기타()

C-3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수당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가족수당
- ② 명절수당
- ③ 시간외 근로수당
- ④ 처우개선수당(종사자 특별수당)
- ⑤ 정액급식비
- ⑥ 연가보상비
- ⑦ 직급보조비
- ⑧ 자녀학비보조수당
- ⑨ 기타()

C-4 귀하께서 종사자를 위해 시행 및 반드시 적용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자녀 학자금 | ② 본인 학자금 | ③ 근로자 대출 |
| ④ 경조사비 | ⑤ 체력단련비 | ⑥ 교육훈련비 |
| ⑦ 휴양시설 | ⑧ 직원휴게시설 | ⑨ 동호회 지원 |
| ⑩ 연차 휴가 | ⑪ 유급보건휴가 | ⑫ 출산전후휴가 |
| ⑬ 유산/사산휴가 | ⑭ 육아휴직 | ⑮ 안식휴가제 |
| ⑯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 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⑲ 직원포상제도 | ⑳ 상해보험가입지원 | ㉑ 기타() |

C-5 다음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입니다. 귀 시설에서는 이들 제도를 실시합니까? 귀하는 이들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표에 작성해주시시오.

내용	C-5-1 제도 시행 여부	C-5-2 사용 경험 여부
1 육아휴직(급여)제도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2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5 유연근무제도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6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7 기타()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D. 인권보장

D-1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_____
- ②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_____
- ③ 보통이다 _____
- ④ 보장받는 편이다 _____
- ⑤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 _____

D-1-1 귀 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 ②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 ③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 ④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 받을 권리
- ⑥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⑦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⑧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 ⑨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⑩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 ⑪ 기타()

D-2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용자(보호자 포함)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명예훼손을 포함한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2 상해 등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3 정신적 괴롭힘	①	②	③	④
4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①	②	③	④

D-3 귀하는 지난 1년간 업무 중에 상사나 동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용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했다	자주 경험 했다
1 명예훼손을 포함한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2 상해 등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3 정신적 괴롭힘	①	②	③	④
4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①	②	③	④

D-4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인권침해(차별, 배제, 부당한 대우 등)를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음

D-4-1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면 어떤 이유로 인한 인권침해였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외모
 - ② 성별
 - ③ 연령
 - ④ 학력
 - ⑤ 출신학교
 - ⑥ 종교
 - ⑦ 정치, 사회적 의견
 - ⑧ 혼인여부
 - ⑨ 지역
 - ⑩ 고용형태
 - ⑪ 장애여부
 - ⑫ 기타()

② 없음

D-5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서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까?

- __① 시설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운영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통해 해결하였다.
- __② 시설장(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하였다.
- __③ 동료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 __④ 외부기관(민원제도,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였다.
- __⑤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았다.
- __⑥ 기타()

D-6 귀하는 최근 1년간(2020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총 몇 회 입니까?

① 예 (총 회)

D-6-1. 귀하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 ③ 관련 교육기관 | ④ 관련 협회 |
| ⑤ 시설자체 | ⑥ 기타() |

② 아니오

D-7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

D-8 귀하는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받기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② 시설 내 차별금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지침/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 ③ 노동조합 등 외부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 창구 마련을 요구한다
- ④ 인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와의 분리방안(부서이동, 업무공간 분리 등)마련을 요구한다
- ⑤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⑥ 기타()

D-9 귀하께서는 시설 내 폭력에 대해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예방교육 강화 | ②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 |
| ③ 시설 내 고충처리제도 등 공식절차 강화 | ④ 피해자 대상 심리 및 의료지원 강화 |
| ⑤ 피해자보호를 위한 부서이동 및 임시휴가 조치 | ⑥ 시설 내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인프라 강화 |
| ⑦ 시설 내 조직문화 개선 | ⑧ 기타()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연구 2022-11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3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84-1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